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583-01

「농·수·축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10.12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07619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이 실무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 229호, '08.10.13)」에 근거, 농·수·축산물의 안전과 관련한 위기상황 발생 시 농림수산식품부가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

목 차

제1편 실무매뉴얼 개요

제1절 목 적	1
제2절 적용범위	1
제3절 법적근거	2
제4절 위기유형	2
제5절 위기경보 및 위기대응 체계	3
제6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요소	8
제7절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체계	9

제2편 농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제1장 개 요	21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49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77
부 록	107

제3편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제1장 개 요	129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53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185
부 록	209

제4편 축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제1장 개 요	249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269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289
부 록	303

제1편 실무매뉴얼 개요

제1절 목 적

- 이 통합매뉴얼은 농·수·축산물로 인한 대규모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해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고 위기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함
 - 주관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여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과의 연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
- 각 분야별 안전사고에 대해 위기등급 수준 설정, 대응체계 및 조치사항 등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매뉴얼로 작성함

제2절 적용범위

- 농·수·축산물로 인한 식품위생·안전사고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 모든 관계기관의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 농식품 안전사고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농식품의 소비급감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대응활동과 함께 산업피해를 예방·복구하기 위한 활동에도 적용함
- 화학적 위해요소(농약·중금속·항생제 및 환경오염물질 등) 및 미생물학적 위해요소(식중독균, 인수공통전염병 병원체 등)의 오염사고를 대상으로 함
 - 농산물·수산물 : 생산단계(수확후 처리 단계를 포함)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 시 이 매뉴얼을 적용하며, 그 이후의 가공·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름
 - 축산물 : 사육·도축·가공·유통 등의 모든 단계에서 유래한 경우. 인수공통전염병 병원체 중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름

제3절 법적 근거

-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긴급대응)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 농·수·축산물 분야별 개별법령

공통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업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약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약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전염병예방법	
		수산자원보호령	

제4절 위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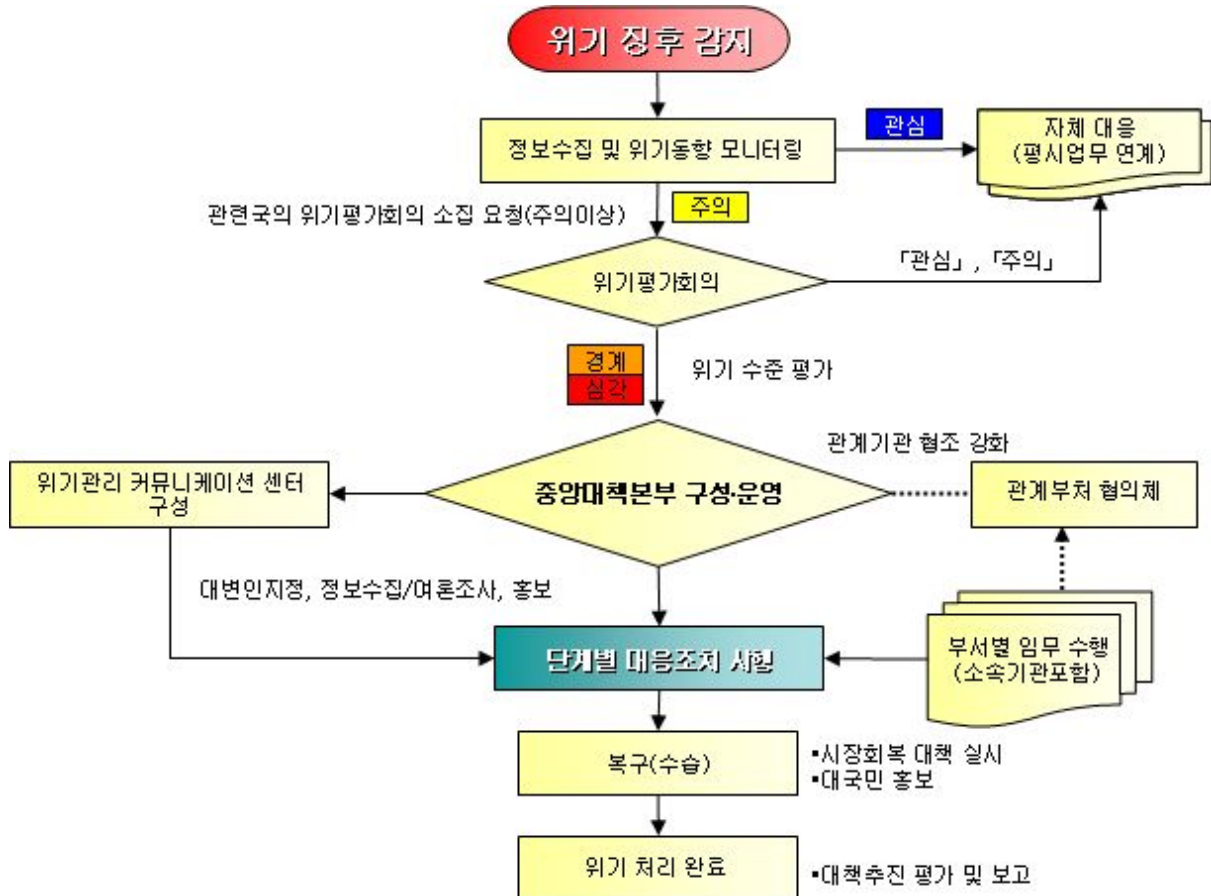
- 유해물질 오염사고 발생
 - 농수축산물에 농약·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소비급감으로 인한 생산자 피해 발생
- 식중독균 등 미생물 오염사고 발생
 -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농수축산물로 인해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상황
- 미승인 동물약품·농약의 불법사용
 - 말라카이트그린·클로람페니콜 등 미승인 약품·농약의 불법 사용으로 인해 유해물질 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상황
- 농식품 안전사고의 발생에 따른 관련 산업피해 발생

제5절 위기경보 및 위기대응 체계

5.1 위기경보의 종류

구분	상 황	판단기준
관심 (Blue)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징후 감시, 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물질·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농식품이 수입 또는 유통되거나 그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농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 미승인 약품·농약의 사용이 예상되는 시기 • 언론·소비자단체 등이 유해물질 오염문제를 제기한 경우 • (축산물)미신고 또는 무허가 장소에서 판매·제조한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된 경우 • (축수산물)수출국내 대규모 축산물 안전사고 발생
주의 (Yellow)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 (협조체계 기동 위기평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수입 축수산물 포함)에서 유해물질·병원성 미생물이 다량 또는 반복 검출되고, 동일 품목의 농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 언론·소비자단체 등이 유해물질 오염 농식품의 광범위한 유통사례를 발표한 경우 • 미승인 약품·농약 사용으로 인한 안전 문제 대두 • 유해 농식품의 지역단위 대량 유통으로 집단급식 식중독 발생 등이 확인된 경우
경계 (Orange)	위기가 확산되는 상태 (대비태세 점검, 중앙대책본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지역의 수거 축산물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위해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 미승인 약품·농약의 대량 사용 사례 확인 •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농식품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 및 수 건의 사망사고 발생
심각 (Red)	심각한 위기로 확산된 상태 (즉각 대응태세 돌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으로 다품목 및 대량의 농식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미승인 약품·농약 대량 사용으로 인한 공포 확산 •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축산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여러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5.2 위기경보의 발령체계도



5.3 위기경보의 발령절차

5.3.1 위기징후 감지 : 농식품 안전관련 동향·정보 파악 및 신속전파

- 주관 : 농림수산물식품부 관련국(소비안전정책관실, 어업자원관실)
- 협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위기징후 목록 작성, 징후 발견보고 및 전파

5.3.2 위기상황 확대가능 시 : 위기평가회의 소집·위기분석 및 대응전략 모색

- 상황 : 관련국장이 '주의' 이상의 위기상황 발생 또는 예상 시
- 주관 : 관련국장이 위기평가회의 소집 요청,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결정
- 보고 : 회의결과는 장·차관 보고 및 필요시 관계기관 등 대외 홍보

5.3.3 위기평가 회의결과에 따라, 평시체계 운영 또는 중앙대책본부 가동

- '관심·주의'단계 : 관련국장 중심으로 평시업무와 연계하여 대응
- '경계·심각'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의사결정을 거쳐 중앙대책본부(본부장 : 실장)를 설치·운영
 - '경계·심각'의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처 등 강력한 위기대응 활동이 가능한 반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역효과도 있는 만큼 위기형태, 위기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5.4 위기관리 기구

5.4.1 위기평가회의

- 구성 : 식품산업정책실장(의장), 소비안전정책관, 관련국장*, 대변인, 소비안전정책과장, 안전위생과장, 관련과장**, 홍보담당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소속기관 및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 * 관련국장 : (수산물) 어업자원관·수산정책관, (축산물) 축산정책관
 - ** 관련과장 : (수산물) 표시검역·축산경영·양식산업·수산정책·자원환경과장, (축산물) 축산경영·동물방역과장
- 운영 : 관련국장(소비안전정책관을 포함)의 요청을 받아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소집 결정하며, 가급적 24시간 이내 개최를 원칙
- 평가사항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전개속도·지속시간),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국내외 반응, 대응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기 상황 평가 및 대응전략 마련
- 결과조치 : 위기수준 평가결과 및 회의요지 등 보고서를 작성, 장·차관 보고 및 필요시 관계기관 등 대외 홍보

5.4.2 '관심·주의' 단계의 위기관리 기구 : 관련국

- 주관 : 관련국장(소비안전정책관을 포함)
 - 산업피해 예방·복구활동에 관하여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련국장으로 함
- 실행부서 : 관련과장(안전위생과장을 포함)
- 실행부서에서 평상시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 : 상황확대 가능성이 높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른 대응방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운용
- 근무요령, 인원구성은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상황보고·대응시기 등은 적절하게 운영

* 참고 : 안전사고 유형별 관련국장 및 관련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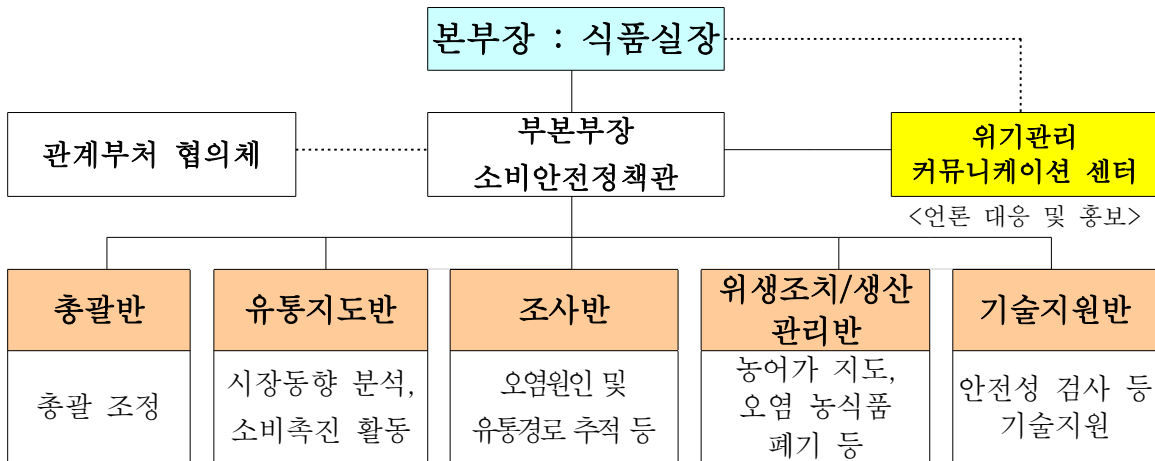
안전사고 유형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유해물질 검출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장	소비안전정책관/ 표시검역과장 (수산정책관·어업자원관/ 수산정책·양식산업과장)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장
식중독균 검출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장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장 (수산정책관·소비안전정책관/ 수산정책·표시검역과장)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장
농약등 불법사용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장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장 (수산정책관·소비안전정책관/ 수산정책·표시검역과장, 축 산정책관/축산경영과장)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장 (축산정책관/동물방역· 축산경영과장)
유해 수입제품		소비안전정책관/ 표시검역과장	소비안전정책관/ 표시검역과장 (안전위생과장)
인수공통전염병			축산정책관/ 동물방역과장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장)

5.4.3 '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관리 기구 : 중앙대책본부

- 본부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부분부장 : 관련국장)
 - * 위기의 특성·정도 등 상황을 고려하여 장관 또는 차관으로 격상 가능
- 조직 : 총괄·유통관리·조사·지도 등 3~5개 반(반장 : 과장급)
 - * 대국민 소통을 위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대변인)를 별도 운영
- 운영기간 : '경계' 이상 단계를 상황 종료시 까지
 - * 분야별 중앙대책본부 조직구성 및 반장

조직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총괄반	안전위생과장 소비안전정책과장	표시검역과장	안전위생과장
수급반/유통 관리반	유통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조사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의과학검역원 감시 조사과장
생산관리반/ 위생조치반	채소특작/과수화훼/ 식량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장	안전위생과장(검역원 안전과/검역검사과장)
기술지원반	농촌진흥청	수산과학원	검역원 담당과장

<중앙대책본부 구성도>



제6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 요소

6.1 위기대응 지침

- 신속·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부내 책임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경제·심각」의 정보발령 시 주관부서는 「중앙대책본부」를 구성·가동

예상 안전문제	주관부서
○ 항생제·농약 등 유해물질의 검출(또는 우려되는 상황) ○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농식품에 의한 식중독 발생 (또는 우려되는 상황)	안전위생과 (수입의 경우 표시검역과 협조)
○ 수입 축수산물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표시검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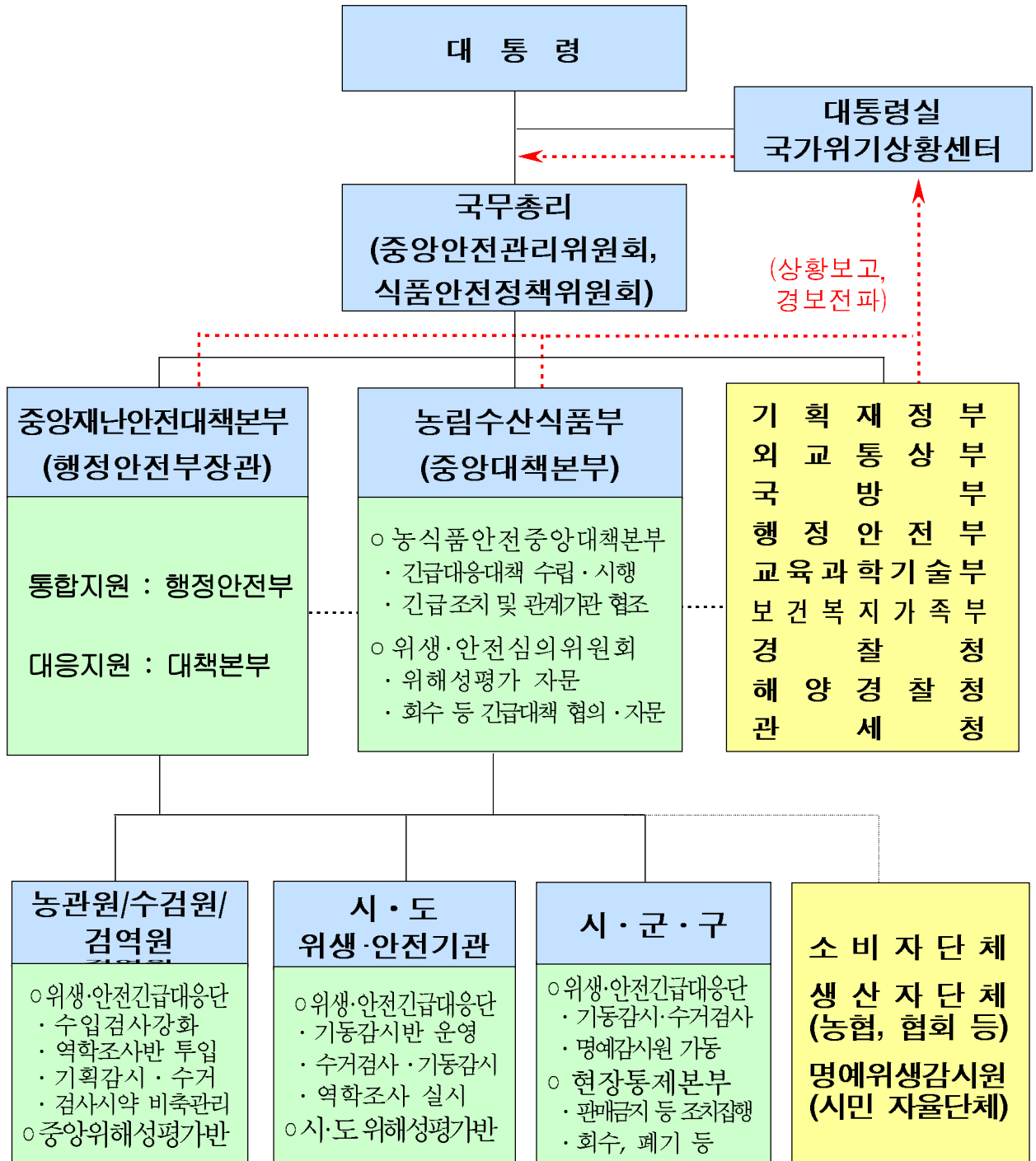
- 주관부서를 주축으로 소속기관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상황을 전파, 대응, 연락 및 홍보를 지원
- 사회적인 민감성 및 유통구조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6.2 위기상황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경보 수준과 조치방안을 결정

- 위해정보의 신뢰성
- 위해성 평가결과 : 위해의 종류, 특성 및 정도
- 파급속도
- 확산범위
- 위해의 지속성 및 재발 가능성
- 안전사고의 통제·제거 가능성
- 언론·이해관계자들의 동향 및 국민정서
- 해외 주요국가의 조치동향

제7절 위기경보 수준 별 대응체계

7.1 종합체계도



* 범례 : _____ : 지시/보고, : 협조/지원

7.2 위기관리 기본활동

7.2.1 예방

- 농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협 및 취약요소의 사전발굴 등 예방체계 중점 구축·운영
- 농식품 위해예방 및 안전성 검사 등 안전관리 제도와 조치의 적극적 시행을 통한 위기 발생의 원천 차단, 억제

7.2.2 대비

- 농식품 안전사고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점검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 및 사전대비 훈련 실시 등 신속 대응체계 구축
- 농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 WHO 등 국제 기구를 통한 해외동향 파악, 국내 모니터링 등으로 조기 식별 및 정보공유
-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별 임무·역할 부여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7.2.3 대응

- 신속한 대응조치에 의한 농식품 안전사고의 확산 방지
-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초기에 안전관리 체계를 총력 가동하여 조기 퇴치
 - 대표적인 위기유형을 모델화하고 기관별 임무/역할 부여 : 유해물질, 병원성 미생물 오염 등

7.2.4 복구

- 피해사례 종합 및 복구,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홍보활동
-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보완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시행
- 농수축산업의 안정화 추진

7.3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7.3.1 ‘관심’ 단계

- 국내·외 안전사고 발생동향·정보 분석
- 수집·분석된 위기정보의 관계기관 간 공유 및 협의
- 평시 안전관리 조치의 시행상황 점검 및 필요 시 모니터링 등 감시 강화

7.3.2 ‘주의’ 단계

- 위기정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예비 위험평가,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 잠정조치 시행 : 위해가능 농식품에 대한 출하·판매 보류
- 오염경로, 유통현황 등 조사 및 정밀검사 실시
- 오염확인 시, 위해확인·우려 농식품의 회수 및 폐기 등 규제조치 시행
- 위기경보 상향조정 등 검토를 위한 위기평가회의 소집
- 재발방지대책 또는 상황확산에 대비 긴급 안전조치 수립

7.3.3 ‘경계’ 단계

- 중앙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관계기관 간 비상 협의체계 가동
- 농식품 안전기관 및 지자체를 총동원, 오염원인 제거·감축 및 오염식품의 유통 차단 (영업자에 대해 자진회수 또는 강제회수 명령)
- 안전사고의 내용 및 위해예방 요령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7.3.4 ‘심각’ 단계

- 범정부 위기대응 체계 가동 : 국무회의 보고 등
- 영업자의 자진회수 실태 감독 및 강제회수 병행 실시
- TV, 인터넷 등을 활용 위기 대처요령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제2편 농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목 차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23
제2절 법적 근거	23
제3절 적용 범위	23
제4절 용어의 정의	24
제5절 위기 형태	25
제6절 위기 경보	26
1.6.1 위기경보 수준	26
1.6.2 위기경보 발령 체계도	27
1.6.3 위기경보 절차	27
1.6.4 위기평가회의	29
1.6.5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 운영	30
1.6.6 중앙대책본부 운영	31
제7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35
1.7.1 위기대응 지침	35
1.7.2 판단/고려요소	36
제8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37
1.8.1 종합체계도	37

1.8.2	농산물 안전업무추진 체계	38
1.8.3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38
1.8.4	위기대응 체계도	39
1.8.5	기관별 주요 임무	40
1.8.6	단계별 위기대응 조치사항	41
1.8.7	단계별 위기대응 프로세스	45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51
2.1.1.	상 황	51
2.1.2	조치사항 및 절차	51
2.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53
제2절	주의	55
2.2.1.	상 황	55
2.2.2	조치사항 및 절차	55
2.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58
제3절	경계	62
2.3.1	상 황	62
2.3.2	조치사항 및 절차	62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65

제4절 심각	69
2.4.1 상 황	69
2.4.2 조치사항 및 절차	69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72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금지농약 사용에 의한 위기상황 발생	79
3.1.1 상 황	79
3.1.2 조치사항 및 절차	80
3.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83
제2절 농산물 식중독 사고에 의한 피해 발생	86
3.2.1 상 황	86
3.2.2 조치사항 및 절차	87
3.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91
제3절 농산물 중금속 오염에 의한 위기상황 발생	93
3.3.1 상 황	93
3.3.2 조치사항 및 절차	93
3.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97
제4절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	100
3.4.1 정보분석 및 위기대응	100

3.4.2 언론 홍보 101

3.4.3 언론 브리핑 102

3.4.4 위기단계별 커뮤니케이션 계획안 105

부 록

1. 관계기관 연락처	109
2. 초기 상황보고 서식(내부보고용)	110
3. 위기평가회의 보고서	111
4. 위기상황 시간대별 조치사항	112
5. 상황 보고서(지자체용)	113
6. 농림수산식품부 위기관리 언론대응 행동지침	114
7.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매뉴얼	116
8.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Checklist	119
9. 기자회견 사전점검표	120
10. 언론발표 시 요령과 원칙	121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 「농산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국내 농산물에서 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및 보건 위해사태를 차단키 위함임

제2절 법적 근거

- 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 나. 식품안전기본법
- 다. 농산물품질관리법
- 라. 식품위생법
- 마. 친환경농업육성법
- 바. 농약관리법

제3절 적용 범위

- 가.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의한 대규모 위기 발생 시 적용
- 나. 농산물 안전 업무와 관련되는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촌진흥청, 지자체(시·도/시·군) 및 농협 등 관련기관의 위기 대응 활동에 적용

다.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과 농산물 등에 대하여 적용

제4절 용어의 정의

가. 위기관리

위기에 대한 예방 및 위기발생 시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 위기정보의 사전 수집, 위기수준 평가, 위기관리계획서의 작성, 위기대응 훈련, 위기사후 평가,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등의 관리 업무를 말함

나. 위기요인

위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또는 위기의 원인이 되는 사물, 사람 또는 주변 환경의 상태나 조건

다. 위기수준

위기요인의 조직의 비전에 미치는 영향력, 위기 요인의 소재, 위기 시 대응의 시간적 여유에 따른 위기의 위험 강도에 대한 척도

라. 위기경보

위기요인에 대한 위기수준별로 등급을 부여하여 해당사항 발생 시 발령하는 것(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마. 위기평가

위기요인에 대한 위기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위기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위기에 관한 발생원인, 위기진행과정, 대응방안, 주변환경 등의 정보를 관련 이해관계자 특히 언론 미디어와 주고 받는 일

사. 위기정보 모니터링

하나의 위기요인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

제5절 위기 형태

가. 농산물 내 농약, 중금속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국민의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되거나 그 우려로 인해 심리적 동요에 따른 해당 농산물의 소비 급감으로 농업인의 피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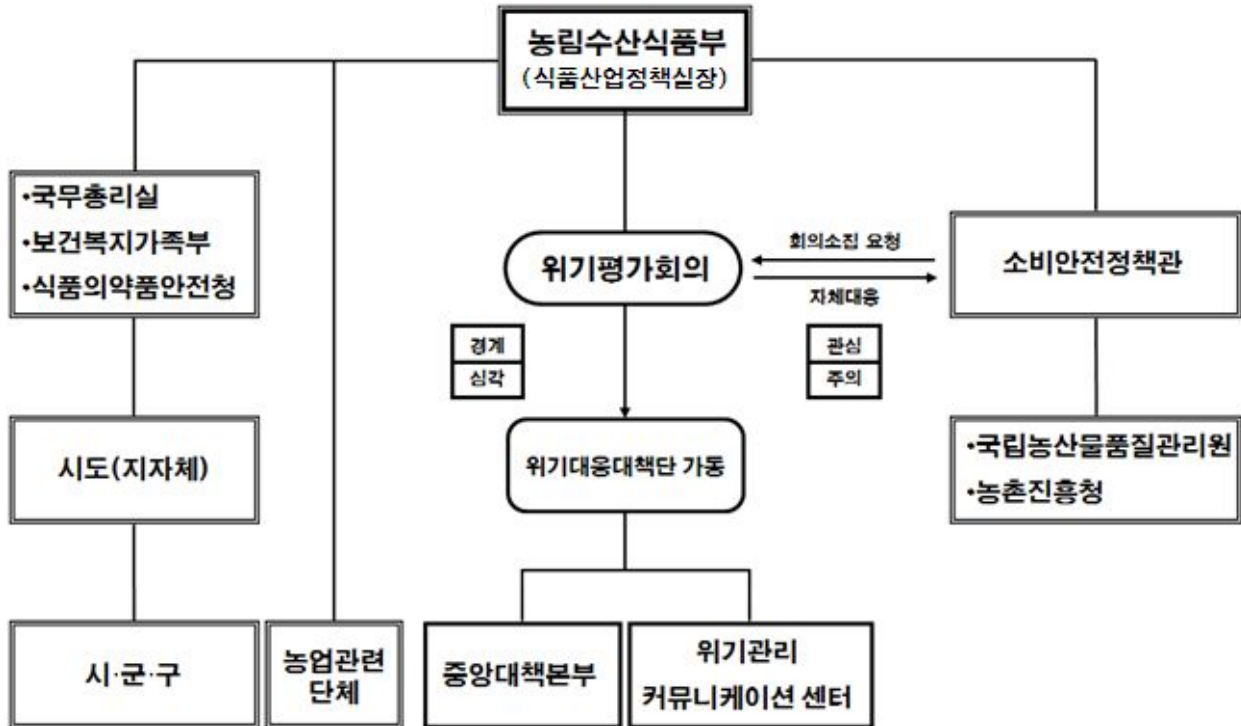
나. 생산· 및 전처리 단계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농산물 소비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

제6절 위기 경보

1.6.1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단 기준	비 고
관 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유통·판매 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사례 발생 - 일부지역에서 농산물의 중금속 허용치 초과 사례 발생 - 농산물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 감지 -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 농산물 유해물질 문제 제기 	징후활동 감시 및 주관국 대응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농산물에서 금지농약 또는 잔류농약 기준초과 사례 다수 발생 - 국내 농산물의 중금속 허용치 초과 다수 사례 발생 - 농산물에서 병원성 미생물 검출 - 언론에서 농산물 유해물질 검출 발생 사례 보도 	협조체계 가동 (위기평가 회의)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금지 농약 다량 사용 문제 제기 -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 심각성 제기 -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농산물 소비로 식중독사고 발생 - 국민동요나 언론보도가 심각하게 확산 	대비계획 점검 (중앙대책 본부구성)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금지 농약 등 유해물질 공포 전국적 확산 징후 -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 공포 전국적 확산 징후 - 식중독으로 인명피해 발생 및 전국적 확산 징후 - 언론보도로 사회문제 확대 및 농산물 소비 급감 	즉각 대응태세 돌입

1.6.2 위기경보 발령 체계도



1.6.3 위기경보 절차

- 위기경보 의사결정
 - 위기경보 발령을 위한 의사결정 자문(위기평가회의)
 - 최종 의사결정(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위기경보 발령 단계
 - 1단계 : 위기 징후 포착 또는 발생 예상 시 위기경보 준비
 - 2단계 : 위기평가회의에 위기경보 발령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험 수준 평가(내부 위기평가회의 개최)
 - 내부위기평가회의 :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촌진흥청 등
 - 3단계 : 위기경보 발령 및 행정안전부·유관기관 등에
발령내용 통보

- (1) 농림수산물식품부 관련국(소비안전정책관)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촌진흥청 등 소속기관과 관계기관들의 농산물 안전 분야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수집된 제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공유
 - 소속기관은 위기징후목록 작성, 징후 발견보고 및 전파의무
- (2) 농림수산물식품부(소비안전정책관/안전위생과)는 농산물 유해물질 위기와 관련된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주의」 이상 수준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식품산업 실장이 주관하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그 위협 또는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 모색
- (3) 위기수준 평가시 상황의 심각성 및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확한 위기수준 평가를 위해 유관기관은 관련 정보를 제공
 - 위기형태에 따른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등) 초과 검출건수/초과검출지역/발생상황 등 정보 통보
 - 위기 형태에 따른 식중독균명/식중독발생인원수/발생지/발생상황 등 관련 정보 통보
 - 위기대응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지원 등 관련 정보 요청 및 협조

- (4)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수준에 해당하는 경보를 발령하고,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
- (5)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위기경보(심각)를 발령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경보를 발령
- (6) 위기경보 수준을 조정(심각→경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재조정

1.6.4 위기평가회의

가. 목적

- 농산물 안전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적 혼란 및 관련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위기상황 분석·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전략 모색

나. 구성

- 식품산업정책실장(의장), 소비안전정책관, 대변인, 안전위생과장, 소비안전정책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안전과장), 농촌진흥청 등으로 구성
 - ※ 필요시 농협, 학계 등 외부전문가 참석

다. 운영

- 소집 : 농산물 안전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 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소비안전정책관의 요청에 따라 식품산업정책관이 결정
- 평가 : 상황의 심각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및 대응전략 마련
- 결과 : 위기수준 평가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등을 수록한 회의록을 작성, 장·제2차관 보고 및 관리

라. 임무

- 위기 수준에 대한 판단 및 평가, 대응전략 모색
- 평가결과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인 경우 중앙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가능한 구체적(인원, 주관부서 등)으로 결정

1.6.5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 운영

위기경보 구분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대책본부장	소비안전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	
운영방법	평상시 업무와 연계 처리 주의 상황에서 위기평가회의 운영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 위기의 특성·정도 등 상황을 고려하여 장관 또는 차관으로 격상 가능

1.6.6 중앙대책본부 운영

가. 목적 및 운영기간

- 목적 :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으로 국민건강보호 및 농업인 피해예방, 신속한 복구 대응
- 운영기간 : 경계(Orange) 이상 단계부터 상황 종료시 까지
 - 「관심·주의단계」에서는 해당 국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위기대응대책단 구성없이 관련국에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즉시 대응
 - 「경계단계」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위기대응 역할을 수행
 - 「경계단계」부터는 중앙대책본부로 확대·운영
- 장 소 : 농림수산식품부 상황실
 - 중앙대책본부 확대·운영으로 공간이 협소할 경우 별도 회의실에 대책본부 설치

나. 조직구성 및 임무

- 중앙대책본부는 본부장, 부분부장 아래에 총괄반, 수급반, 조사반 및 생산관리반, 기술지원반을 두고, 각 반별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상황전개 추이에 따라 조정, 운영
- 중앙대책본부에 스텝조직으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구성·운영
- 각 반별 임무는 각종 상황의 신속한 파악·보고, 대외홍보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유지(자료제출 포함)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이행
- 각 반별로 상황을 고려, 반장이 주관하여 내부적으로 세부 운영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위기경보별 대책본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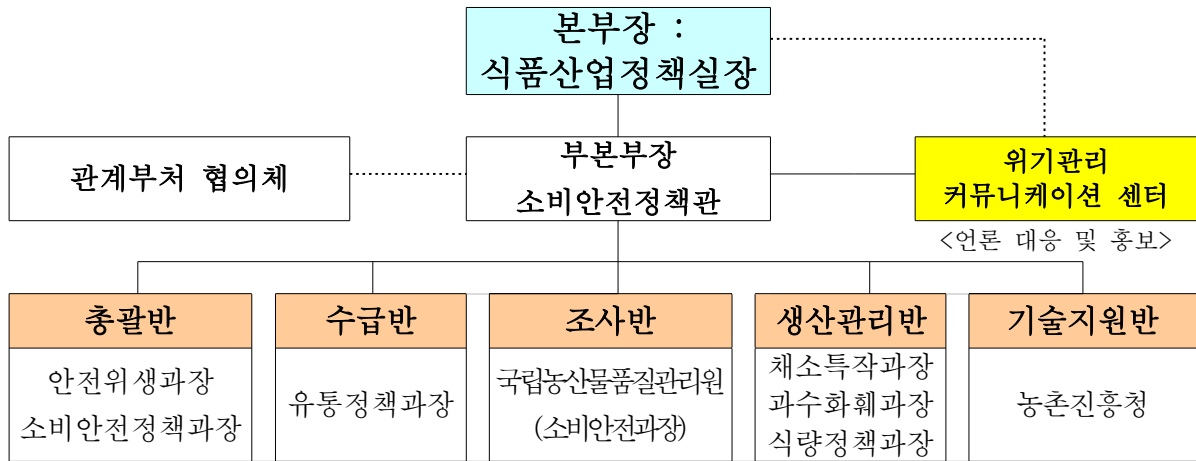
□ 「관심·주의」 단계

- 지휘 : 소비안전정책관
- 관련부서 :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 관련부서에서 평상시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함
 - 관심단계 등에서 상황변화가 없고, 관련규정에 의한 대응처리 방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운용함
- 근무요령, 인원구성은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상황 보고, 대응시기 등은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함

□ 「경계·심각」 단계(중앙대책본부)

- 본부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부본부장 : 소비안전정책관)
 - ※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관 또는 차관으로 격상시킬 수 있음
- 언론대응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대변인)
- 추진 : 대책본부 5개 반(반장은 과장급으로 구성)
- 주관부서 지정
 - 해당 반별 주관부서 지정은 위기형태, 위기등급, 주요 관련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소속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반별로 주관부서 협조부서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음

<중앙대책본부 구성도>



○ 반별 임무

- 반별 임무를 숙지하여 위기대응대책단 가동시 상호 협조체계 유지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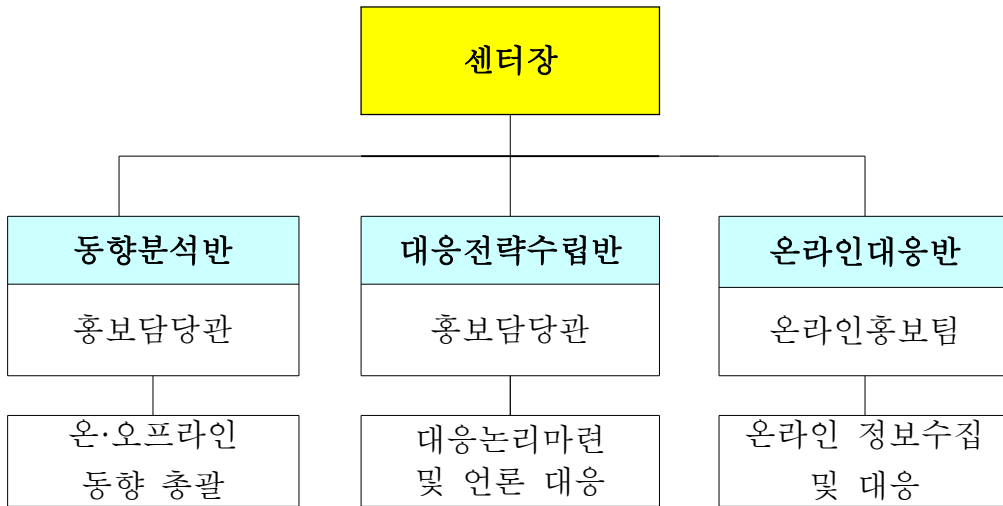
구분	주요임무	주관부서
본부장	- 농산물 안전 위기대응 총괄	식품산업정책실장
부분부장	- 본부장 보좌 및 업무조정	소비안전정책관
총괄반	- 일일상황 및 대책 종합 - 소속기관,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 안전성 검사결과 종합 및 관리대책 강구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수급반	- 농산물 시장동향 보고 - 농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	유통정책과
조사반	- 산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 - 시·도 및 농업인 단체와의 협조체계 유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생산관리반	- 농산물 생산 동향 파악 및 관리 - 오염농산물의 관리(폐기, 출하금지 등)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식량정책과
기술지원반	- 오염농산물에 대한 안전수준 평가 등 기술지원	농촌진흥청

※ 반별 상호 협조 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체계 확보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구성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대변인,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 위기대응 홍보반으로 구성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 주요 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비 고
센터장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반 총괄 - 언론대응 및 홍보, 대책발표	대변인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반	-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 농식품부 대책발표나 조치에 대한 여론조사	홍보담당관
위기대응 홍보반	- 대언론 신속대응 커뮤니케이션 수행	온라인홍보팀장

제7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1.7.1 위기대응 지침

- 신속·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부내 책임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경계·심각」의 정보발령 시 주관부서는 「중앙대책본부」를 구성·가동
- 주관부서를 주축으로 소속기관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소속기관과 관련기관에 상황을 전파, 대응, 연락 및 홍보를 지원
- 위기평가회의 결과 「관심·주의」 수준에서는 해당국장 중심으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대응하고, 「경계·심각」 수준에서는 즉시 「위기대응대책단」가동·운영

예상 안전문제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금지 농약 검출(또는 우려되는 상황) ○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농산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 (또는 우려되는 상황) ○ 폐금속광산 지역 토양에서 중금속 과다검출 (또는 우려되는 상황)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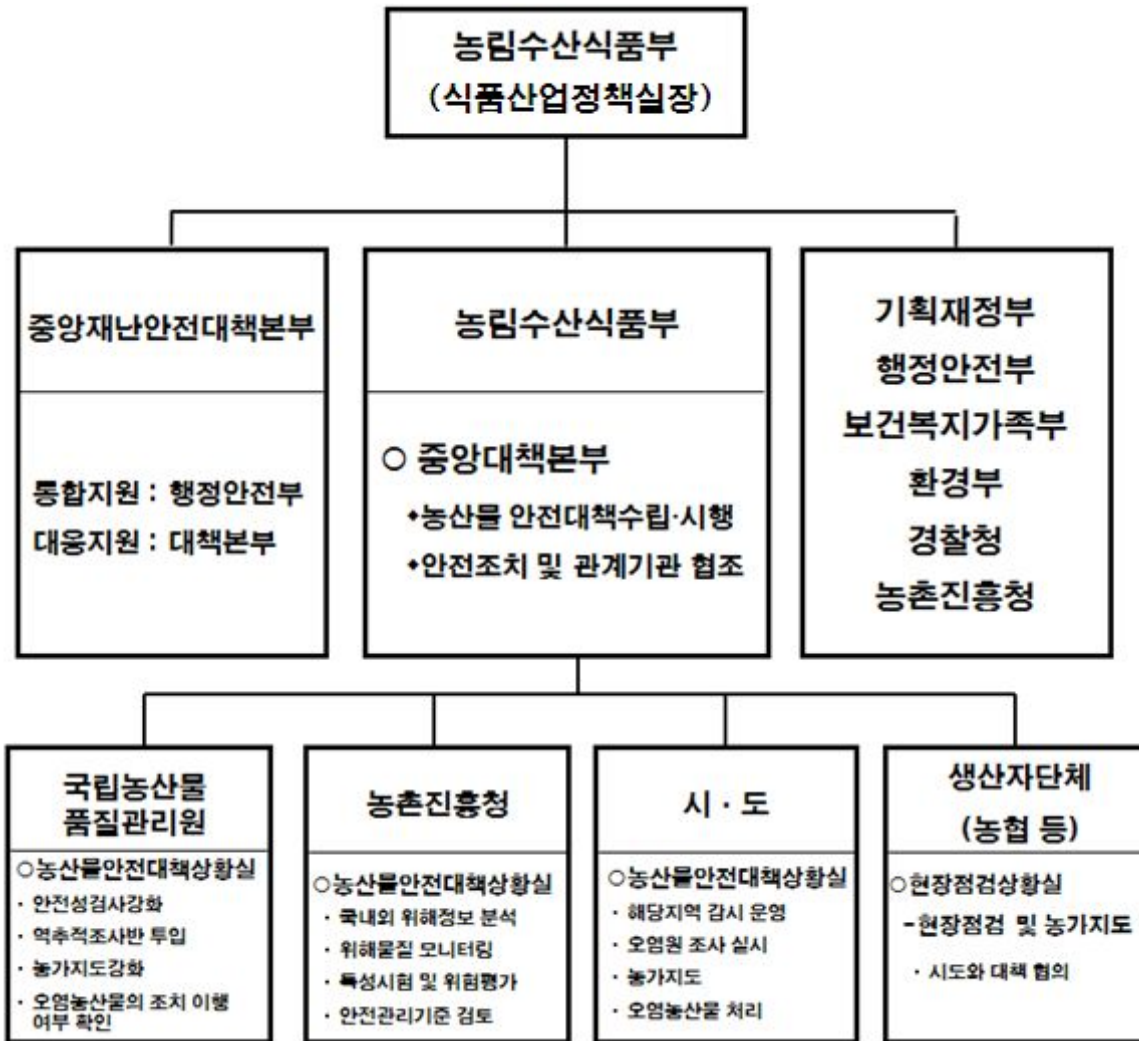
- 중앙대책본부는 위해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당 업무 담당자(직전 담당자 포함) 이외 법률·예산·홍보 담당자까지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중앙대책본부는 위해요인별로 식약청, 국무총리실, 국정홍보처, 시·도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지원체계 형성
- 주관부서 또는 중앙대책본부는 「단계별 조치방안」에 따라 문제 진행 단계에 맞춰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

1.7.2 판단/고려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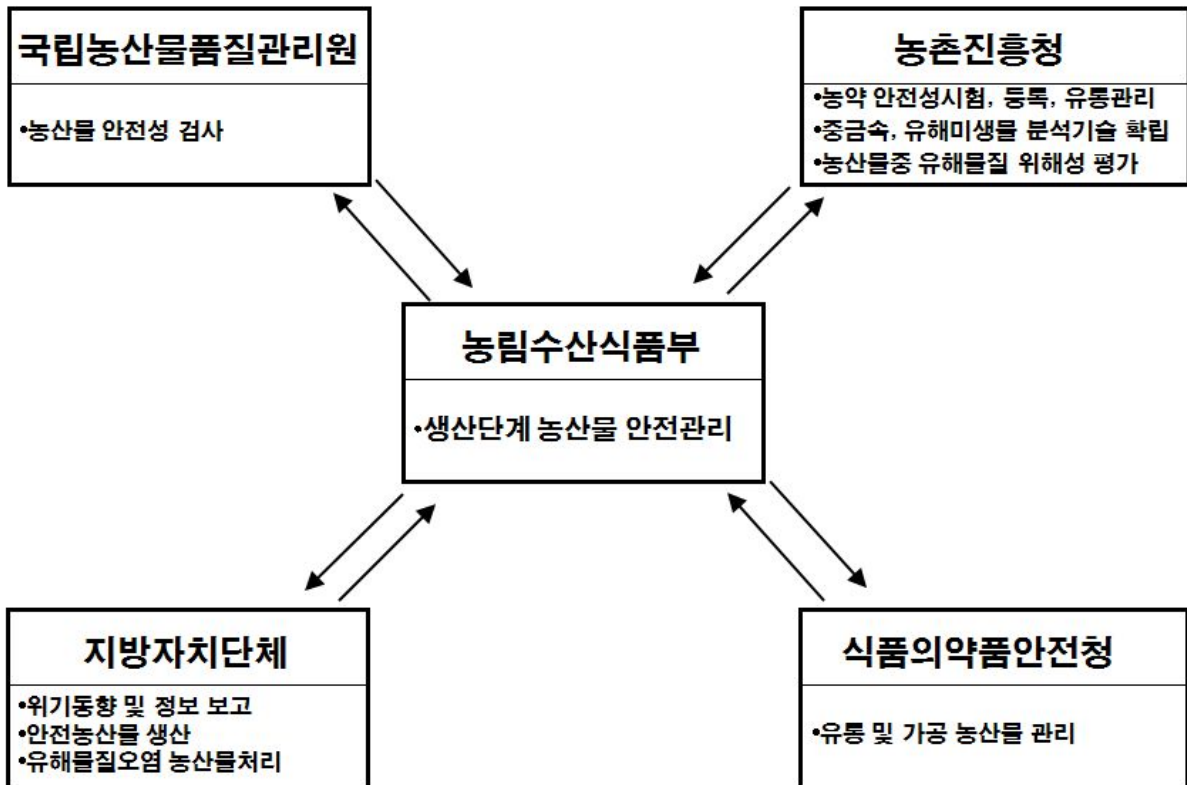
- 접수된 현장정보의 평가 후 긴급 대응조치 여부
- 위기의 단계별 평가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의 위기상황이 전개될 경우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대응방안 공동 강구 등 협조체계 구축 여부
- 농업의 피해확산 가능 및 피해최소화 방안 확보 여부
- 대 국민 홍보체계 구축 및 홍보 역량 확보 여부

제8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1.8.1 종합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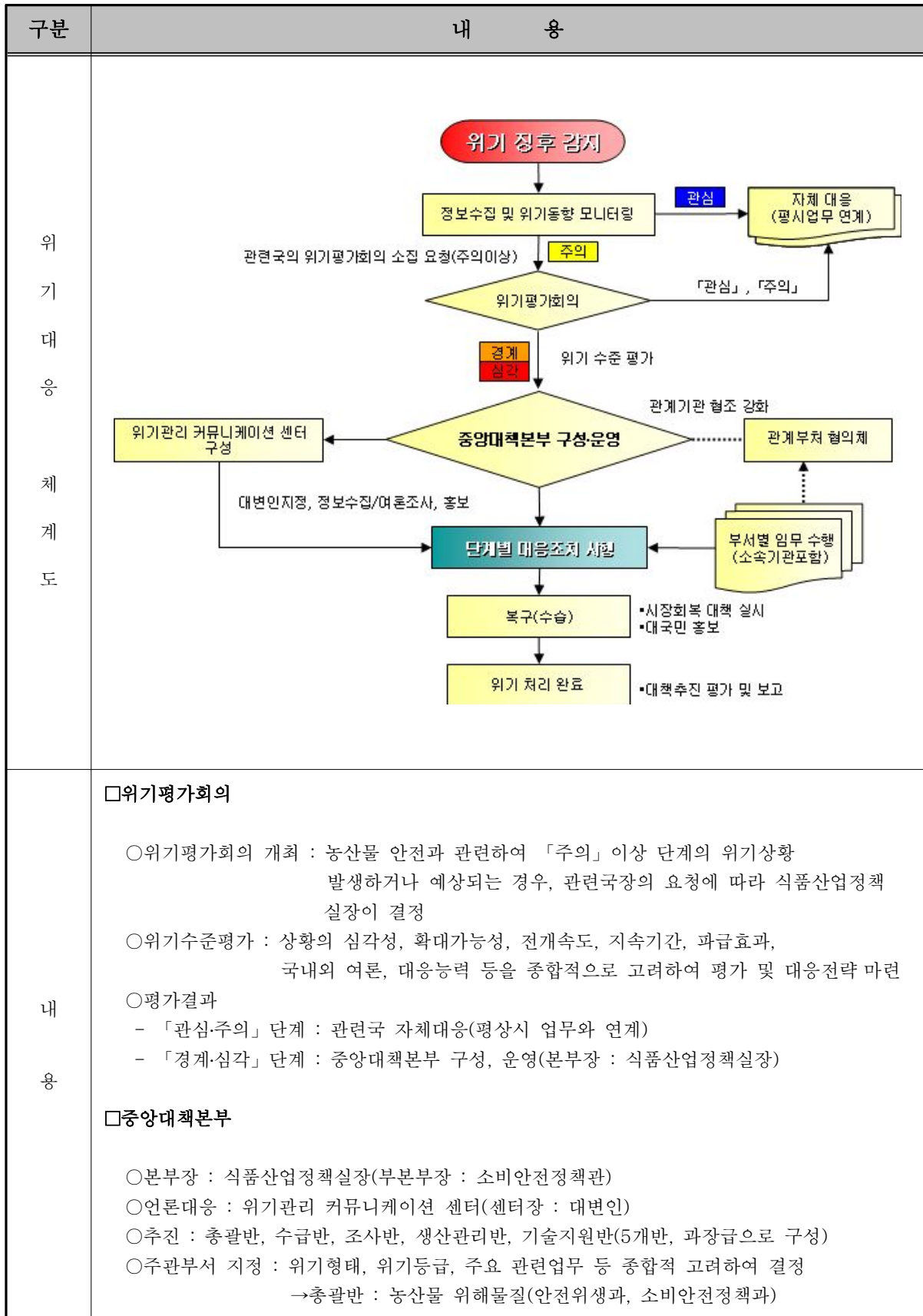
1.8.2 농산물 안전업무추진 체계



1.8.3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 농림수산식품부: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운영, 생산·유통·판매단계 유해물질조사 및 농약사용기준 설정 및 지도
-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가공·유통단계 안전관리 및 허용기준설정
- 지방자치단체: 농가지도, 생산·수입·가공·유통단계 유해물질검사

1.8.4 위기대응 체계도



1.8.5 기관별 주요 임무

□ 총괄표

구 분		주 요 임 무
본부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농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상시수집체계 강화 ○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상황을 상시 파악, 경보 전파 ○ 농산물 안전정보 분석 및 단계별 대응체계 강화 ○ 위해물질 검출 (국내·수입산)농산물 검사 강화
	채소특작과/과수화훼과 /식량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소 발견된 농산물 생산동향 파악 ○ 오염농산물의 관리 총괄
	유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시장동향 파악 ○ 농산물 소비촉진대책 시행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기관 자료 배포 등 ○ 기자간담회, 브리핑 담당 ○ 대 국민 홍보
소속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농산물 안전성검사 실시 ○ 오염농산물 조치 이행여부 확인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안전성 평가 ○ 국내외 농산물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관계기관	지자체(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농산물 처리(폐기·출하 금지 등) ○ 산지 농산물 안전 출하 감시 ○ 지역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기타 (총리실·식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별로 협의체계 유지 ○ 관련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 관계기관 대책회의 협의

1.8.6 단계별 위기대응 조치사항

관심(Blue)

구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비고	
위기징후 인지	안전위생과/소비안전정책과 채소특작과/과수화훼과/식량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안전문제 관련 정보 파악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위기경보 접수·전파	안전위생과/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식량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을 작성 또는 접수, 내부보고 ○ 위기확산 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 「관심」 단계에서는 평상시 업무 연계하여 대응 ○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및 경보 전파 		
대응 조치	본부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징후 인지 내용 보고 ○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 수집된 안전정보 상시 수집 체계 유지(일상업무 연계) ○ 수집 정보 분석 및 단계별 대응체계 점검 ○ 관계기관 및 소속기관 정보 공유체계 및 협조체계 유지 ○ 국내농산물 안전성 검사(계획) 추진 	
		채소특작과/과수화훼과 /식량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생산, 소비, 가격 등 수급 동향 파악 	
		유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시장동향 파악 ○ 농산물 소비촉진 대책 점검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회견담회, 브리핑, 기고, 기획보도 등 일상업무 유지 ○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필터링실시)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점검 	
	소속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계획대로 추진) ○ 산지농산물 유해정보 상시수집 체계 유지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농산물 안전정보 동향파악 ○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안전성 조사연구(일상업무 추진) 	
	관계기관	지자체(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기타 (총리실·식약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별로 보고 및 협의체계 유지 	

주의(Yellow)

구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비고	
위기정후 인지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위해요소의 발생 및 언론 보도 동향 파악 ○ 농업인 및 관련업계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위기경보 접수·전파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 내부보고 ○ 「주의」 단계의 위기발생시 위기평가회의 소집요청 ○ 위기평가회의 결과 「경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시 즉각 중앙대책본부 구성, 운영 ○ 평가결과 「관심·주의」 단계인 경우 평시 업무 연계하여 대응 ○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및 경보 전파 		
대 응 조 치	본 부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 실시 ○ 해당 분야별 위기대응 대책 능력 점검 ○ 국내농산물 안전성 검사 철저 추진 ○ 관계기관 협의 및 대책회의 개최(협의사항 전파) ○ 위해물질 설정기준 및 법적근거 등 검토 ○ 관련업계 지속적 위기대응 협조요청 ○ 상황보고체계 유지(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채소특작과/과수화훼과 /식량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생산, 소비, 가격 등 수급동향 파악 ○ 위해요소 발견된 농산물 생산동향 분석 	
		유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시장동향 파악 ○ 농산물 소비촉진대책 강화 및 시행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배포(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등)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점검 	
	소 속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소에 대한 국내산 농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 위해요소에 대한 국내외 농산물 안전정보 수집 강화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농산물 안전정보 동향 파악 ○ 위해물질 모니터링 및 안전성 조사 강화 ○ 농약, 중금속, 미생물 독성평가 및 허용기준 설정검토 : 식약청 협조 	
	관 계 기 관	지자체(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및 교육 강화 ○ 지역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기타 (총리실·식약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별로 협의체계 유지 ○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협조 	

경계(Or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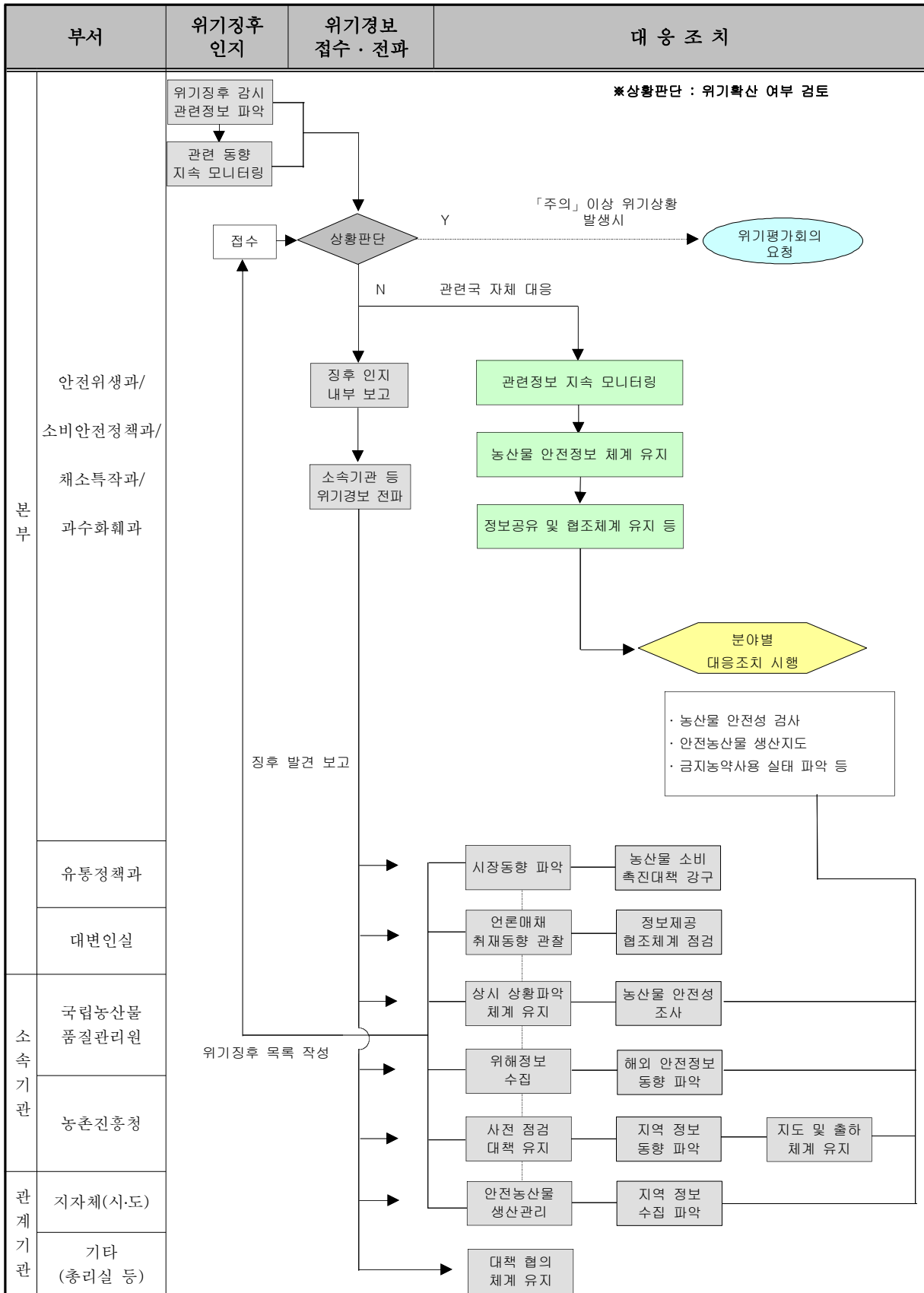
구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비고	
위기징후 인지	안전위생과/소비안전정책과/ 채소특작과/과수화훼과/식량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위해요소의 타지역 전파 및 확산 정보 파악 ○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위기경보 접수·전파	안전위생과/소비안전정책과/ 채소특작과/과수화훼과/식량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을 작성 또는 접수, 내부보고 ○ 위기평가회의 결과 「경계」 단계인 경우 즉각 중앙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상황 접수·보고 ○ 관련부서,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및 경보 전파 		
대응 조치	본부	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부 중앙대책본부(본부장:: 식품산업정책실장) 가동 -반별 기능 및 역할 분장 ○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농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 개최 ○ 국내산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추진 ○ 위해물질 사용금지 등 지도 강화 ○ 현지 실태조사 및 점검 ○ 소속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및 정보공유 ○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수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시장동향 파악 및 보고 ○ 농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 	
		조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안전농산물 출하 지도 강화 ○ 농업인 동향 점검 ○ 시도, 농업인 단체와의 협조체계 강화: 농협과 업무 협조 	
		생산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생산, 재고동향 보고 및 점검 강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강화 ○ 브리핑 실시 : 종합대책 수립 사항 등 ○ 대 국민 홍보활동 및 관련 동향 파악 강화 	
	소속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농산물 조치 이행여부 확인 강화 ○ 생산·유통·판매 단계 농산물 안전성검사 대폭 확대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농산물 위해사고 정보수집 및 동향파악 ○ 농약, 중금속, 미생물 독성시험 및 위험평가강화 ○ 식중독 원인구명 및 역학조사 실시(식약청 협조) 	
	관계 기관	지자체(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비상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구성 운영 ○ 관할구역 내 관련 상황을 정리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 지역의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강화 ○ 지역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 오염농산물의 처리 강화 	
		기타 (총리실·식약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별로 협의체계 강화 ○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협조 	

심각(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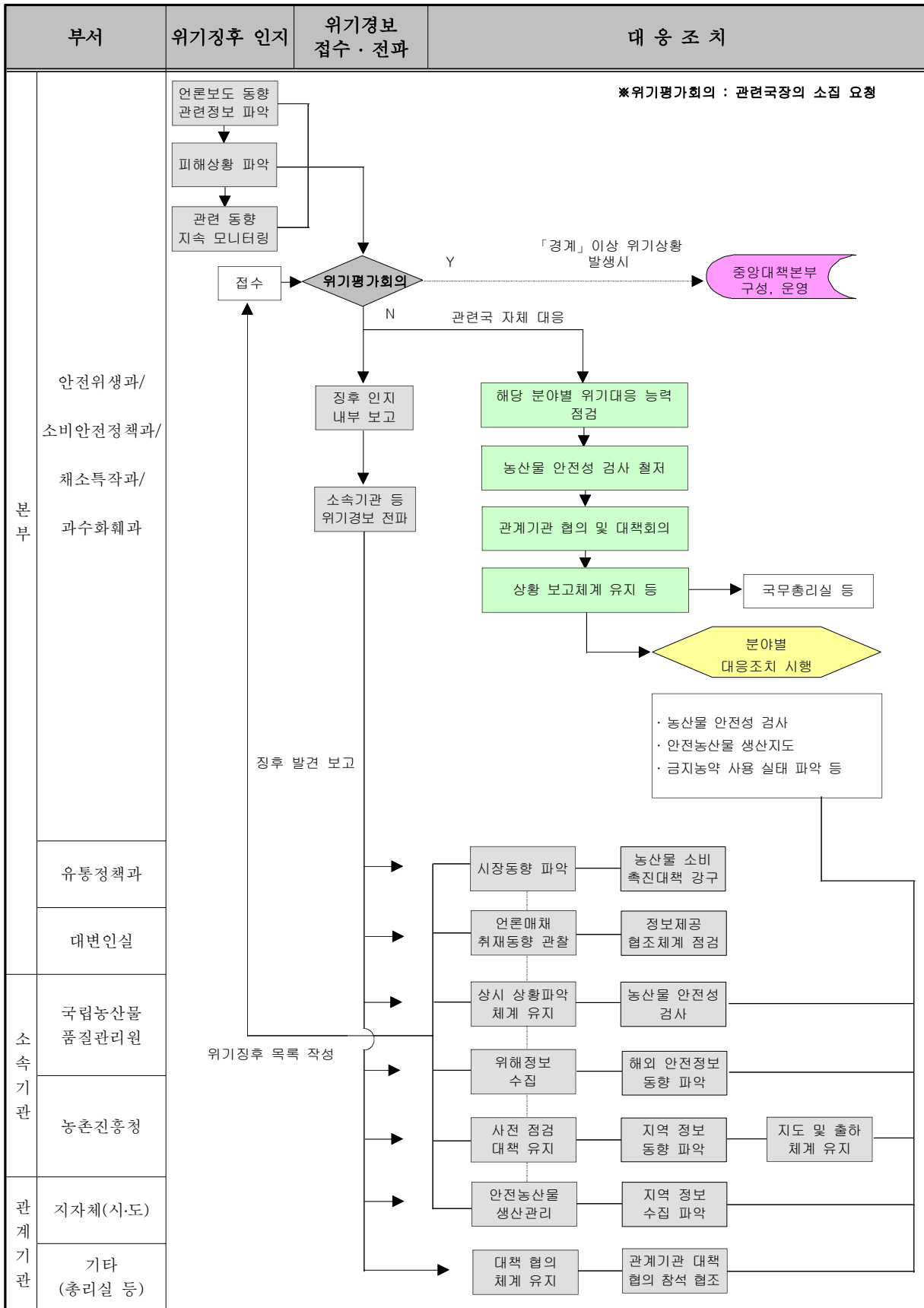
구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비고	
위기징후 인지	안전위생과/소비안전정책과/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및 소비급감 동향 파악 ○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위기경보 접수·전파	안전위생과/소비안전정책과/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접수되는 위기상황 보고 ○ 중앙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상황 보고 ○ 위기경보 및 상황을 관련부서,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전파 		
대응 조치	본부	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식품부 중앙대책본부(본부장:식품산업정책실장) 가동 ○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분야별 비상운영대책 즉시 시행 ○ 관계부처 대책 회의(국무회의보고, 당정협의회 등) ○ 위해물질 사용금지 및 오염농산물 출하감시 철저 ○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전면 실시 ○ 국내 사용금지 농약 사용 실태 파악 ○ 농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강구 ○ 상황보고(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수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시장동향 파악 및 보고 ○ 농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 ○ 피해 업계 파악 및 지원대책 강구 추진 	
		조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안전농산물 현장 출하 지도 및 감독 강화 ○ 농업인 동향 파악 및 보고 ○ 시도 및 농업인단체와의 협조체계 강화 	
		생산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농산물 생산, 재고 동향 파악 및 보고서 작성 ○ 피해농산물 생산동향 파악 및 대책 수립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 위기대응조치 강구(농식품부내 홍보협의회 개최)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강화 ○ 브리핑 실시 : 종합대책 수립 사항 등 ○ 대 국민 홍보활동 및 관련 동향 파악 강화 	
	소속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추적 조사 ○ 오염농산물 생산지역 조사 품목 확대 및 안전성조사 전면 실시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농산물 위해사고 정보수집 및 동향파악 강화 ○ 농약, 중금속, 미생물 위험평가 강화 및 저감화 방안 마련 ○ 식중독 원인구명 및 역학조사 실시(식약청 협조) 	
	관계 기관	지자체(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출하 금지, 폐기·반송 등 위해농산물 공급차단 조치 ○ 일일 상황 보고(매일 19:00) ○ 지역내 관련정보 수집 강화 및 동향파악 보고 ○ 지방비상대책본부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 지역내 농산물관련 농업인 피해상황 보고 ○ 국내산 농산물 판매·홍보 협조 강화 : 농협 협조 	
		기타 (총리실·식약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별로 협의 강화 ○ 관계기관 대책회의 확대 개최 	

1.8.7 단계별 위기대응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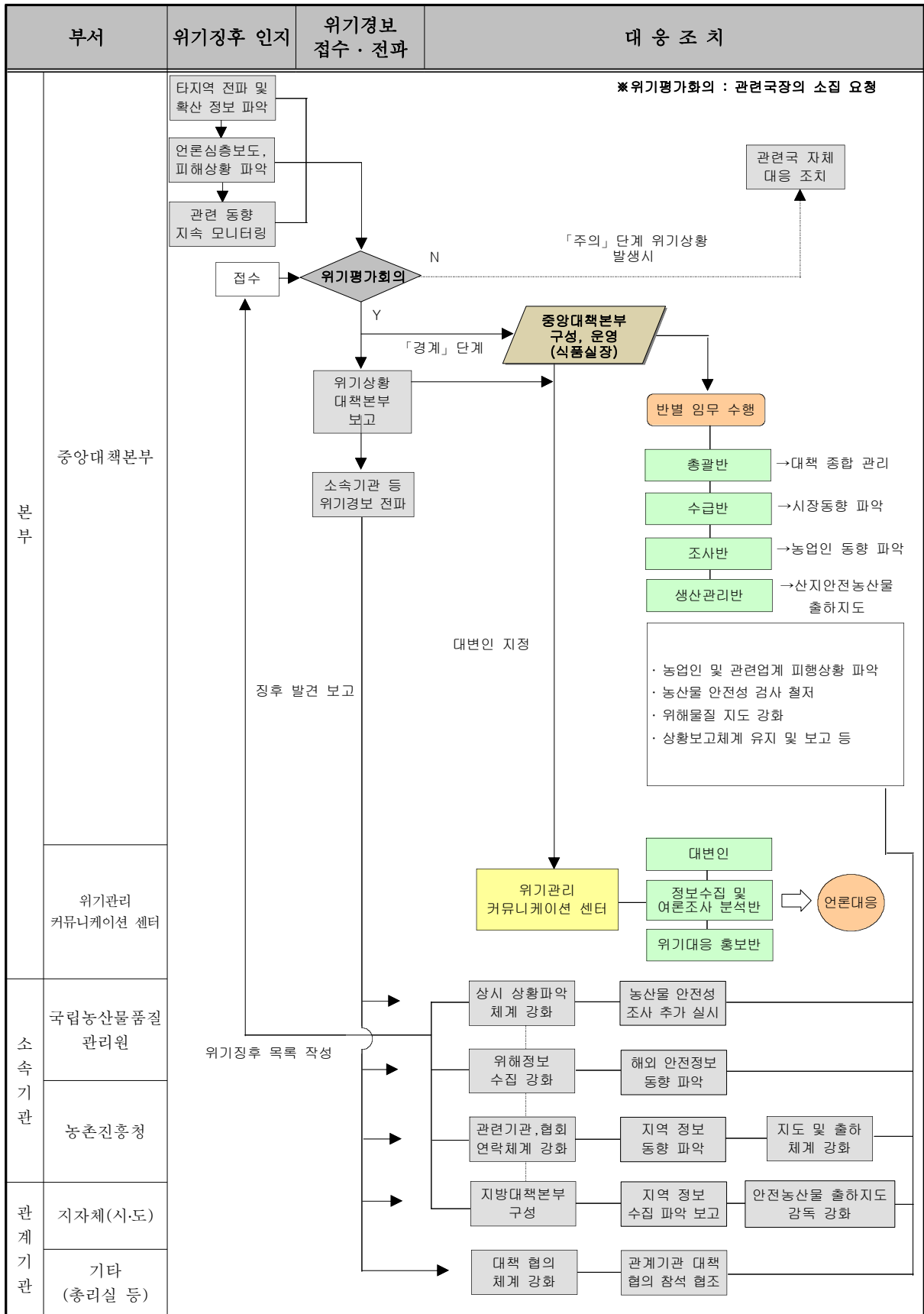
□ 관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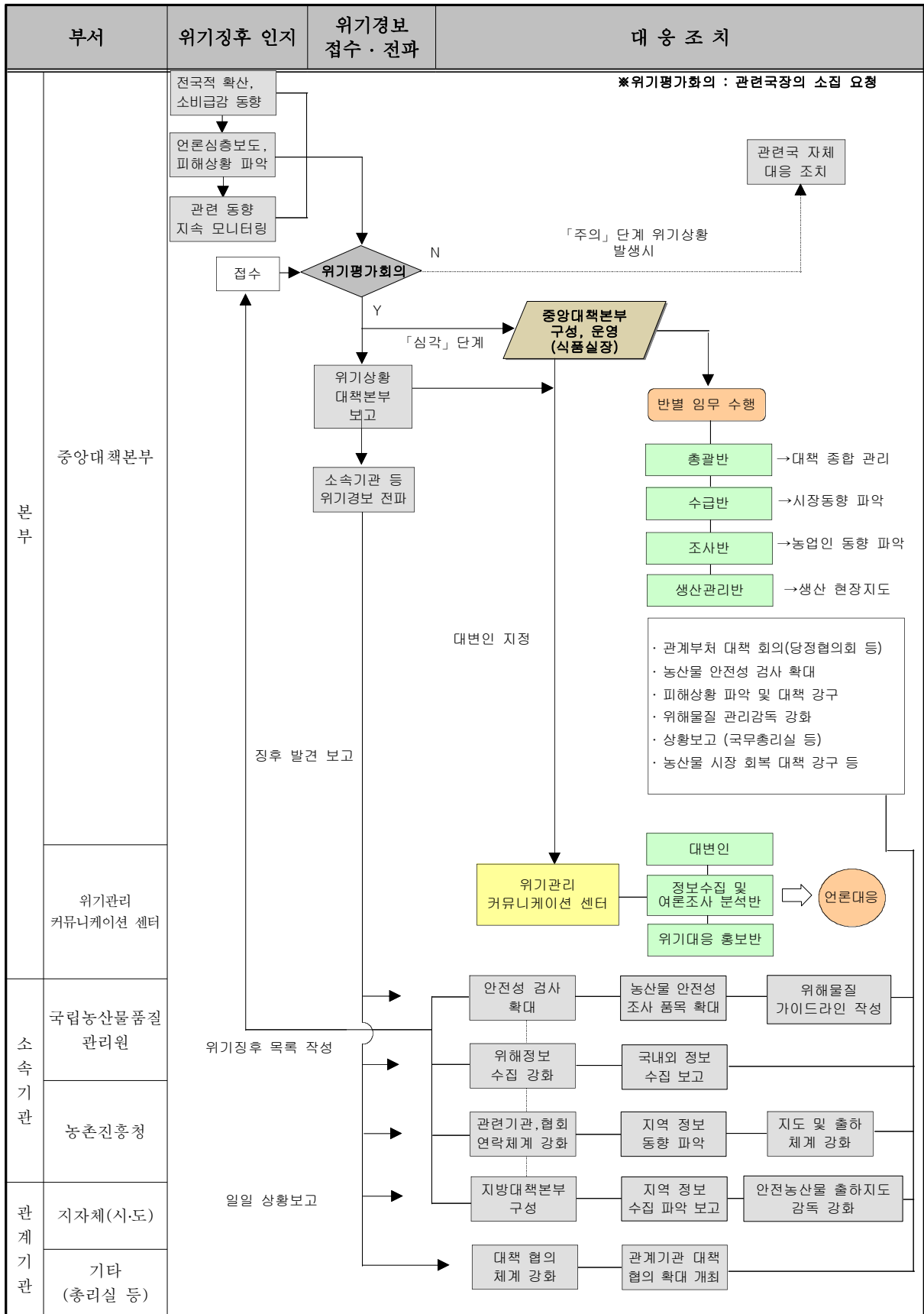
□ 주의단계



□ 경계단계



□ 심각단계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2.1.1. 상 황

- 생산·유통·판매 단계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초과 사례 발생
- 일부지역에서 농산물의 중금속 허용치 초과 사례 발생
- 농산물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 감지
-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 농산물 유해물질 문제 제기

2.1.2 조치사항 및 절차

2.1.2.1 조치 목록

구 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 국내발생동향 · 정보과약 및 확인	○ 국내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검토를 통해 관련정보 파악 ○ 관련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 농식품부(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 소속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 관계기관 (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등)
○ 정보공유 및 상황 전파	○ 농관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위기정보(관심) 접수 ○ 위기징후 인지내용 내부보고 ○ 유관기관 등에 관련 정보 제공 및 상황 전파	○ 농식품부(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 소속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 관계기관 (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등)
○ 관심단계 대비 조치 시행	○ 농산물 안전성정보 및 관련 동향의 지속적 모니터링 ○ 소속기관, 관계기관 협조체계 유지 및 정보 공유 ○ 상황 전파	○ 농식품부(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 소속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 관계기관 (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등)

2.1.2.2 조치 내용

□ 농산물 안전성동향, 정보파악 및 확인

-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잔류조사 결과의 수시 점검
 - 정기조사 결과 분석
 - 인체위해 우려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수시 점검
- 국내 언론의 농산물 안전성관련 보도내용 수집 분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징후를 통보받고 현지동향을 모니터링

□ 정보공유 및 상황 전파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을 작성 또는 접수하여 내부보고
 - ※ 서식 : '초기 상황보고 서식(내부보고용)'(첨부2) 참조
 - 위기상황 접수 즉시 관련국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 징후의 위협 또는 수준을 자체 평가
- 위기확산에 대한 검토를 자체적으로 실시
- 위기정보를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 통보

□ '관심'단계 대비조치 시행

- 주관부서의 업무현황 파악체계를 갖추고,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소속 기관 및 관계기관에 위기단계(관심) 대응조치 시달
-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소속기관, 농업관련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위기정보를 수집하고 공유
- 관련기관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필요한 조치 시행

2.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1.3.1 농림수산물식품부

□ 안전위생과/소비안전정책과

- 농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상시 수집 체계 유지
 - 일상적인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 추진
- 수집된 농산물안전성 정보 분석 및 단계별 대응체계 점검
- 소비자 단체와 정보교류 및 위해요소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

□ 유통정책과/채소특작과/과수화훼과/식량정책과

- 농산물 시장동향 파악
- 농산물 생산, 소비, 가격 등 수급 동향 파악
 - 일상적인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 추진

□ 대변인실

- 기자간담회, 브리핑, 기고, 기획보도 등 일상업무 유지
 - 신문·TV 등 언론매체의 관련기사는 물론 출입기자의 취재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문제화 가능사항에 대한 필터링 실시
 - 농산물 안전 및 예방을 위한 홍보
 - 언론보도 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점검
 - ※ '농림수산물식품부 위기관리 언론대응 행동지침'(첨부6), '농림수산물식품부 언론대응 매뉴얼(첨부7)' 참조
 - 보도자료 등의 배포 시 소속기관과 사전 협의 실시
 - 온라인 네티즌 동향 점검

2.1.3.2 소속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안전과)
- 국내농산물 안전성검사 실시(일상적 추진)
- 산지 농산물 유해정보에 대한 상시 수집 체계 유지

- 농촌진흥청
- 국내·외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정보 관리동향 분석
-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국내 농산물중 유해물질 및 안전성 평가 및 결과 보고

2.1.3.3 관계기관

-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
- 국내외 농산물 안전정보 수집 및 체계적 정리
- 농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온라인 홍보

제2절 주의

2.2.1. 상 황

- 농산물에서 금지농약 또는 잔류농약 기준초과 사례 다수 발생
- 농산물의 중금속 허용치 초과 사례 다수 발생
- 농산물에서 병원성 미생물 검출
- 언론에서 농산물 유해물질 검출 발생 사례 보도

2.2.2 조치사항 및 절차

2.2.2.1 조치 목록

구 분	세부내용	부서
○ 위기징후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위해요소 발생 및 언론 사례 보도 개시 ○ 농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 소속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 관계기관 (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등)
○ 위기경보(주의)접수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으로부터 위기경보(주의)접수(위기평가회의) ○ 접수한 위기경보를 관련기관에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 소속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 관계기관 (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등)
○ 주의단계 대비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협의회 개최 ○ 위기확산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중앙대책본부 구성 ○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결과 수시보고 및 분석 ○ 산지 안전성 지도 철저 ○ 소속기관과 관계기관간 긴밀한 상황 대응체계 구축 ○ 안전농산물 소비 홍보 ○ 언론보도 자료 배포로 사태 확산 방지 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언론계에 발생상황, 조치계획 등 발표 - 명백한 사실위주의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 소속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 관계기관 (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등) ○ 지자체(시·도/시·군)

2.2.2.2 조치 내용

□ 위기징후 인지

- 농산물 위해요소의 발생 및 언론 보도동향 파악
 - 소속기관보고 · 관계기관 통보 · 언론보도 · 민원 등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 등에 대한 위해요인을 주관부서가 인지한 상황
- 농업인 및 관련업계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안전문제 또는 과거 유사한 안전문제는 주관부서가 기존 업무 처리예에 따라 처리함

□ 위기경보(주의) 접수 및 전파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을 작성 또는 접수하여 내부보고
 - 농산물 안전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 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련업무 해당 국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위기평가회의 소집을 결정
 - ※ 서식 : '위기평가회의 보고서'(첨부3) 참조

<위기평가회의>

- 구성 : 식품산업정책실장(의장), 소비안전정책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안전위생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안전과장), 농촌진흥청 등으로 구성
 - ※ 필요시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정보센터 및 외부전문가 참석
- 평가 : 상황의 심각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대응능력 등을 종합 고려
- 결과 : 위기수준 평가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등을 수록한 회의록을 작성, 장·제2차관 보고 및 관리

□ ‘주의’단계 대비조치 시행

○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위기상황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정보공유

○ 위기확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중앙대책본부 구성 등 종합대응 필요성을 결정(식품산업정책실장 보고)

- 문제인식 후 2일(48시간) 이내 보고 실시
- 위기확산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중앙대책본부 구성안(구성원별 역할분담) 및 관계부서(기관)별 협조체제안을 마련하여 함께 보고
- 확산가능성이 없을 경우, 주관부서의 자체 대응방안 보고
- 주관부서는 농산물 안전문제로 인해 파생 가능한 사항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분석,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

○ 농산물 위해물질 검출 등 별도대책 마련이 필요한 안전문제는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를 거쳐 「중앙대책본부」 구성여부 결정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 체크리스트(例)>

- (1) 제기된 안전문제를 주관부서가 사전에 인지하였는가?
- (2) 기존 예산·법률상의 수단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가?
- (3) 특정 농산물이나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안인가?
- (4) 일반국민 또는 농업인이 체감하는 민감도는 어느 정도인가?
- (5) 언론 공개시 느끼는 민감도는 어느정도인가?

※ 필요 시 산지, 시설 등에 대한 표본조사 등 현장조사 병행

○ 위해물질 설정기준 및 법적근거 등 검토

○ 국내 농산물 생산농가 및 위해물질 관리지도 철저

- 발생 위해물질 모니터링 실시
- 출하 농산물 검사 등

- 소속기관, 단체 및 농업인간 긴밀한 상황대응 체계 구축
 - 소속기관 등 협조체제 구축으로 농업인 피해 최소화
- 언론 보도자료 배포(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등)
 - 언론동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기사화가 예상되는 등 별도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정보 공유하여 주관부서에 통보·공동대응
- 상황보고 체계 유지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 농산물 홍보 및 농산물취급 교육 강화
 - 농산물 안전관리 요령 교육 실시
 - 농산물 취급 및 안전 섭취요령 등 지속적 홍보

2.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2.3.1 주관부서

- 안전위생과/소비안전정책과
 - 각종 농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상시수집 활동을 강화
 - 일상적인 업무와 연계하여 관련 업무 추진
 - 비상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협조 강화
 - 위기의 확산가능성 검토 실시

<위기의 확산 여부에 따른 대응조치>

- 위기확산이 예상될 경우(경계단계 확대)
 - 중앙대책본부 구성 :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개반 구성
 -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성 : 국무총리실·문화체육관광부, 식약청, 시도 등
- 위기확산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에서 즉시대응
 - 위기 발생 단계를 고려하여 농관원 등 소속기관과 공동으로 본연의 업무와 연계하여 대응

- 농관원 등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상황을 상시 파악, 정리하여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파하고 주요 대응사항 시달
- 농산물 안전정보 분석 및 단계별 대응체계 강화
 - 안전성 검사체제의 재점검
- 유해물질 검출 농산물 검사 강화
 - 농약 사용 지도 및 출하감시 강화 지시
 - 전처리 농산물 가공시설 점검 강화
- **채소특작과/과수화훼과/식량정책과**
- 농산물 생산, 소비, 가격 등 수급 동향 파악
 - 일상적인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 추진
- 위해요소 발견된 농산물(전처리농산물 포함) 생산동향 분석
- **유통정책과**
- 농산물 시장동향 파악
- 농산물 소비촉진 대책 강화
 -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특판 및 시식회 행사 추진

□ 대변인실

- 기자간담회, 브리핑, 기고, 기획보도 등 추진
 - 신문·TV 등 언론매체의 관련기사는 물론 출입기자의 취재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문제화 가능사항에 대한 필터링 실시
 - 농산물 피해 수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 언론보도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오인성, 추측성 보도를 금지하도록 협조 요청(사실관계가 잘못 보도되어 언론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조치 강구)
 - ※ '농림수산식품부 위기관리 언론대응 행동지침'(첨부6),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매뉴얼'(첨부7) 참조
 - 보도자료 등 배포시 소속기관과 사전 협의 실시
 - 온라인 네티즌 동향 분석
 - 왜곡·부정확한 언론보도에 해명자료 배포 등 신속 대응

2.2.3.2 소속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위해요소에 대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강화
- 위해요소에 대한 국내외 농산물 안전정보 수집 분석 강화
- 안전성 검사 결과 수시 보고

□ 농촌진흥청

- 국내·외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정보 동향 파악
-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국내 농산물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안전성 검사 강화

- 농약, 중금속, 미생물 독성평가 및 잔류기준 검토: 식약청 협조
 - 해외 유해물질 잔류기준 동향 파악

2.2.3.3 관계기관

- 농림수산정보센터
 - 국내농산물 위해정보 수집 : 식약청 협조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Food Safety)를 통한 안전농산물 홍보 강화
- 시·도
 -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강화
 - 지역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제3절 경계

2.3.1 상 황

- 사용금지 농약 다량 사용 유통 문제 제기
-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 심각성 제기
- 유해미생물에 오염된 농산물 소비로 식중독사고 발생
- 국민 동요나 언론보도가 심각하게 확산

2.3.2 조치사항 및 절차

2.3.2.1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
○ 위기징후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위해물질의 타지역 전파 및 확산정보 파악 ○ 언론의 심층보도, 농가, 업계 피해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 (중앙대책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 위기경보(경계) 접수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으로부터 위기경보(경계)접수 ○ 접수 위기경보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 (중앙대책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의 중앙대책본부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별 기능 및 역할 분장 ○ 농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최소화 등 종합대책 협의 ○ 유해물질 오염농산물 역추적실시 ○ 농약사용 지도 강화(실적보고) ○ 중금속오염 실태 조사·점검 ○ 식중독균검사 및 역추적 ○ 소속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및 정보공유 ○ 브리핑 실시: 종합대책수립사항 등 ○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 대 국민 홍보활동 및 동향 파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정례 언론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 (중앙대책본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수산정보센터 ○ 식약청 ○ 환경부 ○ 지식경제부 ○ 지자체(시도/시군) ○ 농협

2.3.2.2 조치 내용

□ 위기징후 인지

- 농산물 위해요소의 타지역 전파 및 확산 정보를 접수받고 소속기관에 통보
 - 위해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의 피해호소가 집중되는 상황
 - 위기확산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이슈(hot issue)」를 도출하고 각 이슈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 언론의 심층보도 동향 및 관련 업계 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서 및 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 위기경보(경계) 접수·전파

- 중앙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상황 접수·보고
 - 위기상황 접수 즉시 중앙대책본부장(식품산업정책실장)에게 보고
- 중앙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은 가능한 구체적(인원, 주관부서 등)으로 결정하고 협조체제 강화
- 위기경보를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

□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 중앙대책본부는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하고, 5개반으로 구성하여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위기확산을 방지
 - 중앙대책본부는 핵심이슈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관계부서(기관)에 전파하고, 위기대응 단계별 대책 총괄·조정

- 대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일관된 정부방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핵심이슈별로 작성하여 관계부서(기관)에 공유
- 분야별로 비상운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관계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대책을 수립, 중앙대책본부의 조정을 거쳐 시행
- 농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 농산물 위해물질 검출 및 식중독사고 발생 등으로 농업관련 위기상황으로 농산물 소비둔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방지 및 복구 대책 강구
-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 개최
 - 피해 최소화 등 종합대책 협의
- 금지농약 검출 농산물 역추적 추진
 - 농산물 이력추적을 통해 생산지역 확인
- 오염발생지역 폐쇄 등 오염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
 - 중금속 오염 농산물의 유통 금지 조치 시행
- 식중독균 역학검사 및 오염발생원 역추적
 - 식중독균의 규명 및 역추적을 통한 오염발생원 규명
-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보고
 -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당과제별로 관계기관과의 협조 강화
 - ※ 국무총리실·식약청과 협의 강화
- 브리핑 실시 : 종합대책 수립 사항 등
- 대 국민 홍보활동 및 관련 동향 파악 강화
- 시·도는 관할구역 내 상황을 매일 중앙대책본부에 보고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3.3.1 중앙대책본부

-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분장별 임무 숙지 및 위기대응 실시
 - 대책반별 임무를 숙지하여 위기대응대책단의 가동시 상호 협조체계 유지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 관계기관 및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위기상황을 파악, 정리하여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고 주요 대응사항 시달
- 중앙대책본부의 관계기관 합동 농산물 오염실태 및 역추적 조사 실시(식중독의 경우 식약청과 합동으로 역학조사 추진)
 - 오염농산물 전량 폐기조치, 안전농산물 출하체계 점검
- 농산물 안전 대책강구 및 전파 등을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 목적(안전) : 위기정보 공유 및 농산물 안전 대책 수립
 - 참석기관 : 국무총리실·국정홍보처, 식약청 등
- 핵심이슈 도출 및 이슈해결을 위한 관계부서별 대책수립 독려
- 농산물유통 피해 규모 파악 및 지원대책 강구
- 농산물 합동 홍보·시식회 및 정부대책 실시 등
 - 조속한 안전성 검사 후 안전 농산물 출하체계 구축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 후속 언론 위기대응조치 점검 및 실시
 - 농식품부 내 홍보담당자와 정책담당자간 정보공유, 홍보방향 설정을 위한 홍보협의회 개최
 - ※ 필요시 식약청, 등 유사현안이 있는 관계기관의 홍보담당자가 참석하는 정책홍보협의회를 별도로 개최여부 검토
- 농림수산식품부 이미지회복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검토
- 단계별 농산물 안전 홍보 방안 강구 및 언론동향 점검

□ 총괄반

-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농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개최
- 소속기관 협의 및 보고
- 현지실태 및 점검
- 안전성 검사확대, 및 위해물질 사용금지 지도 강화
- 안전농산물 생산 및 출하대책 마련

□ 수급반

- 시장동향 파악 및 보고
- 농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
 - 안전한 우리 농산물 시식회 개최 : 농협 협조

조사반

- 유해물질의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
- 생산관리반과 업무협조로 산지 안전농산물 출하지도 강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도, 농협등 관계기관관 업무협조 체계 강화

생산관리반

- 농산물 생산, 재고동향 보고 및 점검 강화
- 오염농산물 산지폐기 지침 마련

기술지원반

- 오염농산물에 대한 위해수준 평가 등 기술지원

2.3.3.2 소속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생산·유통·판매 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 오염농산물의 조치 이행여부 확인 강화
- 오염농산물의 생산지역 조사 확대

농촌진흥청

- 국내외 농산물 위해사고 정보수집 및 동향파악

-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안전성평가 등 독성시험자료 분석
-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유해물질의 노출위험평가
- 식중독 원인구명 및 역학조사 실시(식약청 협조)

2.3.3.3 관계기관

□ 시·도

- 지방비상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구성 운영
- 산지 안전농산물 출하 조치사항에 대한 협조
- 관할구역 내 관련 상황을 정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 안전성 지도 강화
- 농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 홍보 : 농협 협조
- 오염농산물의 처리(폐기, 출하금지 등) 강화

□ 농림수산정보센터

- 농산물 안전관련 긴급경보전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농산물 안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사업 강화
 - 식품안전 위험정도의 알림창을 통한 대국민 농산물 안전홍보
- 농산물 안전정보 관련기관간 협력 강화
 - 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과 연계 및 정보활용체계 구축

□ 기타(총리실, 식약청 등)

- 해당 사항별 협의 강화 및 관계기관대책 회의 확대 개최 추진

제4절 심각

2.4.1 상 황

- 사용금지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 식중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사회문제 확대
- 언론보도로 식품안전 사회문제 확대 및 특정 농산물 소비 급감

2.4.2 조치사항 및 절차

2.4.2.1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
○ 위기징후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및 농산물 소비급감 동향 파악 ○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업계등의 피해상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중앙대책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 위기경보발령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위기경보(심각) 발령 ○ 위기관리관련 관계부처협의회 정례 개최 ○ 범정부적 대응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본부 운영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중앙대책본부) ○ 기획재정부 ○ 국방부, 행정안전부(경찰청) ○ 식약청 ○ 환경부 등
○ 심각단계 대비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대책 회의 ○ 국무회의보고 및 당정협의 ○ 안전관리지침 등 통보 ○ 위해물질 사용금지 및 출하감시 ○ 분야별 비상운영대책 즉시 시행 ○ 농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강구 ○ 언론 및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및 관련 동향파악 강화 (브리핑 등 실시) ○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중앙대책본부) ○ 기획재정부 ○ 국방부, 행정안전부(경찰청) ○ 식약청 ○ 환경부 등 ○ 지자체(시·도/시·군)

2.4.2.2 조치 내용

가. 위기징후 인지

- 농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정보 및 농산물 소비 급감 동향 파악
 - 위해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의 피해가 증가되어 집단행동이 발생하는 상황
 - 위기확산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이슈(hot issue)」 별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시행
-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 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강화
 -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 소속기관 및 시·도로 부터 현지 동향을 파악하여 대책 마련

나. 위기경보(심각) 발령 및 범정부적 대응체제 가동

- 중앙대책위원회에서 위기경보(심각)를 발령하고 접수되는 위기상황 보고
 - 위기상황 접수 즉시 중앙대책본부장(식품산업정책실장)에게 보고
- 위기관리관련 관계부처협의회를 정례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가동
 - 중앙대책본부 운영의 강화

다. '심각'단계 대비조치 시행

- 중앙대책본부는 농산물 위기상황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는 상황이므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정부차원의 대응 대책을 전면 시행토록 협조체계 강화
 - 상황별 조치요령 및 농림수산물부 조치사항 전파
 - 효율적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범정부 종합대응 확대
 - ※ 목적(안전) : 위기정보 공유 및 농산물 안전 대책 수립
 - 참석기관 : 국무총리실, 식약청 등
- 관계부처 대책회의, 국무회의 보고, 당정협의 및 국회의원 설명(농림수산물위 등)
 - 안전 : 위기상황 및 대책 추진 사항 보고 및 국회 협조 요청사항 등
 - 세부내용 : 기 수립된 종합대책의 추진 협의, 출하중지 등 협의
- 안전관리지침 등 통보
- 위해물질 사용금지 및 출하감시 철저
- 분야별로 비상운영 대책을 마련하여 전면 시행
 - 중앙대책본부는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서가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전면 시행
- 농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강구
 - 농산물 안전성문제의 심각성 대두로 농산물 소비둔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방지 및 복구 대책 강구
- 대 국민 홍보활동 강화 및 관련 동향 파악 강화(브리핑 실시 등)
 - 수립된 농산물의 안전홍보 계획을 재검토하여 시행하고 안전농산물 유통 대책과 소비를 촉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확대 시행
 -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대 국민협조 당부
- 상황보고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4.3.1 중앙대책본부

- 중앙대책본부를 적극 가동하여 1일 2회 종합상황을 파악하여 관련기관 등에 제공
 - 상호 협조체계 유지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함
- 대책본부는 위기상황을 시간대별로 파악, 정리하여 관련기관 등에 전파하고 주요 대응사항 시달
 - ※ 서식 : '위기상황 시간대별 조치사항'(첨부4) 참조
- 농산물 안전 대책강구 및 전파 등을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 목적(안전) : 위기정보 공유 및 농산물 안전 대책 수립
 - 참석기관 : 국무총리실, 식약청 등
- 농산물 유통 피해 규모 파악 지시
- 추가 안전성 검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 후속 언론 위기대응조치 강화
 - 농식품부 내 홍보담당자와 정책담당자간 정보공유, 홍보방향 설정을 위한 홍보협의회 재개최
 - ※ 필요시 식약청, 등 유사현안이 있는 관계기관의 홍보담당자가 참석하는 정책홍보협의회를 별도로 개최
- 농림수산식품부 이미지 회복에 대한 홍보계획 강화
- 단계별 농산물 안전 홍보 방안 강구 및 언론동향 대응책 수립
 - 왜곡·과장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 언론사 간담회, 브리핑 등 실시

총괄반

- 농림수산식품부 중앙대책본부(본부장:식품산업정책실장) 가동
-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분야별 비상운영대책 즉시 시행
- 관계부처 대책 회의(국무회의보고, 당정협의회 등)
- 위해물질 사용금지 및 오염농산물 출하감시 철저
-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 국내 사용금지 농약 사용 실태 파악
- 농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강구
- 상황보고(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수급반

- 시장동향 파악 및 보고
- 농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전면 시행
 - 농산물 특판 및 시식회 개최 : 농협 및 지자체 협조
- 피해업계 파악 및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하여 추진

조사반

- 산지 안전농산물 출하지도 및 감독 강화
- 시·도 협조로 농업인 동향점검
- 시·도 및 농업인 단체와의 협조체계 강화

생산관리반

- 농산물 생산, 재고동향 보고 및 점검 강화

기술지원반

- 오염농산물에 대한 위해수준 평가 등 기술지원

2.4.3.2 소속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오염농산물의 생산지역 조사 품목 확대 및 안전성조사 전면 실시
- 역추적조사 실시

농촌진흥청

- 국내외 농산물 위해사고 정보수집 및 동향파악 강화
- 유해물질의 노출위험평가 강화 및 저감화 방안 제시
- 식중독 원인구명 및 역학조사 실시(식약청 협조)

2.4.3.3 관계기관

시·도

- 생산·출하 금지, 폐기·반송 등 위해 농산물 공급 차단 조치
- 일일 상황 보고(매일 19:00)
 - ※ 서식 : '상황 보고서(지자체용)'(첨부5) 참조
- 지역내 관련정보 수집 강화 및 동향파악 보고
- 농산물 현장지도 및 출하 감시 체계 강화
- 지방비상대책본부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 지역내 농산물관련 농업인 피해상황 보고

○ 국내산 농산물 판매·홍보 협조 강화 : 농협 협조

○ 중금속 오염심각지역 농경지 휴경 조치

□ 농림수산정보센터

○ 농산물 안전관련 긴급경보전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SMS 문자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

○ 농산물 안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사업 강화

- 식품안전 위험정도의 알림창을 통한 대국민 농산물 안전홍보

○ 농산물 안전정보 관련기관간 협력 강화

- 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과 연계 및 정보활용체계 구축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금지농약 사용에 의한 위기상황 발생

3.1.1 상 황

□ 개요

금지농약이 특정 채소 가공품에서 검출되었다는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 금지농약 :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농약

□ 피해내용

금지농약이 검출된 제품의 원료농산물에 사용되었을 것을 우려하여 해당 제품의 수요가 급감하고, 수요감소에 따라 업계의 재고 누적으로 원료농산물 구매가 부진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 증가

□ 언론보도 내용

금지농약이 이번에 해당제품에서 검출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과거에 사용된 경우가 있으며, 일부 고독성 농약의 경우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승인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됨. 따라서 식약청과 농촌진흥청은 고독성 농약 승인을 재검토하는 등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함.

3.1.2 조치사항 및 절차

3.1.2.1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p>상황 접수·전파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농식품에 대한 금지농약 사용 실태 파악 ○ 관련 동향 접수 및 자체수집, 관련기관에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 시·도 등 대외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 관련 동향 종합 분석 ○ 해당 농식품 안전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총괄·관리 ○ 핵심이슈별 소관부서의 대책을 종합조정
<p>대응조치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농약의 안전성, 약효 등 검토 ○ 해당 원료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강화 ○ 해당 농약 사용 원료농산물 출하 중지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농산물처리 방안 및 지원대책 협의 ○ 식약청, 시·도 등 대외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 ○ 상황보고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 관계부처 대책회의, 당정협의회 등 개최
<p>복구(수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농식품의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 농식품 홍보, 시식회 및 정부대책 실시 등·대국민 홍보 ○ 국산 농식품의 안전성 홍보 ○ 대언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와의 간담회 실시 - 여론지도층 장관서신문 발송 - 출입기자 간담회, 브리핑, 보도자료 수시 배포 - 해당 농식품 관련단체와 연계 광고 게재

3.1.2.2 조치 내용

가. 상황 접수·전파 및 평가

- 각종 농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상시수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일상적인 업무와 연계하여 관련 상황 접수
- 수집된 농산물위해정보를 예의주시하며, 사전 대응체계 점검
- 위기평가회의 결과 「경계·심각」 단계 수준으로 「중앙대책본부」 가동
- 「농약 안전사용 지침」 배포, 농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신문·TV 등 언론매체의 관련기사는 물론 출입기자의 취재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문제화 가능사항에 대한 필터링 실시

나. 대응조치 시행

<부서별 대책수립 내용(예)>

대 책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소 발견된 농식품 생산동향 파악 ○ 농약 안전 사용 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 문제 농약의 유통현황 파악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친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유통·가격동향 파악 ○ 농식품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유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간담회, 브리핑, 기고, 기획보도 등 추진 	대변인실

- 언론보도·민원 등을 통해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위해요인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방안 강구
- 금지농약 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 농약의 안전사용 지침 설정 및 행정지도 실시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검출 농식품 처리 방안 및 지원대책 협의
- 주관부서는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 구성 등 종합대응안을 마련
 - 문제인식 후 즉시 보고 실시
 - 위기확산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중앙대책본부 구성안(구성원별 역할분담) 및 관계부서(기관)별 협조체계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함께 보고
 - 확산가능성이 없을 경우, 주관부서의 자체 대응방안 보고
- 중앙대책본부는 핵심이슈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관계부서(기관)에 전파하고, 대책 수립 총괄·조정
- 대변인실은 언론동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별도 언론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주관부서에 통보·공동대응
- 관계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대책을 수립, 중앙대책본부의 조정을 거쳐 시행
-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 사항으로 해당과제별로 국무총리실·식약청과 협의 강화
- 시·도는 관할구역 내 상황을 매일 중앙대책본부에 보고

다. 복구(수습)

- 안전성이 검증된 농식품 소비촉진 방안 강구(농식품부, 시·도, 농협)
- 안전성 평가를 통한 해당농약의 규제조치 검토(농촌진흥청)
- 위해요인으로 도출된 관리체계상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 관계부서는 법령개정 등으로 미완결된 대책은 소관부서에서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 대변인실은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기획취재 등 대언론 종합홍보방안 마련
- 관계기관으로서 식약청 등은 농식품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관계법령 개선에 협조

3.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안전위생과(소비안전정책과)
 -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농식품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추진
 - 관계기관 합동 안전성검사 실시
 - 농식품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 농식품 홍보·시식회 및 특판 대책 강구

□ 유통정책과

- 농식품 유통·가격동향 파악

□ 채소특작과(과수화훼과)

- 농식품 수급동향 파악

□ 대변인실

- 언론동향 점검 및 보도자료 배포

- 언론에 보도된 내용 및 피해상황 정리
- 위기발생 직후부터 자료 제공(필요시 영상자료 포함)

-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사와 협조하여 메인뉴스 방송, 기획보도 등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추진

-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에 따라 대언론 대응
※제3장 제3절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 참고(68쪽)
- 왜곡·과장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강구

- 농식품 안전섭취를 위한 홍보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농식품 안전성의 대국민 홍보

- 언론사 간담회, 브리핑 등 실시

- 정례적인 브리핑 실시로 새로운 소식 전달
- 언론사 간담회 실시로 오보 및 추측성 보도 방지 협조요청
- 정보제공 채널은 대변인으로 일원화 하고 기자회견, 간담회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 브리핑 리허설 실시
- 위기종료 시 피해 영향 조사 결과 브리핑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안전과)

-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 산지 출하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및 지도

□ 농촌진흥청

- 금지 및 불량 농약 사용 감시, 유통단속 실시
- 상시적 농약 안전사용실태 조사 및 분석
- 농산물중 금지농약 잔류분석법 확립 및 노출평가
- 농산물 금지농약 잔류원인 구명 및 경감기술 연구
- 금지농약 인축 및 환경생물 독성연구 및 위험평가
- 농약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및 판매상, 농업인 교육 강화
- 농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제2절 농산물 식중독 사고에 의한 피해 발생

3.2.1 상 황

□ 개요

신선편이 채소인 ○○○가 E. coli O-157:H7 에 오염되어 집단식중독사고가 발생했다는 ○○○ 언론의 보도 이후 신선편이 채소의 소비가 급감하는 등 국민들의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악화되어 농업부문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피해내용

국내산 채소의 소비 급감, 생산량 감소,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확산됨.

□ 언론보도 내용

○○○지역 ○○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였는데 발병원인이 신선편이 채소인 ○○○가 병원성 미생물인 E. coli O-157:H7 로 밝혀졌는데 식중독으로 입원한 학생 중 일부는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사태로 국내 신선채소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잔류기준 설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확전 검사물량도 적어 문제가 되고 있음.

3.2.2 조치사항 및 절차

3.2.2.1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상황 접수·전파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신선농산물에 대한 식중독 발생 실태 파악 ○ 관련 동향 접수 및 자체수집, 관련기관에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 시·도 등 대외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 관련 동향 종합 분석 ○ 신선농산물 미생물 오염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총괄·관리 ○ 핵심이슈별 소관부서의 대책을 종합조정
대응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원인 병원성 미생물 종류 규명, 인체영향 등 검토 ○ 신선농산물의 수확전 미생물검사 강화 ○ 미생물 오염 신선농산물 출하 중지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오염된 농산물 회수 및 대책 협의 ○ 식약청, 시·도 등 대외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 ○ 상황보고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 관계부처 대책회의, 당정협의회 등 개최
복구(수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 농산물 홍보, 시식회 및 정부대책 실시 등 대국민 홍보 ○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홍보 ○ 대언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와의 간담회 실시 - 여론지도층 장관서신문 발송 - 출입기자 간담회, 브리핑, 보도자료 수시 배포 - 해당 농업생산자단체와 연계 광고 게재

3.2.2.2 조치 내용

가. 상황 접수·전파 및 평가

- 병원성 미생물 등 농산물 오염정보에 대한 상시수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일상적인 업무와 연계하여 관련 상황 접수
- 수집된 농산물위해정보를 예의주시하며, 사전 대응체계 점검
- 위기평가회의 결과 「경계·심각」 단계 수준으로 「중앙대책본부」 가동
- 학교급식 등에 있어서 신선농산물의 병원성 미생물 검사 시스템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신선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도 개선 검토
- 신문·TV 등 언론매체의 관련기사는 물론 출입기자의 취재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문제화 가능사항에 대한 필터링 실시

나. 대응조치 시행

<부서별 대책수립 내용(예)>

대 책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농산물 미생물 검사 강화 ○ 신선편이농산물 생산업체 지도 및 위법행위 제재 조치 ○ 오염된 농산물 수거 및 폐기 ○ 미생물에 오염된 농산물 생산동향 파악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친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가격동향 ○ 농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유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간담회, 브리핑, 기고, 기획보도 등 추진 	대변인실

- 관계부처와의 합동 역학조사를 통해서 식중독사고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여 피해를 최소화
- 외국의 병원성 미생물균에 의한 식중독 사례를 기초로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방안 강구
- 전처리업체 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 모든 식품유통업체에서 오염된 농산물을 빠른 시간내에 회수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업체와 피해농가지원대책 협의
- 주관부서는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 구성 등 종합대응안을 마련
 - 문제인식 후 2일 이내 보고 실시
 - 위기확산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중앙대책본부 구성안(구성원별 역할분담) 및 관계부서(기관)별 협조체계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함께 보고
 - 확산가능성이 없을 경우, 주관부서의 자체 대응방안 보고
- 중앙대책본부는 핵심이슈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관계부서(기관)에 전파하고, 대책 수립 총괄·조정
- 대변인실은 언론동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별도 언론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주관부서에 통보·공동대응
- 관계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대책을 수립, 중앙대책본부의 조정을 거쳐 시행
-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 사항으로 해당과제별로 국무총리실·식약청과 협의 강화

다. 복구(수습)

- 병원성 미생물의 허용기준 설정과 검사 확대 추진(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식품 안전성을 검토 후, 품목별 생산·유통·판매단계 중점관리 위해요소 분석 및 오염방지 규제조치 강구
 - GAP 생산농가 위생관리 환경개선 추진
- 전처리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지침 개정
 - 자체 검사 시설요건 강화 등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 소비촉진 방안 강구(농식품부, 시·도, 농협)
- 대변인실은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기획취재 등 대언론 종합홍보방안 마련
- 관계기관으로서 식약청 등은 농산물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관계법령 개선에 협조

3.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추진
- 관계기관 합동 안전성검사 실시
- 농식품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 농식품 홍보·시식회 및 특판 대책 강구

유통정책과

- 농산물 유통·가격동향 파악

채소특작과(과수화훼과)

- 농산물 생산, 재고 등 수급동향 파악

대변인실

- 언론동향 점검 및 보도자료 배포
 - 언론에 보도된 내용 및 피해상황 정리
 - 위기발생 직후부터 자료 제공(필요시 영상자료 포함)
-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사와 협조하여 메인뉴스 방송, 기획보도 등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추진
 -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에 따라 대언론 대응
 - ※제3장 제3절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 참고(68쪽)
 - 왜곡·과장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강구

- 농식품 안전섭취를 위한 홍보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농식품 안전성의 대국민 홍보
- 언론사 간담회, 브리핑 등 실시
 - 정례적인 브리핑 실시로 새로운 소식 전달
 - 언론사 간담회 실시로 오보 및 추측성 보도 방지 협조요청
 - 정보제공 채널은 대변인으로 일원화 하고 기자회견, 간담회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 브리핑 리허설 실시
 - 위기종료 시 피해 영향 조사 결과 브리핑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안전과)

- 학교급식 등 농산물 미생물 안전성 검사 강화
- 농가와 전처리업체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및 지도
-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 농촌진흥청

- 농산물중 병원성 미생물 모니터링 및 안전성 조사
- 식중독 원인 병원성 미생물 종류 규명, 인체영향 등 검토
- 농산물 식중독균 오염원 및 경로 파악
- 농산물 오염원 파악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 병원성 미생물 잔류허용 기준 확대 추진(식약청 업무 연계)
- 외국의 농산물 병원성 미생물 오염사례 동향 조사
- 병원성 미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제3절 농산물 중금속 오염에 의한 위기상황 발생

3.3.1 상 황

□ 개요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중금속 ○○○이 쌀 등에서 과다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농산물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하락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피해내용

쌀 등 농산물에서 중금속 물질인 ○○○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어 해당 농산물의 수요가 급감하고, 수요감소에 따라 산지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농가의 피해 증가

□ 언론보도 내용

중금속물질인 ○○○은 쌀 등 주요농산물에 대해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정부의 이번 폐광산지역 조사결과를 보면 폐광산 인근 농경지에서 잔류허용기준치인 ○○○ppm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음.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의 섭취로 인체내에 중금속이 과다 축적되면 환경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는데 특히 폐광산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이 우려됨. 따라서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주민에 대한 정밀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3.3.2 조치사항 및 절차

3.3.2.1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p>상황 접수·전파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농식품에 대한 중금속 조사 실태 파악 ○ 관련 동향 접수 및 자체수집, 관련기관에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 환경부, 시·도 등 대외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 관련 동향 종합 분석 ○ 해당 농식품 안전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총괄·관리 ○ 핵심이슈별 소관부서의 대책을 종합조정
<p>대응조치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금속 잔류허용기준(MRLs) 적용 실태 등 검토 ○ 해당 농산물의 중금속 검사 검사 강화 ○ 중금속 오염 농산물 출하 중지, 수거 및 소각처리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농산물처리 방안 및 지원대책 협의 ○ 식약청, 시·도 등 대외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 ○ 상황보고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 관계부처 대책회의, 당정협의회 등 개최
<p>복구(수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농식품의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 농식품 홍보, 시식회 및 정부대책 실시 등· 대국민 홍보 ○ 국산 농식품의 안전성 홍보 ○ 대언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와의 간담회 실시 - 여론지도층 장관서신문 발송 - 출입기자 간담회, 브리핑, 보도자료 수시 배포 - 해당 농식품 관련단체와 연계 광고 게재

3.3.2.2 조치 내용

가. 상황 접수·전파 및 평가

- 각종 농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상시수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일상적인 업무와 연계하여 관련 상황 접수
- 수집된 농산물위해정보를 예의주시하며, 사전 대응체계 점검
- 위기평가회의 결과 「경계·심각」 단계 수준으로 「중앙대책본부」 가동
- 폐광산 인근 농경지의 주요농산물 중금속 오염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신문·TV 등 언론매체의 관련기사는 물론 출입기자의 취재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문제화 가능사항에 대한 필터링 실시

나. 대응조치 시행

<부서별 대책수립 내용(예)>

대 책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농산물 생산동향 파악 ○ 폐광산지역의 오염농산물 출하금지 지도,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기관 통보 ○ 폐광산지역 농산물 출하동향 파악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친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가격동향 :유통정책과 ○ 농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유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간담회, 브리핑, 기고, 기획보도 등 추진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광 인근지역 농산물 모니터링 및 안전성 평가 ○ 농산물 오염원 및 경로 파악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금속 광산 현황 파악 및 지역 주민 교육 실시 ○ 안전성조사(품관원) 결과 기준 초과 농산물 수매·폐지 ○ 중금속 기준 농경지 복구(한국광해관리공단) 협조 	지방자치단체

- 언론보도·민원 등을 통해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위해요인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방안 강구
- 중금속 오염 농산물의 출하중지 및 관계기관 합동 안전성검사 실시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오염 농산물 처리 방안 및 지원대책 협의
- 주관부서는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 구성 등 종합대응안을 마련
 - 문제인식 후 2일 이내 보고 실시
 - 위기확산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중앙대책본부 구성안(구성원별 역할분담) 및 관계부서(기관)별 협조체계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함께 보고
 - 확산가능성이 없을 경우, 주관부서의 자체 대응방안 보고
- 중앙대책본부는 핵심이슈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관계부서(기관)에 전파하고, 대책 수립 총괄·조정
- 대변인실은 언론동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별도 언론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주관부서에 통보·공동대응
- 관계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대책을 수립, 중앙대책본부의 조정을 거쳐 시행
-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 사항으로 해당과제별로 국무총리실·식약청과 협의 강화
- 시·도는 관할구역 내 상황을 매일 중앙대책본부에 보고

다. 복구(수습)

-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 소비촉진 방안 강구(농식품부, 시·도, 농협)
- 폐광산 인근지역 농산물 모니터링 강화(관계부처와 협의)
 - 주요농산물 대상으로 중금속 기준 확대 추진
 - 폐광산 인근지역 농산물 생산동향 감시
 - 농산물 오염원 파악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농촌진흥청)
- 위해요인으로 도출된 관리체계상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 관계부서는 법령개정 등으로 미완결된 대책은 소관부서에서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 대변인실은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기획취재 등 대언론 종합홍보방안 마련
- 관계기관으로서 식약청 등은 농식품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관계법령 개선에 협조

3.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안전위생과, 소비안전정책과
-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농식품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추진
- 관계기관 합동 안전성검사 실시
- 농식품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 농식품 홍보·시식회 및 특판 대책 강구

□ 유통정책과

- 농식품 유통·가격동향 파악

□ 채소특작과·과수화훼과·식량정책과

- 농식품 수급동향 파악

□ 대변인실

- 언론동향 점검 및 보도자료 배포

- 언론에 보도된 내용 및 피해상황 정리
- 위기발생 직후부터 자료 제공(필요시 영상자료 포함)

-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사와 협조하여 메인뉴스 방송, 기획보도 등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추진

-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에 따라 대언론 대응
※제3장 제3절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 참고(68쪽)
- 왜곡·과장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강구

- 농식품 안전섭취를 위한 홍보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농식품 안전성의 대국민 홍보

- 언론사 간담회, 브리핑 등 실시

- 정례적인 브리핑 실시로 새로운 소식 전달
- 언론사 간담회 실시로 오보 및 추측성 보도 방지 협조요청
- 정보제공 채널은 대변인으로 일원화 하고 기자회견, 간담회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 브리핑 리허설 실시
- 위기종료 시 피해 영향 조사 결과 브리핑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안전과)

-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검사 강화
- 산지 출하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및 지도
 - 폐광산지역 농산물 생산 모니터링, 위법행위 제재 및 해당 기간에 통보

□ 농촌진흥청

- 모니터링을 통한 중금속 기준 확대 추진(식약청 업무 연계)
- 외국의 농산물 중금속 오염사례 동향 조사
- 중금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폐광 인근지역 농산물 모니터링 및 안전성 조사
- 농산물 오염원 및 경로 파악
- 농산물 오염원 파악 후 모니터링 실시

□ 지방자치단체

- 폐금속 광산 현황 파악 및 지역 주민 교육 실시
- 안전성조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결과 기준 초과 농산물 수매·폐지
- 중금속 기준 농경지 복구(한국광해관리공단) 협조
- 농산물 오염원 파악 후 모니터링 실시

제4절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

3.4.1 정보분석 및 위기대응

-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조사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동향분석반'은 사고에 대한 언론 보도를 검색하여 오보여부를 분석
 - 오보로 판정된 경우 일단 “해명자료·설명자료” 등을 신속 배포하여 여타 언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 금번 농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선입견, 고정관념, 이해와 인식의 부족, 오해나 루머 등을 파악
-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분석결과 활용
 - '대응 전략반'은 정보분석 결과에 따라 포지셔닝 전략, 메시지 전략을 수립
 - 위기대응 홍보 담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단계별 언론대응 방안을 수립
 -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분석표(Communication Risks Analysis Work Sheet)'에 따라 결과를 요약

3.4.2 언론 홍보

- 중앙, 지방언론에 보도자료 제공
 - 사고발생 직후부터 자료 제공
 - 사고개요, 사고방지전략, 사고방지성과 및 애로사항, 제도개선계획 등
 - 영상자료 포함 제공
 - 조사 진행상황 및 명확한 결과도출에 대한 신뢰성 있는 대국민 발표
- 사고처리 브리핑 및 취재편의 제공
 - 정기적으로 브리핑 실시
 - 계속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전달
- 홈페이지, 정책포럼 등 조치사항 수시 게재
- 언론취재지원센터의 설치
 - 원활한 상황파악과 언론보도활동 지원을 위해 언론취재지원센터 설치
 -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 서비스와 기자재 확보
-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의 운영
 -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는 본부와 핫라인을 통해 언론취재지원 및 본부의 대언론 방침을 수시로 교환
 - 사고현장에 출입하는 언론인 가이드 및 언론 취재현황 관리
 - 출입 기자단에게 제도개선 계획, 영상자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편의 제공
- 브리핑시 사전 준비사항(언론취재지원센터)
 - 컴퓨터 설치 및 주변기기 준비
 - 전화 및 팩스를 설치
 - 언론기관 출입기자 명단 및 연락처 준비
- 주기적 상황보고
 - 07:00 : 야간 진행상황, 금일계획
 - 12:00 : 주간 진행상황

- 16:00 : 오후 진행상황
- 20:00 : 일일 조치사항 종합실적 및 명일계획
- 수시 : 방제대책회의, VIP 방문, 상황 돌변 등 긴급 상황 시

3.4.3 언론 브리핑

- 정보제공 채널의 일원화
 - 정부의 공식입장은 언론홍보업무를 잘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대변인을 통하여만 제공되어야 함
 - ※ 단, 중앙대책본부장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가능
 - 대변인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변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언론의 정보요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유해성 등)
- 정책홍보협의회 내실화를 통한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 중앙대책본부와 부처내 정책부서간 정책홍보 내부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정보공유와 정책발표방향에 대한 협의 시행
 - 대국민 정책발표시 예상되는 파장과 대응책을 다각도로 마련
- 긴급기자회견(언론브리핑) 설명자료 작성
 - 브리핑 시작전 '긴급기자회견 필수 점검항목' 확인 및 점검

<긴급기자회견 필수 점검항목>

- (1) 책임이 있다면 우선 사과를, 그렇지 않다면 유감이라도 표명
- (2) 추후 법률적 배상책임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초기에 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사죄하되 법적 책임이 있는 문구사용 엄금
- (3) 원인을 밝히거나, 조속히 원인규명에 임할 것을 강조
- (4)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의 공표 등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천명
- (5) 사고로 인한 복구와 배상을 약속

- 브리핑 자료는 '사고 설명자료 작성원칙'에 따라 작성

- 보도자료, 사고설명자료, 언론대응지침은 법률지원팀이 사전에 법률적 검토 및 자문 수행

<사고 설명자료 작성원칙>

- (1) 사실, 조치사항, 간단한 배경과 상황설명 등 3가지 문단으로 작성
- (2) 간단하고 명료하게 사실을 기술
- (3) 감성적인 언어사용 금지
- (4) 추가질문에 즉각 답변 금지
- (5)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의도가 없는 한 입장 표명 금지
- (6) 사후 책임질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긴급기자회견(언론브리핑) 리허설 및 실시

- '기자회견 사전점검표'에 따라 기자회견 일정 등을 점검
- 대변인은 '언론발표시 요령과 원칙'을 점검
- 기자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시에는 기자단의 예상 질문 및 답변서(Q&A)를 미리 작성

<언론브리핑 기본원칙>

- 언론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
 -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
- 확인되기 전까지는 언론에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정보
 - 금번 사고로 인한 손실 및 피해 정도
 - 상황 복구 소요기간 및 비용
 -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 위기관리 언론대응지침의 공유

- “농림수산식품부 위기관리 언론대응 행동지침”과 1차 언론브리핑 준비 시 결정한 언론보도 지침을 사전에 공유
- 우리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 「농산물 안전 위기관리」 코너를 개

설하고 직원들에게 전파

- 필요시 상황진행 단계별로 대언론 행동지침 시달

○ 직원 교육

- 위기대응 홍보팀은 우리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매뉴얼'을 교육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계획안 수립

-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위기 단계별 커뮤니케이션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

3.4.4 위기단계별 커뮤니케이션 계획안

① 일상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계획

- 사전 준비 : 농산물 관련 위기대응 홍보 계획의 보완 및 점검
- 위험 모니터링 : 외신보도 및 관련 학회자료 모니터링
- 정보제공 방안: 위기발생시 부처 홈페이지, 국정브리핑, Daum 또는 Naver 등 포털사이트에 위기상황을 제공할 수 있는 『위기 코너』 등을 개설할 수 있는 연계 방안 수립

② 사고 발생 접수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비상회의 소집 및 대응전략 수립
- 사고 설명자료 준비
- 대변인 선정 및 긴급기자회견(브리핑) 준비
- 언론인 개별 취재 본격화 대비

③ 언론 노출

-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 설치
- 긴급기자회견 통해 사고경위 등 설명
- 위기초기 경과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식입장·대책 담은 보도자료 배포
- 피해발생시 대책 방안 구상 및 발표 준비
- 대언론 발표 창구는 대변인으로 일원화
- 대변인 훈련 및 브리핑 리허설
-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관리시스템 게시판에 「농산물 안전 위기관리」 코너 개설해 전직원 언론대응 매뉴얼 등 공유

4] 전 개

- 사건 당일 오후 즉각 언론브리핑 실시
- 매일 오전·오후 2차례 정례브리핑 등 정기적 정보 제공
-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기사 아이템 발굴

5] 악 화

- 정부대처에 대한 비난여론 확산을 무마할 대책 발표
- 농산물 안전 세부전략 수립 및 발표(브리핑)
- 필요시 정부 관계기관 등과 공동대응체계 강화(브리핑)

6] 해 결

- 농산물 안전사고 확산 방지 성공(보도자료)
- 사고종료 보고서 발표(브리핑)
- 농민 및 업체 영향조사결과(브리핑)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해체, 정상업무 복귀

7] 종결 후 활동

- 기자간담회 등 통해 취재기자들에게 인사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보완
- 직원대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교육실시
- 대외이미지 회복프로그램 준비 및 실행

부

서

[첨부 1]

1. 관계기관 연락처

□ 정부기관

기관명	연락처	비고
대통령비서실(국가위기상황센터)	02-770-7890~5	
국무총리실		
- 농수산국토정책관	02-2100-2346	
	02-2100-2347	
	02-2100-2352	
- 사회문화정책관	02-2100-2209	
	02-2100-2213	
농림수산식품부		
- 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3	
- 안전위생과	02-500-2109	
- 유통정책과	02-500-1932	
- 채소특작과	02-500-2012	
- 과수화훼과	02-500-20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안전과)	031-463-1573	
농촌진흥청		
- 농자재관리과	031-299-2600	
- 유해화학과	031-290-0511	
- 유해생물과	031-290-0541	
- 농자재평가과	031-290-0571	
보건복지가족부(식품정책팀)	031-440-9115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팀)	02-2100-6308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42	
- 식품관리과	02-380-1633	
- 수입식품과	02-383-6149	
- 식중독예방관리과	02-380-1820	
- 식품기준과	02-380-1627	
- 건강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6	
- 위해예방정책과	02-380-1396	
- 위해정보과	02-380-1382	
- 검사제도과	02-380-1481	
질병관리본부(전염병관리팀)	02-380-1459	
환경부(유해물질과)	02-2110-7960	

[첨부 2]

2. 초기 상황보고 서식(내부보고용)

○○○ 관련 보고

— < 사고 개요 > —

◦ '00.00.00일 00소재 00사고 원인, 피해상황 등을 간략히 기재

1. 00년 00월 00일 현재 추진실적

◦ 조치(복구) 사항 등을 기재

※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2.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 회의 개최시 결과보고서를 첨부

3. 향후계획

◦ 복구 완료 시 까지의 추진계획을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구분 기재

수신부서명	
-------	--

붙임 : 참고자료(사고주변 지도) 등

[첨부 3]

3. 위기평가회의 보고서

위 기 명				
위기 발생 일시		위기 평가 일시		
위기평가위원회 구성원				
위기 평가 결과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통 보 기 관				
1. 관련상황/정보				
2. 분석/판단				
3. 조치 사항				
작성자	부서 :	성명 :	(인) (전화)	

[첨부 5]

5. 상황 보고서(지자체용)

○수신 : 농림수산식품부 ○○○○팀(과)

○발신 : 도 시(군) (부서명)

○일시 : 년 월 일 시

○담당자 : 직위 성명

○연락처 : Tel , Fax

○상황

구분	내용	비고
사 건 명		
발생 및 진행상황		
조치내용		
관련동향		
건의사항 기 타		

6. 농림수산식품부 위기관리 언론대응

1 모든 관련 사실의 수집

- 가.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서 사태의 원인, 현재 진행상황, 향후 전망, 피해 규모와 정부대책에 관한 사실 파악
- 나. 특히, 사고발생시 사고가 언제, 어떻게, 왜 발생했는가의 사실과 피해 지역, 피해규모, 방재 진행현황과 향후 대책, 인명 피해자 여부, 미구출자 여부, 사상자 명단 등은 필히 파악

2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보도시점 결정

- 가. 업무관련 유관 부서뿐만 아니라 언론홍보관련 국무총리실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보도시점을 결정
- 나. 중요사항은 홍보대상, 주요 제기 쟁점, 대응논리 등이 담긴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책 발표 전 점검

3 단일화된 창구를 통한 정보 배포

- 가. 위기사 상호 모순되거나 불필요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불완전한 정보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관리 대변인” 등 단일화된 채널을 통한 정보의 배포
- 나. 위기사 대변인이 위기관리 대변인으로서 우리부의 공식 입장은 대변인을 통해서만 언론에 노출되도록 주의

4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및 나쁜 뉴스라도 정직한 제공

- 가. 주요 상황의 변화시 언론기관 및 관련기관에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유언비어와 추측보도 방지
- 나. 정보은폐에 의한 공신력 실추의 방지를 위해 가장 나쁜 뉴스라도 가급적 대변인 통하여 정직하게 전달
- 다. 언론사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논평을 거부할 경우 납득할 수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 불식

5 사건에 대한 기록 유지

- 가. 사건 종료후 법적 대응, 후속보도,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계획의 수정을 위해서 사진, 서류, 비디오테이프 등을 이용한 기록의 유지

7.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매뉴얼

1 보도자료 작성시 고려사항

가. 일반 개요

- 언론 홍보는 적극적·조직적·선행적·예방적 홍보활동인 미디어 퍼블리시티(Media Publicity)와 사후 대응적인 미디어 서비스(Media Service)로 구분
- 미디어 퍼블리시티 활동은 보도자료 제공, 인터뷰, 기고문, 기자 간담회 및 기자회견, 국내외 현장 취재 지원, 공동 기획 특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그 중 보도자료 제공은 가장 기본적인 홍보활동임
- 보도자료 제공은 정확한 정보의 시의적절한 제공이 가장 중요

나. 보도자료 배포

- 조간용일 경우 전일 10 : 00 이전 배포
 - 조간용은 기자들이 데스크에 보고하는 시간이 대략 09:00~09:30분경이므로 가급적 09:30 이전에 배포
 - 오후에 보도자료 배포는 피하되, 불가피하게 오후에 배포해야 할 경우 기자들이 오후 메모를 올리는 시간(13:30~14:00)을 감안하여 14:00 이전에 배포
- 석간용일 경우 전일 18:00경 배포
 - 국무회의 안건은 주로 석간용으로 배포
- 엠바고가 지켜져야 할 중요 자료는 조간과 석간신문을 구분해서 배포
 - 석간신문이 엠바고를 짚을 경우, 다음날 조간신문의 기사가치가 없

어지므로 석간신문에는 조간신문판 1차 마감시간인 16:00 이후에 자료 배포

-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 시 문자메시지 통지

2 보도 결과에 대한 언론사 문의시 대응요령

가. 타 부처의 보도자료 등에 의하여 기자들의 확인전화가 올 경우

- 보통 조간신문의 판마감 시각이 16:00이므로 우리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까지 해명자료나 보충 설명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
- 배포 후 신속하게 문자메시지 통보 및 확인전화

나. 우리부 출입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경우

- 오보를 낸 해당 언론사에 담당부서에서 공문(국장명의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요청
- 공문 발송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해당부서 대응, 대변인실 지원)
- 해명자료 배포범위는 담당 경제·사회 데스크 및 우리부 출입기자

다. 우리부 출입이 아닌 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경우

- 오보를 낸 해당 언론사에 담당부서에서 공문(국장명의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요청
- 공문 발송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해당부서 대응, 대변인실)
- 해명자료 배포범위는 기사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배포
- 구분이 모호할 경우 언론사 편집국장 및 보도본부장, 우리부 출입자에게 해명자료 배포

- 담당기자 이메일은 최근 것이며 신문을 통해 직접 확인했는가?
- 이메일 송부시 자료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는가?
- 쉬우면서도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군더더기는 제거했는가?
- 작성된 자료를 소리내서 읽어보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 숫자나 도표, 맞춤법 등 잘못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타인에게 최종 교정을 보았는가?
- 이메일 송부시 특히 '제목'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 기자들이 이 보도자료를 꼭 읽어야 하는 이유 혹은 개연성이 있는가?
- 새로운 시각으로 재미있거나 흥미롭게 다시 만들 수는 없는가?
-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 스스로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첨부 파일을 지양하고 문서로 작성된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이메일 본문에 넣었는가?
- 파일 첨부시 바이러스 검사는 했는가?
- 사진 이미지는 신문과 잡지 등 매체 성격에 따라 적절한 용량으로 했는가?
- 사진 송부시 컬러의 경우 '흑백 사진'의 이미지도 미리 확인했는가?
- 사진은 부분 확대 이미지와 전체 이미지의 두 종류를 준비했는가?

8.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Checklist

Communication Risks Analysis Work Sheet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분석표

① 일 자	
② 정 책 명	
③ 담 당 부 서	
④ 정 책 목 표	
⑤ 추 진 기 간	
⑥ 정책 주요내용	
⑦ 쟁 점 사 항	

단 계	타깃 오디언스	이슈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최악의 시나리오
사고진행				
언론보도				
대국민여론 조사결과				
정부대책 발표 및 집행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				

9. 기자회견 사전점검표

1. 대변인은 회견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선정한다.
2. 보도진에게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3. 참석을 통보한 기자, 편집자 등 언론인들의 명단을 준비한다.
4. 기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배경 자료를 준비해 둔다.
5.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동석시킨다.
6. 직원중 누군가가 기자회견의 물리적 서비스를 담당한다.
7. 의자, 탁자 및 발언대의 수는 충분한가?
8. 마이크나 기타 비디오, 오디오 장비가 필요한가 등 홍보요원들에게 회견 주제, 발언자 및 회견일정을 브리핑 해 둔다.
9. 인사말을 준비하고 이를 가장 중요한 발표자와 함께 검토한다.
10. 예상질의, 답변을 발표자들과 검토한다.
11. 행사전에 모든 음향기기와 기타 장비를 점검한다.
12. 회견장에 방명록을 비치하여 참석자의 이름과 소속을 파악한다.
13.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새로운 정보와 유인물 등 배경자료를 회견장에 가져다 놓는다.
14. 보도진을 회견장으로 안내한다.
15. 직원을 지정하여 개회사를 하도록 하고 회견의 기본규칙을 설명한다.
16. 질문과 대답을 주의깊게 모니터한다. 회견이 끝나기 전에 해명할 부분은 해명한다.
17. 회견을 녹음해 두고 발언내용은 조속히 기록해 둔다.
18. 직원들에게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고 회견장이 산만하지 않도록 관계없는 직원들의 참석을 통제한다.

10. 언론발표 시 요령과 원칙

- 발표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기자에게도 말하지 마라
- 필요하면 시간을 끌어라. 사실 확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기자와 이야기를 시작하지 말라. 대답을 즉시 할 수 없을 경우 기자의 이름을 물은 뒤 헤드라인 내에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라. “지금은 모릅니다.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그러므로 절대 추측하여 말하지 마라.
- 발표문의 헤드라인은 하나만 써라. 그리고 이 헤드라인에 따라 일관성 있고 분명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라.
- 어떤 회견이든 사전에 준비하라. 이는 기자와 조직체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 예상답변을 준비하고 연습하라.
- 인터뷰 직전에 변화된 사항이 없나 마지막으로 점검하라.
- 추측을 하게 만들지 마라. 대변인이 공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자들은 타인의 추측을 소스로 삼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공식적으로 준비된 발표문을 낭독하라.
- 비공식적 발언을 삼가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또는 위기관리 담당

자와 사전에 상세히 협의하지 않은 내용은 절대로 비공식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복잡하고 문제성이 다분하므로 피해야 한다.

- 기술적 자료는 항상 서면자료를 이용하라.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기자들을 상대할 때는 시간을 들여서 기자들이 요점을 파악할 때까지 하나하나 짚어 주어야 한다.
- 어떤 기자가 제시한 논점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코멘트 할 수 없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그냥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만 하면 안된다. 왜 말을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를 낭독할 경우 낭독한 내용에 충실해야 하며 가능하면 발표자 자신의 해석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정부가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공모(panic) 상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 보도기관으로부터 전화로 문의 받은 사항은 가능하면 24시간 가동체제로 답해야 한다.
- 학자, 정부관계자, 유명인사, 기타 여론 선도자 등 호의적인 제3자의 견해 및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3편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목 차

제1장 개요

제1절 목 적	131
제2절 법적 근거	131
제3절 적용 범위	131
제4절 용어의 정의	132
제5절 위기 형태	133
제6절 위기 경보	133
1.6.1 위기경보	133
1.6.2 위기경보 발령 체계도	134
1.6.3 위기경보 발령 절차	134
1.6.4 위기평가회의	135
1.6.5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 운영	136
1.6.6 중앙대책본부 운영	136
제7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요소	140
1.7.1 위기 대응지침	140
1.7.2 판단/고려요소	141
제8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142
1.8.1 수산식품 안전업무 추진 기본 체계	142
1.8.2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142
1.8.3 위기대응 체계도	143
1.8.4 기관별 주요 임무	144
1.8.5 단계별 위기대응 조치사항	145
1.8.6 단계별 위기대응 프로세스	149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155
2.1.1 상황	155
2.1.2 조치사항 및 절차	155
2.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159
제2절 주의	162
2.2.1 상황	162
2.2.2 조치사항 및 절차	162
2.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166
제3절 경계	170
2.3.1 상황	170
2.3.2 조치사항 및 절차	170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173
제4절 심각	177
2.4.1 상황	177
2.4.2 조치사항 및 절차	177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180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수산물 위해물질 검출에 의한 피해 발생	187
3.1.1 상황	187
3.1.2 조치사항 및 절차	188
3.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192
제2절 미승인 약품 사용에 의한 피해 발생	194
3.2.1 상황	194
3.2.2 조치사항 및 절차	195
3.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199
제3절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	201

3.3.1 정보분석 및 위기대응	201
3.3.2 언론 홍보	201
3.3.3 언론 브리핑	203
3.3.4 위기단계별 커뮤니케이션 계획안	206

【부 록】

1. 관련기관 연락처	211
2. 비브리오패혈증 등 질병 확산시 대응 매뉴얼	212
3. 패류독소 피해 발생 대응 매뉴얼	218
4. 위기요인별 조치사항	227
5. 초기 상황보고 서식(내부보고용)	228
6. 위기평가회의 보고서	229
7. 위기상황 시간대별 조치사항	230
8. 상황 보고서(지자체용)	231
9. 농림수산식품부 위기관리 언론대응 행동지침	232
10.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매뉴얼	234
1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Checklist	237
12. 기자회견 사전점검표	238
13. 언론발표 시 요령과 원칙	239
14. 언론보도문안(예시)	241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수산물 위생·안전 위기대응 매뉴얼」은 수산물의 위생·안전과 관련하여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적 혼란 및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제2절 법적 근거

- 가. 수산업법
-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 다. 수산동물질병관리법
- 라. 식품위생법
- 마. 약사법
- 바. 전염병예방법
- 사. 수산자원보호령(제22조)
- 아.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 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제3절 적용 범위

- 가. 수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지자체·수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의 수산물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 나.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으로 국민건강 보호 및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피해복구에 적용

제4절 용어의 정의

가. 위기관리

위기에 대한 예방 및 위기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 위기정보의 사전 수집, 위기수준 평가, 위기관리계획서의 작성, 위기대응 훈련, 위기사후 평가,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등의 관리 업무를 말함

나. 위기요인

위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또는 위기의 원인이 되는 사물, 사람 또는 주변 환경의 상태나 조건

다. 위기수준

위기요인의 조직의 비전에 미치는 영향력, 위기 요인의 소재, 위기 시 대응의 시간적 여유에 따른 위기의 위험 강도에 대한 척도

라. 위기경보

위기요인에 대한 위기수준별로 등급을 부여하여 해당사항 발생시 발령하는 것(관심, 주의, 경계, 심각 ; 4단계)

마. 위기평가

위기요인에 대한 위기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위기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위기에 관한 발생원인, 위기진행과정, 대응방안, 주변 환경 등의 정보를 관련 이해관계자 특히 언론 미디어와 주고받는 일

사. 위기정보 모니터링

하나의 위기요인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

제5절 위기 형태

가. 수산물 위해물질 검출

- 수산물내 위해물질 검출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치고 그에 따른 수산물의 소비급감으로 어업인 피해발생

나. 미승인 약품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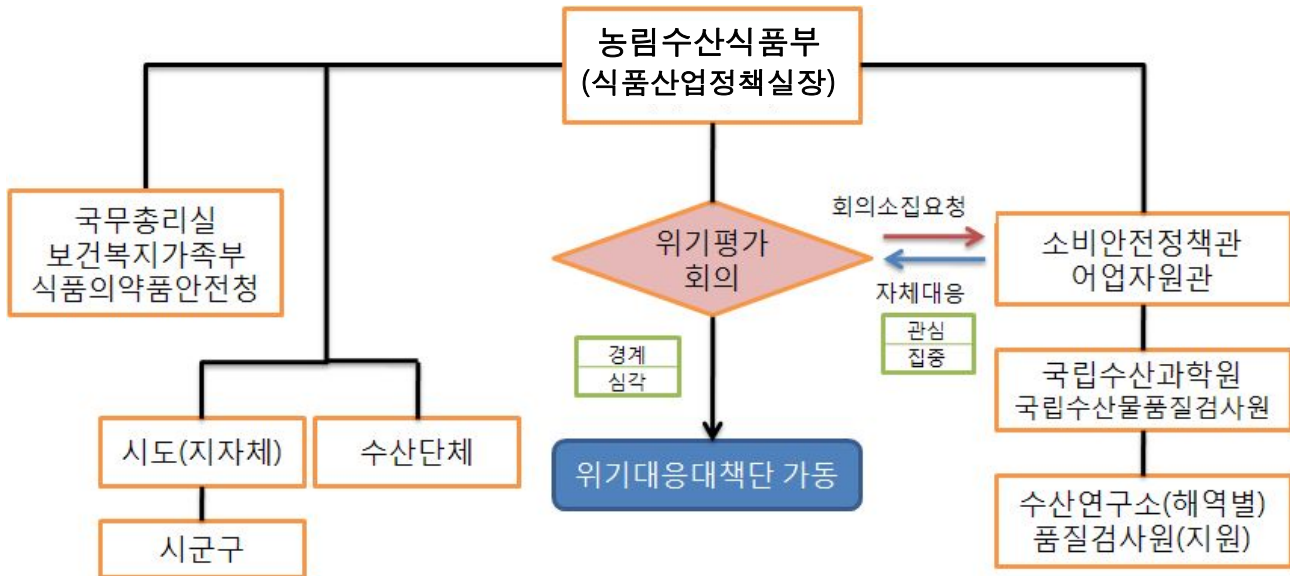
- 미승인 약품의 사용으로 인해 양식장과 생태환경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수산물의 소비가 급감되어 양식어가 등에 피해발생

제6절 위기경보

1.6.1 위기경보

수 준	내 용	비 고
관심 (Blue)	<input type="checkbox"/> 수산물 위해요소 징후 감지 및 시기도래 <input type="radio"/> 수산물 위해물질의 감지 <input type="radio"/> 미승인 약품 사용 예상시기 도래	징후 감시 (주관국 대응)
주의 (Yellow)	<input type="checkbox"/> 수산물 위해요소 발생 <input type="radio"/> 수산물 위해물질 개별적 발생 <input type="radio"/> 미승인 약품에 따른 식품안전문제 대두(사도 보고 등)	협조체계 가동 (위기평가회의)
경계 (Orange)	<input type="checkbox"/> 수산물 위해요소의 타지역 확산 <input type="radio"/> 수산물 위해물질 타지역 확산 <input type="radio"/> 미승인 약품 사용으로 사회 문제화(언론보도 등)	대비태세 점검 (중앙대책본부구성)
심각 (Red)	<input type="checkbox"/> 수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및 소비 급감 <input type="radio"/> 수산물 위해물질의 전국적 확산 <input type="radio"/> 미승인 약품 사용에 의한 사회문제 확산 및 소비 급감	즉각 대응태세 돌입

1.6.2 위기경보 발령 체계도



1.6.3 위기경보 발령 절차

가. 농림수산식품부 관련국(소비안전정책관실·어업자원관실)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소속기관과 관계기관들의 수산물 위생·안전 분야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수집된 제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공유

○ 소속기관은 위기징후 목록 작성, 징후 발견보고 및 전파 의무

나. 농림수산식품부 관련국장은 수산물 위생·안전 분야에 「주의」 이상 수준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주관하는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소집하여 위기 분석 및 평가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 모색

○ 장·차관에게 위기평가회의결과 즉각 보고

다. 자체 위기평가회의 결과 위기경보의 수준이 「관심·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장 중심으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대응하고, 「경계·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앙대책 본부를 가동·운영

- 라. 위기경보 수준을 수정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회의를 재소집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

1.6.4 위기평가회의

가. 목적

- 수산물 위생안전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적 혼란 및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위기상황 분석·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전략 모색

나. 구성

- 식품산업정책실장(의장), 소비안전정책관, 어업자원관, 수산정책관, 대변인, 표시검역과장, 축산경영과장, 양식산업과장, 수산정책과장, 자원환경과장, 소비안전정책과장, 안전위생과장, 홍보담당관 등으로 구성
 ※ 필요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및 외부전문가 참석

다. 운영

- 소집 : 수산물 위생·안전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 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련업무 해당 국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결정
- 평가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및 대응전략 마련
- 결과 : 위기수준 평가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등을 수록한 회의록을 작성, 장·차관 보고 및 관리

라. 임무

- 위기 수준에 대한 판단 및 평가, 대응전략 모색
- 평가결과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인 경우 중앙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가능한 구체적(인원, 주관부서 등)으로 결정

1.6.5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 운영

위기경보 구분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대책본부장	해당 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운영방법	평상시 업무와 연계 처리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관 또는 차관으로 격상시킬 수 있음

1.6.6 중앙대책본부 운영

가. 목적 및 운영기간

- 목적 :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으로 국민건강보호 및 어업인 피해예방, 신속한 복구 대응
- 운영기간 : 경계(Orange) 이상 단계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 「관심·주의단계」에서는 해당 국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위기대응대책반 구성없이 관련국에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즉시 대응
 - 「경계단계」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위기대응 역할을 수행
 - 「경계단계」부터는 중앙대책본부로 확대·운영

○ 장 소 : 농림수산식품부 종합상황실

- 중앙대책본부 확대·운영으로 공간이 협소할 경우 별도 회의실에 대책본부 설치

나. 조직구성 및 임무

- 중앙대책본부는 각 반별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상황전개 추이에 따라 조정, 운영
- 중앙대책본부에 스텝조직으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구성·운영
- 각 반별 임무는 각종 상황의 신속한 파악·보고, 대외홍보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유지(자료제출 포함)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이행
- 각 반별로 상황을 고려, 반장이 주관하여 내부적으로 세부 운영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위기경보별 대책본부 운영

□ 「관심·주의」 단계

- 본부장 : 해당 국장
- 추진 : 관련부서
- 관련부서에서 평상시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함
 - 관심단계 등에서 상황변화가 없고, 관련규정에 의한 대응처리 방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운용함
- 근무요령, 인원구성은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상황보고, 대응시기 등은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함

□ 「경계·심각」 단계(중앙대책본부)

○ 본 부 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부분부장 : 해당 국장)

※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관 또는 차관으로 격상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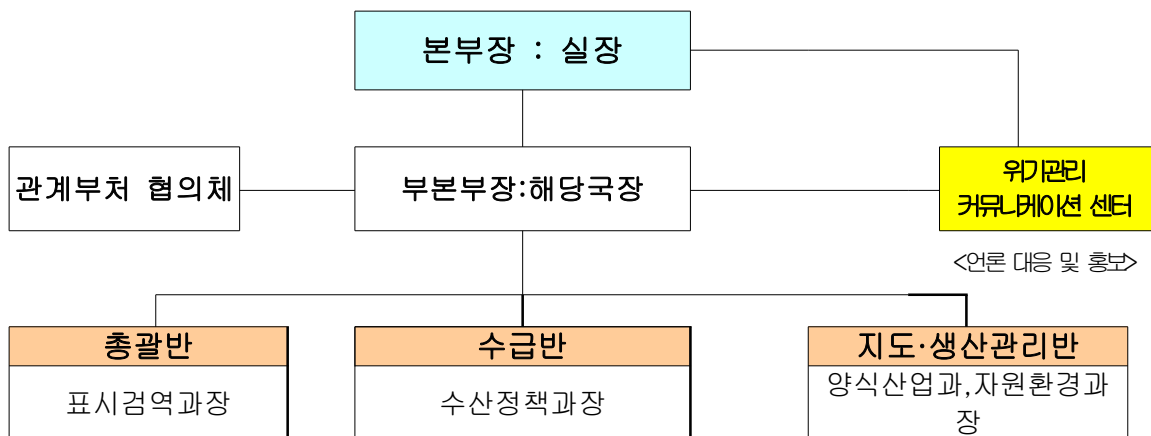
○ 언론대응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대변인)

○ 추진 : 대책본부 3개반(반장은 과장급으로 구성)

○ 주관부서 지정

- 해당 반별 주관부서 지정은 위기형태, 위기등급, 주요 관련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소속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반별로 주관부서 협조부서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총괄반은 수산물 위해물질 검출시에는 「표시검역과」, 미승인 약품 사용으로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등으로 위기 내용에 따라 지정, 운영

<중앙대책본부 구성도>



○ 반별 임무

- 반별 임무를 숙지하여 위기대응대책반의 가동시 상호 협조체제 유지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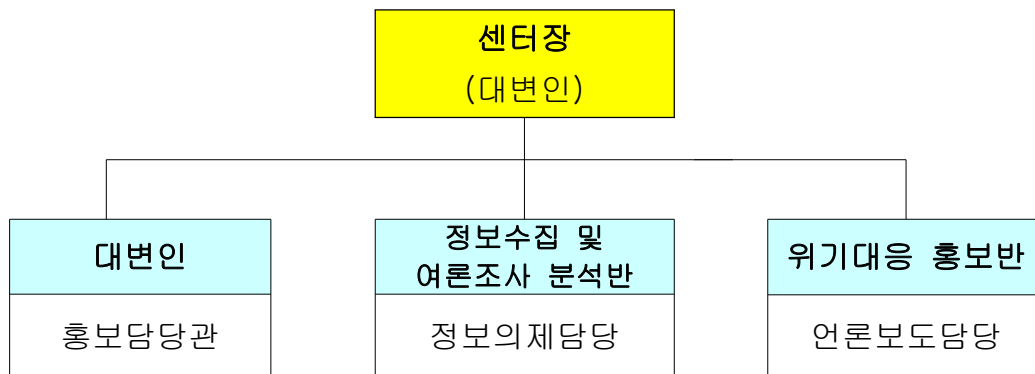
구 분	주 요 임 무	주관부서
본부장	- 수산물 위생·안전 위기대응 총괄	식품산업정책실장
부분부장	- 본부장 보좌 및 업무조정	해당국장
총괄반	- 일일상황 및 대책 종합 - 소속기관,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 안전성 조사결과 종합 및 관리대책 강구	표시검역과
수급반	- 수산물 시장동향 보고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	수산정책과
지도·생산관리반	- 양식장 지도·교육 및 어업인 동향점검 - 사·도 및 어촌계, 어업인 단체와의 협조체제 유지 - 수산물 생산 동향 파악 및 관리 - 양식장 약품사용 관리대책 강구	양식산업과 자원환경과

※ 반별 상호 협조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체제 확보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구성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센터장, 대변인,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 위기대응 홍보반으로 구성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 주요 임무 :

구 분	주 요 임 무	비 고
센터장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총괄	대변인
대변인	- 언론대응 및 홍보, 대책발표	홍보담당관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반	-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 농식품부의 대책발표나 조치에 대한 여론조사	정보의제담당
위기대응 홍보반	- 대언론 신속대응 커뮤니케이션 수행	언론보도담당

※ 대변인은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별도 지정할 수 있음.

제7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요소

1.7.1 위기대응 지침

- 신속·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부내 책임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경계·심각」의 경보발령 시 주관부서는 「중앙대책본부」를 구성·가동
- 주관부서를 주축으로 소속기관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소속기관과 관련기관에 상황을 전파, 대응, 연락 및 홍보를 지원
- 위기평가회의 결과 「관심·주의」 수준에서는 해당국장 중심으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대응하고, 「경계·심각」 수준에서는 즉시 「위기대응대책반」 가동·운영

예상 안전문제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수산물에서 위해물질 검출(또는 우려되는 상황) ○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물질 검출(또는 우려되는 상황) 	표시검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수산물이 미승인 약품사용으로 위해상황 발생시 ○ 국내산 수산물 미승인 약품 사용 	양식산업과/ 자원환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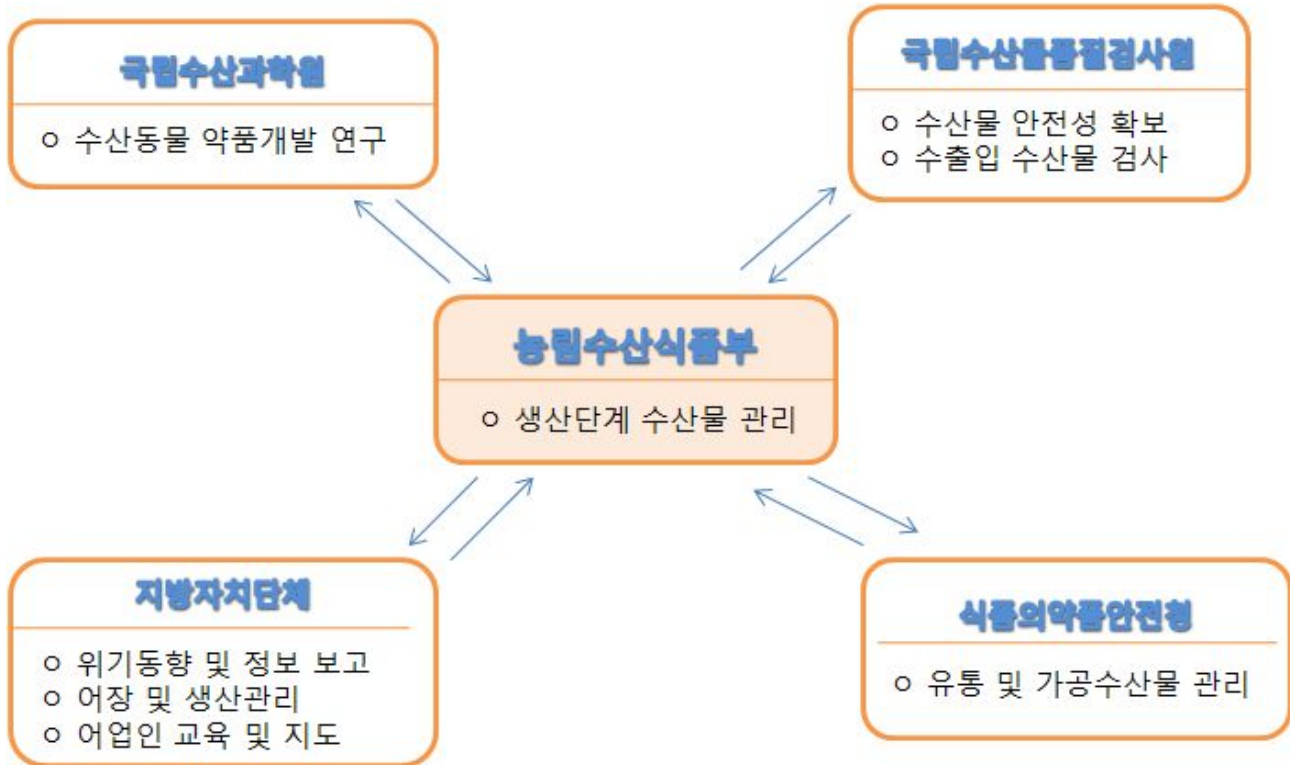
- 중앙대책본부는 위해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당업무 담당자(직전 담당자 포함) 이외 법률·예산·홍보 담당자까지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중앙대책본부는 위해요인별로 식약청, 국무총리실, 시·도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지원체계 형성
- 주관부서 또는 중앙대책본부는 「단계별 조치방안」에 따라 문제 진행 단계에 맞춰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

1.7.2 판단/고려요소

- 접수된 현장정보의 평가 후 긴급 대응조치 여부
- 위기의 단계별 평가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의 위기상황이 전개될 경우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대응방안 공동 강구 등 협조체계 구축 여부
- 수산업의 피해확산 가능 및 피해최소화 방안 확보 여부
- 대 국민 홍보체계 구축 및 홍보 역량 확보 여부

제8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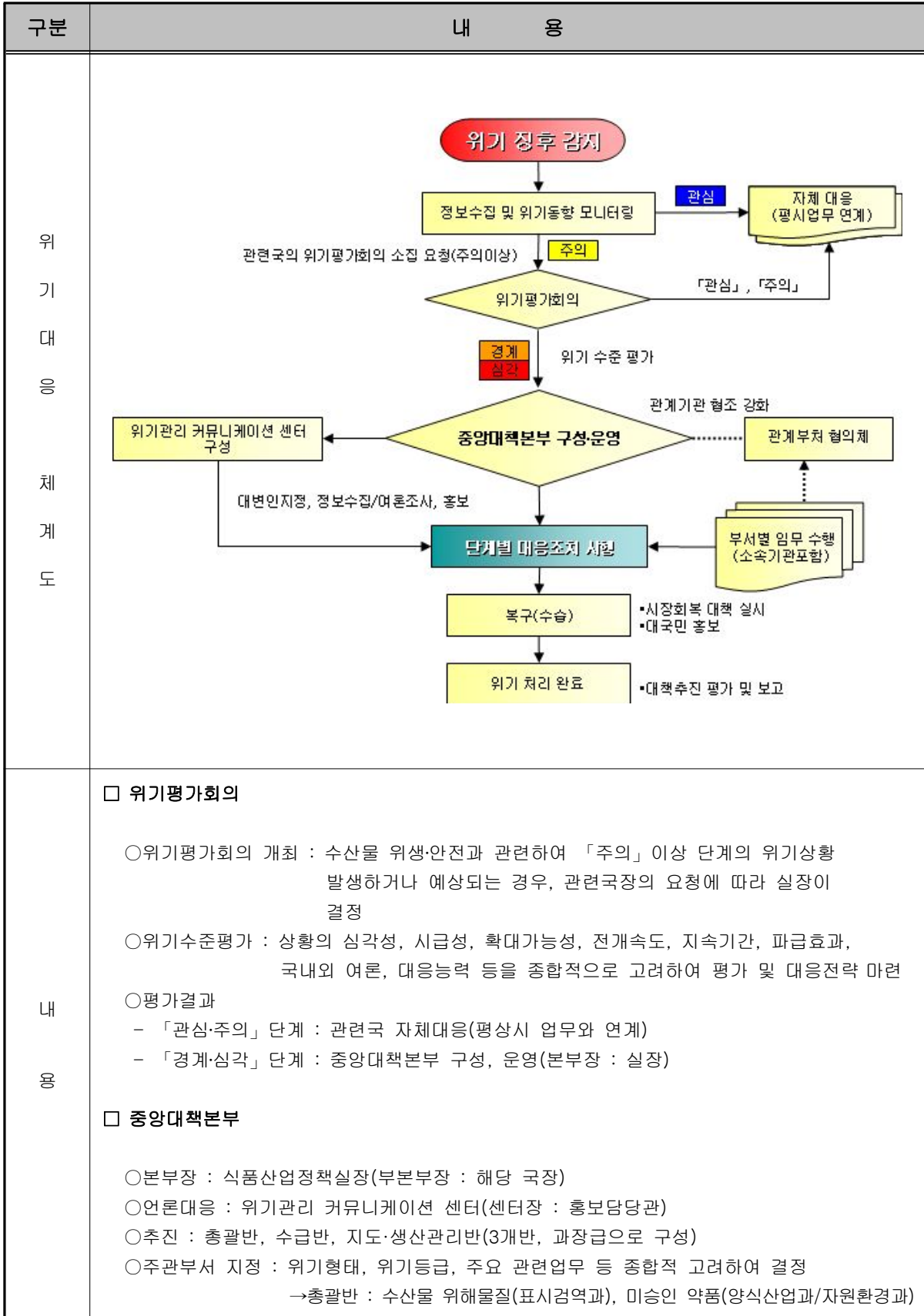
1.8.1 수산식품 안전업무 추진 기본 체계



1.8.2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농림수산식품부 : 생산단계 안전관리 및 어촌 기술지도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 및 안전기준 설정 등
 - ※ 수입검사 일부(활어, 냉동품 등 원료 및 단순가공품)는 농식품부 위탁·수행(94)
- 지방자치단체(시·도) : 어장 및 생산관리

1.8.3 위기대응 체계도



1.8.4 기관별 주요 임무

□총괄표

구 분		주 요 임 무
본부	표시검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수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상시수집체계 강화 ○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상황을 상시 파악, 경보 전파 ○ 수산물 안전정보 분석 및 단계별 대응체제 강화 ○ 위해물질 검출 (국내·수입산)수산물 검사 강화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소 발견된 어패류 및 양식어류 생산동향 파악 ○ 미승인 약품 사용금지 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 위해물질 관련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요청 ○ 양식장 지도·교육 ○ 어업인 동향점검
	수산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 수산물 소비촉진대책 시행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기관 자료 배포 등 ○ 기자간담회, 브리핑 담당 ○ 대 국민 홍보
소속기관	국립수산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모니터링으로 위기 상황파악 ○ 해외 수산식품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 ○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위해물질 모니터링 실시(수출입 포함)
관계기관	지자체(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 및 생산관리 강화 ○ 지역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 수산물 지도 및 출하 감시 체제 유지
	기타 (국무총리실·식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별로 협의체제 유지 ○ 관련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 관계기관 대책회의 협의

1.8.5 단계별 위기대응 조치사항

관심(Blue)

구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비고	
위기징후 인지	표시검역과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수산물 안전문제 관련 정보 파악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위기경보 접수·전파	표시검역과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을 작성 또는 접수, 내부보고 ○위기확산 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관심」단계에서는 평상시 업무 연계하여 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및 경보 전파		
대응 조치	본부	표시검역과	○위기 징후 인지 내용 보고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수집된 안전정보 상시 수집 체계 유지(일상업무 연계) ○수집 정보 분석 및 단계별 대응체제 점검 ○관계기관 및 소속기관 정보 공유체계 및 협조체계 유지 ○수입 수산물 검사 및 안전성 조사(계획) 추진	미승인약품 사용시 (양식산업과/ 자원환경과)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위해물질(미승인약품) 관련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요청 ○미승인약품 사용금지 지도, 위법행위 제재 조치(평시업무 연계) ○미승인약품 사용 금지지도(시·도)	
		수산정책과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 점검	
		대변인실	○기자간담회, 브리핑, 기고, 기획보도 등 일상업무 유지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필터링실시)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제 점검	
	소속 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상시 상황파악 체제 유지 ○해외 수산식품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 : 일상업무 연계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계획대로 추진) ○수출·입 수산물 검사 실시(계획대로 추진)	
	관계 기관	지자체(시·도)	○시·도별 사전 점검 대책 유지 ○어장 및 생산관리 유지 ○지역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수산물 지도 및 출하 감시 체제 유지	
		기타 (국무총리실·식약청 등)	○해당 사항별로 보고 및 협의체제 유지	

주의(Yellow)

구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비고	
위기징후 인지	표시검역과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수산물 위해요소의 발생 및 언론 보도 동향 파악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피해상황 파악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위기경보 접수·전파	표시검역과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 내부보고 ○「주의」단계의 위기발생시 위기평가회의 소집요청 ○위기평가회의 결과 「경계」이상 위기경보 발령시 즉각 중앙대책본부 구성, 운영 ○평가결과 「관심·주의」단계인 경우 평시 업무 연계하여 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및 경보 전파		
대응 조치	본 부	표시검역과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 실시 ○해당 분야별 위기대응 대책 능력 점검 ○수입수산물 검사 및 수산물 안전성조사 철저 추진 ○관계기관 협의 및 대책회의 개최(협의사항 전파) ○위해물질(미승인약품)설정기준 및 법적근거 등 검토 ○수입수산물 상대국에 대한 입장 및 해명 요구(필요시) ○원산지 표시 단속 철저 ○관련업계 지속적 위생안전 확보 협조요청 ○상황보고체제 유지(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등)	미승인약품 사용시 (양식산업과/ 자원환경과)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양식장 관리지도 및 위해물질(미승인약품) 사용금지 지도 ○국내 양식장 미승인 약품 사용실태 파악 ○미승인약품 사용 금지지도 철저(시·도) ○위해요소 발견된 어패류 및 양식어류 생산동향 파악	
		수산정책과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수산물 소비촉진대책 강화 및 시행	
		대변인실	○보도자료 배포(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등)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제 점검	
	소 속 기 관	국립수산과학원	○상시 상황파악 체제 강화 ○해외 수산식품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 : 식약청 협조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수출·입 수산물 검사 실시	
	관 계 기 관	지자체(시·도)	○시·도별 사전 점검 대책 회의 주관 ○어장 및 생산관리 강화 ○지역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수산물 지도 및 출하 감시 체제 유지	
		기타 (국무총리실·식약청 등)	○해당 사항별로 협의체제 유지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협조	

경계(Or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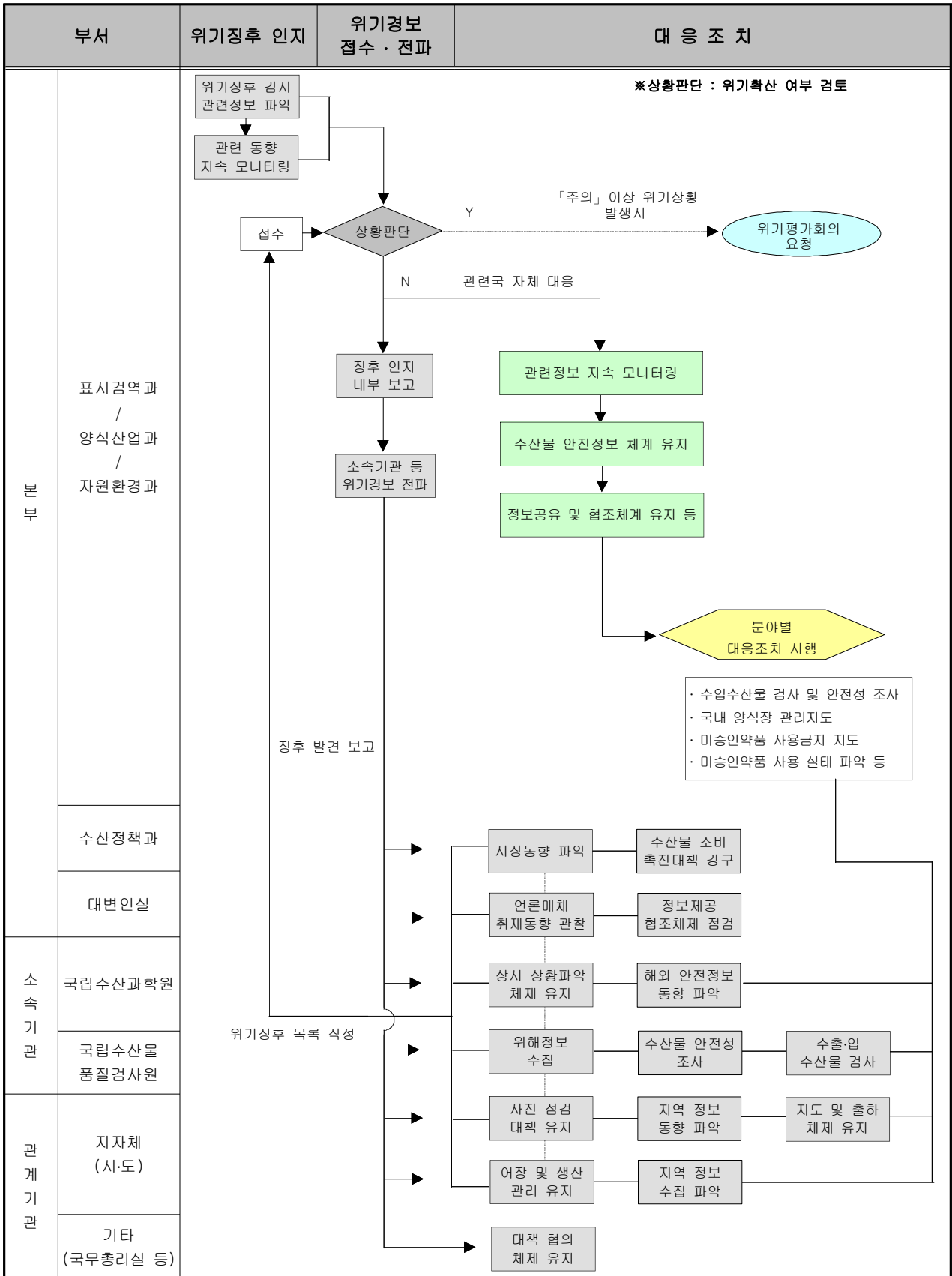
구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비고	
위기징후 인지	표시검역과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수산물 위해요소의 타지역 전파 및 확산 정보 파악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등의 피해상황 파악 ○관련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위기경보 접수·전파	표시검역과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을 작성 또는 접수, 내부보고 ○위기평가회의 결과 「경계」 단계인 경우 즉각 중앙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상황 접수·보고 ○관련부서,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및 경보 전파		
대응 조치	본부	총괄반	○농림수산물부 중앙대책본부(본부장:실장) 가동 - 반별 기능 및 역할 분장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 개최 ○수입수산물 검사 및 안전성조사 확대 추진 ○위해 물질(미승인약품) 사용 금지 등 지도 강화(실적보고)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추진 ○현지 실태조사 및 점검 ○수출수산물에 대한 대책 마련 - 어업인교육 및 사전검사 계획 수립 ○소속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및 정보공유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수급반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및 보고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	
		지도·생산관리반	○양식장 지도 강화 ○어업인 동향 점검 ○시도 어촌계, 어업인 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해양경찰청 및 수협과의 업무 협조 ○위해물질 관련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강화 ○미승인약품 사용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위해요소 발견된 어패류 및 양식어류 생산동향 파악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제 강화 ○브리핑 실시 : 종합대책 수립 사항 등 ○대 국민 홍보활동 및 관련 동향 파악 강화	
	소속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상시 상황파악 체제 강화 ○해외 수산식품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 강화 : 식약청 협조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추가 안전성조사 실시 ○수출·입 수산물 추가 검사 실시	
	관계기관	지자체(시·도)	○지방비상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구성 운영 ○관련기관, 협회 등 유기적 연락체제 강화 ○관할구역 내 관련 상황을 정리하여 농림수산물부에 보고 ○양식장 및 수산물 안전성 지도·감독 강화 ○수산물 지도 및 출하 감시 체제 유지 ○국내산 수산물 판매·홍보 협조 요청 : 수협 협조 ○지역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기타 (국무총리실·식약청 등)	○해당 사항별로 협의체제 강화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협조	

심각(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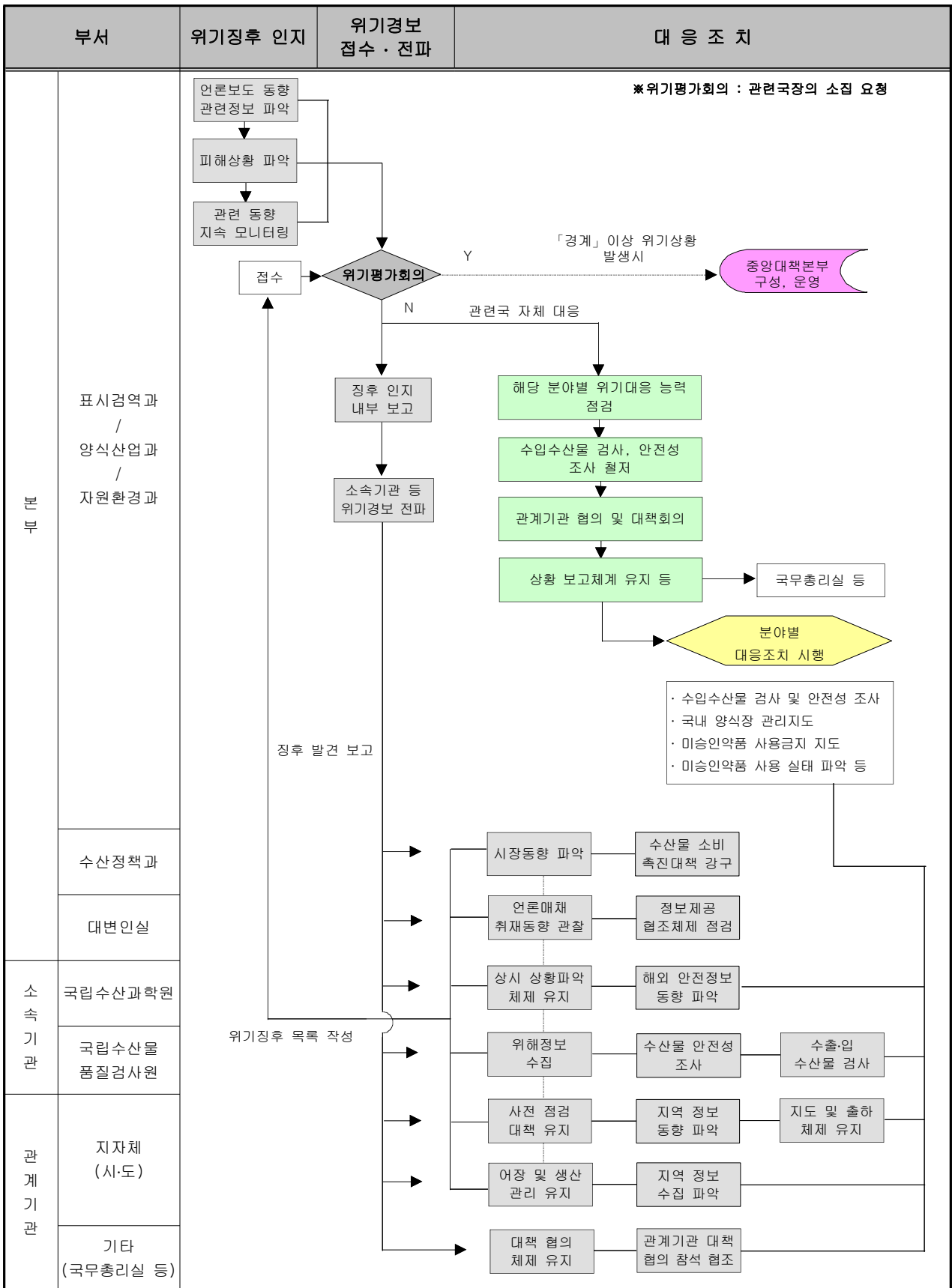
구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비고	
위기징후 인지	표시검역과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및 소비급감 동향 파악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등의 피해상황 파악 ○관련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위기경보 접수·전파	표시검역과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접수되는 위기상황 보고 ○중앙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상황 보고 ○위기경보 및 상황을 관련부서,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전파 		
대 응 조 치	본 부	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식품부 중앙대책본부(본부장:실장) 가동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분야별 비상운영대책 즉시 시행 ○관계부처 대책 회의(국무회의보고, 당정협의회 등) ○위생안전관리지침 등 통보 ○위해물질((미승인약품) 사용금지 및 출하감시 철저 ○수입수산물 검사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국내 양식장 미승인 약품 사용실태 파악 ○미승인약품 사용 금지지도(시·도) ○수출 수산물 피해 대책 추진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강구 ○상황보고(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수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및 보고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 ○피해 업계 파악 및 지원대책 강구 추진 	
		지도·생산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장 현장지도 및 감독 강화 ○어업인 동향 파악 및 보고 ○시도 어촌계, 어업인 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해양경찰청 및 수협과의 업무 협조 강화 ○생산·출하금지, 폐기 등 위해 수산물 공급 차단 조치 ○위해물질(미승인약품) 관련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강화 ○위해요소(미승인약품) 발견된 어패류 및 양식어류 생산동향 파악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속 위기대응조치 강구(농식품부내 홍보협의회 개최)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제 강화 ○브리핑 실시 : 종합대책 수립 사항 등 ○대 국민 홍보활동 및 관련 동향 파악 강화 	
	소 속 기 관	국립수산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해물질 및 약품관련 국내·외 정보 수집하여 보고 ○수산물 약제 안전 관련업무 등 지속적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 강화 : 식약청 협조 ○수출·입 수산물 특별관리 ○생산·출하 금지된 어종 안전성 조사 확대 ○위해물질(미승인약품) 검출 수산물에 대한 폐기, 반송 등 조치 	
	관 계 기 관	지자체(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기관, 협회 등 유기적 연락체제 강화 ○생산·출하 금지, 폐기 등 위해 수산물 공급 차단 조치 ○일일 상황 보고(매일 19:00) ○지역내 관련정보 수집 강화 및 동향파악 보고 ○수산물 현장지도 및 출하 감시 체제 강화 : 시·도 협조 ○지방비상대책본부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지역내 수산물관련 어업인 피해상황 보고 ○국내산 수산물 판매·홍보 협조 강화 : 수협 협조 	
		기타 (국무총리실·식약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항별로 협의 강화 ○관계기관 대책회의 확대 개최 	

1.8.6 단계별 위기대응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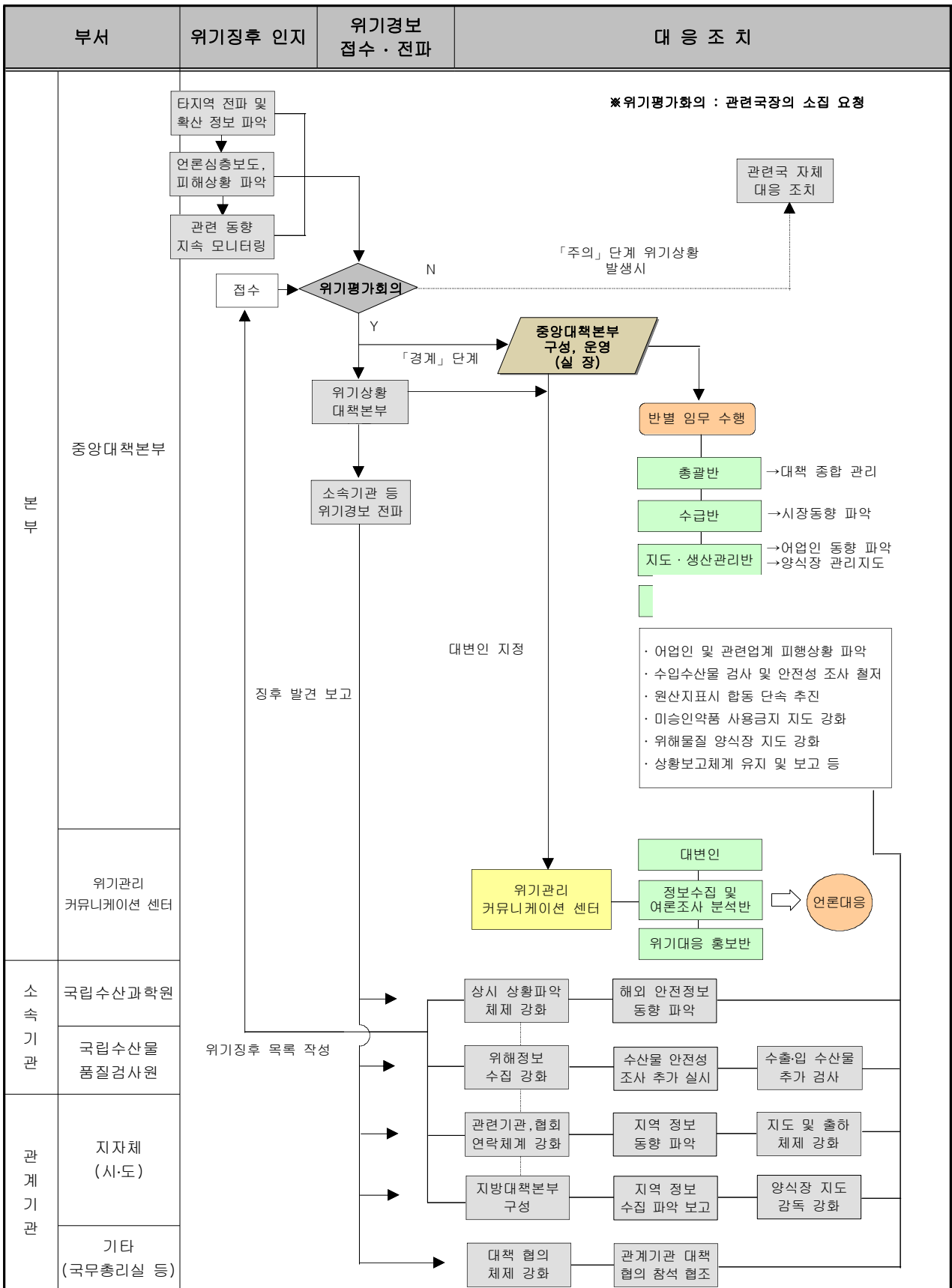
□ 관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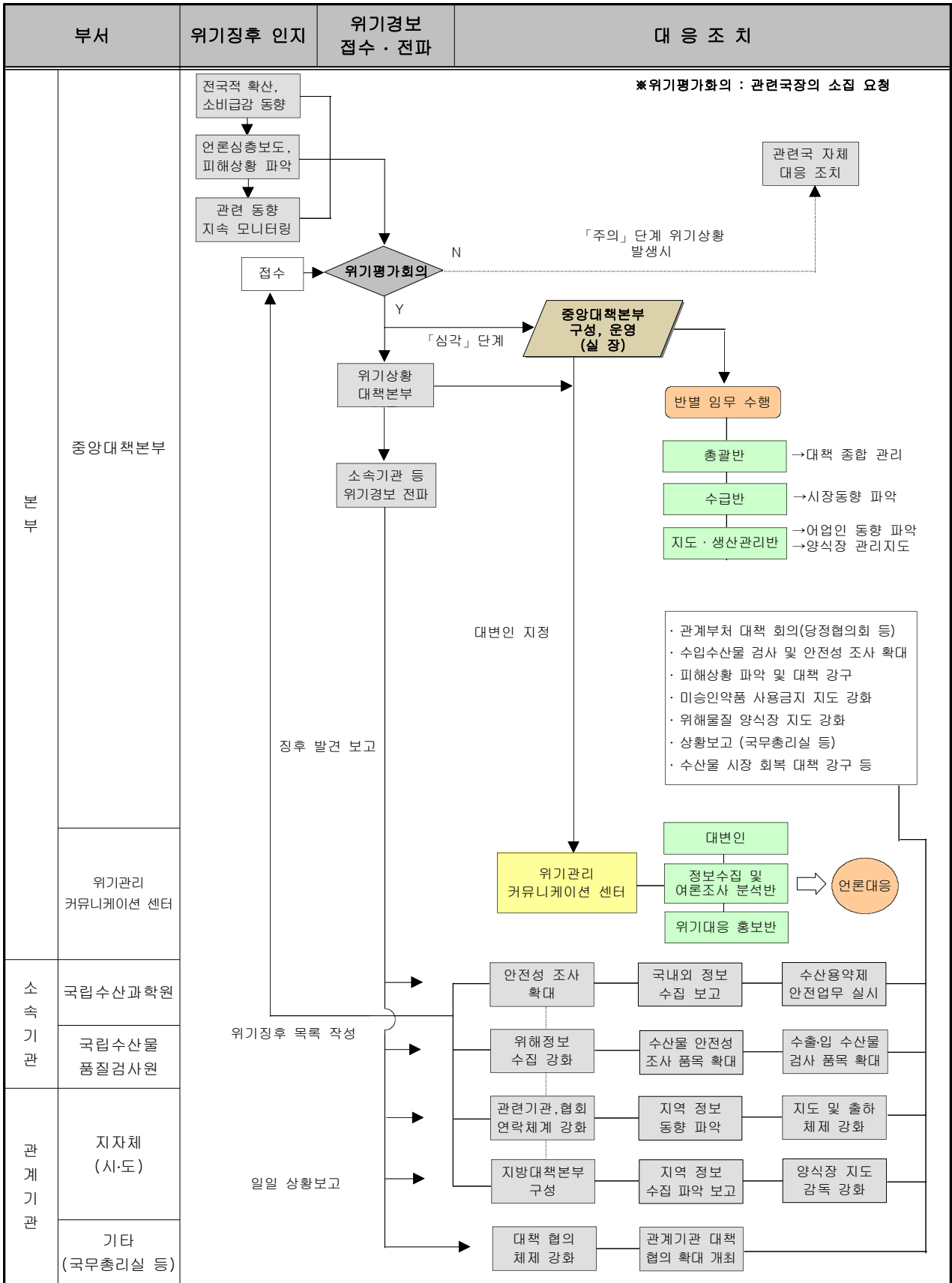
□ 주의단계



□ 경계단계



□ 심각단계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2.1.1 상 황

□ 수산물 위해요소 징후 감지 및 시기도래

- 수산물 위해물질의 감지
- 미승인 약품 사용 예상시기 도래

2.1.2 조치사항 및 절차

2.1.2.1 조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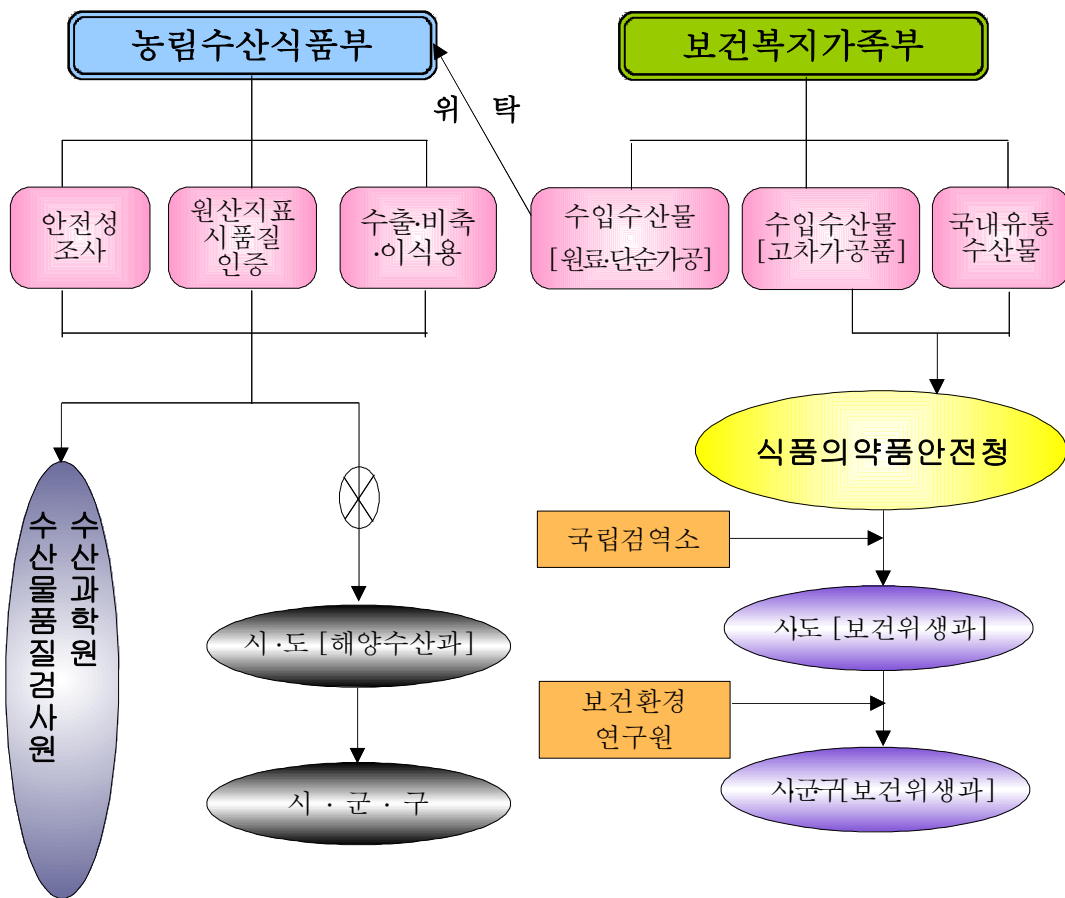
구 분	세 부 내 용	담 당 부 서
위기징후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수산물 검사, 국내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한 수산물 안전문제 관련 정보 파악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부(주관부서) ○소속기관 ○관계기관
위기경보(관심)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으로부터 위기경보(관심) 접수 ○ 접수한 위기경보를 지자체(시·도), 관련 단체 등에 즉시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부(주관부서) ○소속기관 ○관계기관
관심단계 대비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징후 인지 내용 내부보고 ○ 수산물 유통 동향 상시 파악 및 정보수집 강화 ○ 관련정보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 소속기관, 관계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정보 공유 ○ 수입수산물 검사 및 안전성 조사 계획대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부(주관부서) ○소속기관 ○관계기관

2.1.2.2 조치 내용

가. 위기정후 인지

- 수입수산물 검사를 통하여 인체위해물질 잔류가 우려되는 수산물의 발견 및 조치
 - 수산동·식물 및 단순가공품(활어, 냉동·냉장, 건제품 등)
 - ※ 통조림, 어묵, 조미수산식품 등 고차가공품은 보건복지가족부(식약청)에서 직접 검사
 - 수입이력 및 품목에 따라 서류, 관능,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생산단계

학교급식 : 교육과학기술
부
육역오염물질 : 환경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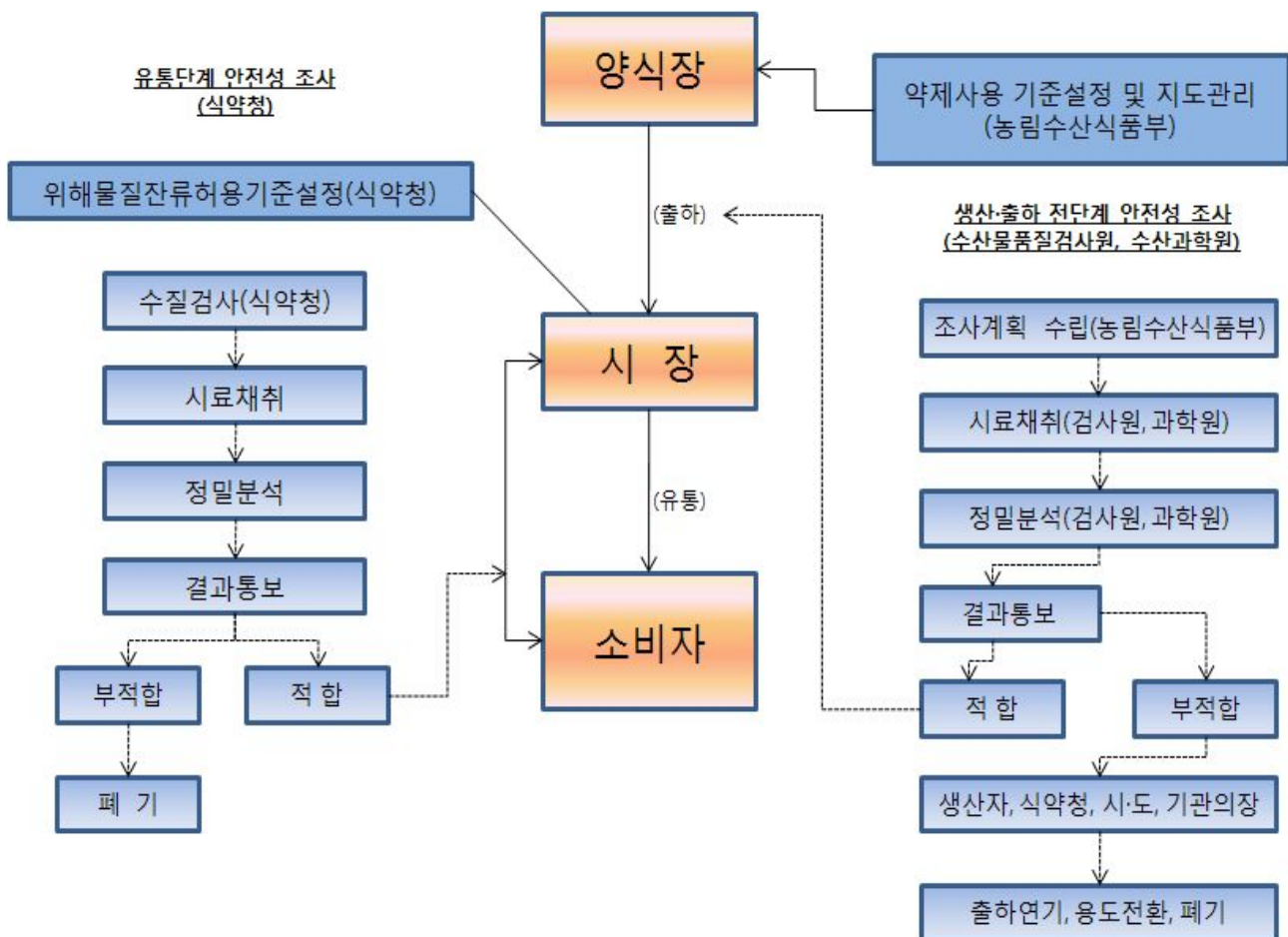
유통단계

-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중금속, 항생물질, 식중독균 등 65개항목 검사
- 검사결과 6개월간 2회이상 부적합품(동일국, 동일제품)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
- 적합품에 대하여도 무작위로 지정된 비율을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표본 정밀검사 실시하여 수산물 위해요소 확인

○ 국내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한 수산물 안전문제 관련 정보 파악

- 국내산 수산물 위생안전 관리 절차에 따라 국내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수산물의 위해요소 확인

<국내산 수산물 위생안전 관리 절차>



- 수산물 관련기관으로부터 피해발생 및 관련 징후를 통보받고 필요시 소속기관 등에 통보하며 현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수출 및 국내수산물 검사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행하여 위해요소 확인
 - 국내산의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항생물질, 중금속, 식중독균, 복어독 등)
 - 정부비축용 수산물 검사 시행
- 양식장의 미승인 약품 사용 점검
 - 양식장 약품사용 실태 확인
 - 미승인 약품 관리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나. 위기경보(관심) 접수·전파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을 작성 또는 접수하여 내부보고
 - ※ 서식: '초기 상황보고 서식(내부보고용)'
 - 위기상황 접수 즉시 관련국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 징후의 위협 또는 수준을 자체 평가
- 위기확산에 대한 검토를 자체적으로 실시
- 위기경보를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 통보

다. '관심'단계 대비조치 시행

- 주관부서의 업무현황 파악체제를 갖추고,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에 위기단계(관심) 대응조치 시달
- 시·도 및 수산 관련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위기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함
- 관련기관은 수입수산물 검사 및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필요한 조치 시행

2.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1.3.1 주관부서

□ 표시검역과

- 각종 수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상시수집체계를 유지
 - 일상적인 업무와 연계하여 관련 업무 추진
- 수집된 안전정보 분석 및 단계별 대응체제 점검
- 위해물질 검출 (국내·수입산)수산물 검사

□ 양식산업과 / 자원환경과

- 양식장내 약품사용 정보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체제 유지
 - 수집된 정보 분석 및 점검
- 위해물질 관련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요청
- 미승인 약품 사용금지 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 시·도 등 통보

□ 수산정책과

-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 점검

□ 대변인실

- 기자간담회, 브리핑, 기고, 기획보도 등 일상업무 유지
 - 홍보담당관실은 신문·TV 등 언론매체의 관련기사는 물론 출입기자의 취재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문제화 가능사항에 대한 필터링 실시
 - 수산물 안전 및 예방을 위한 홍보 : 표시검역과 협조
 - 언론보도 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협조체제 점검
 - ※ '농림수산식품부 위기관리 언론대응 행동지침',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매뉴얼(첨부2)' 참조
 - 보도자료 등의 배포 시 소속기관과의 사전 협의 실시

2.1.3.2 소속기관

□ 국립수산물과학원

- 상시 상황파악 체제 유지
- 해외 수산물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 : 식약청 협조
-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
-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 실시

2.1.3.3 관계기관

□ 시·도

- 각 시·도별 사전 점검대책 회의 등 주관
- 수산물 지도 및 출하 감시 체제 유지
- 어장 및 생산관리
- 지역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 기타

- 해당 사항별로 국무총리실·식약청과 협의체제 유지
- ※ 관련동향을 종합 검토 후 관련기관 협조사항을 요청

제2절 주의

2.2.1 상 황

□ 수산물 위해요소 발생

- 수산물 위해물질 개별적 발생
- 미승인 약품에 따른 식품안전문제 대두(시·도 보고 등)

2.2.2 조치사항 및 절차

2.2.2.1 조치목록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위해요소의 발생 및 언론 보도 동향 파악 ○ 수산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주관부서) ○ 소속기관 ○ 관계기관
위기경보(주의)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으로부터 위기경보(주의) 접수 ○ 접수한 위기경보를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주관부서) ○ 소속기관 ○ 관계기관
주의단계 대비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위기의 확산 가능성 검토(중앙대책본부) ○ 수입수산물 검사 및 안전성 조사 철저 ○ 위해물질 설정기준 및 법적 근거 등 검토 ○ 양식장 및 위해물질 관리지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위해물질 모니터링 실시, 유통수산물 검사 등 ○ 언론보도 확산 방지 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설명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 소속기관, 단체 및 어업인간 긴밀한 상황대응 체제 구축 ○ 수산물 홍보 및 수산물취급 교육 강화 ○ 업계의 지속적 위생안전 확보 요청 ○ 언론 보도자료 배포(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등) ○ 상황보고체계 유지(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주관부서) ○ 소속기관 ○ 관계기관

2.2.2.2 조치내용

가. 위기징후 인지

- 수산물 위해요소의 발생 및 언론 보도동향 파악
 - 소속기관보고·관계기관 통보·언론보도·민원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 등에 대한 위해요인을 주관부서가 인지한 상황
- 수산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안전문제 또는 과거 유사한 안전문제는 주관부서가 기존 업무 처리예에 따라 처리함
- 수산물 위해물질 검출 등 별도대책 마련이 필요한 안전문제는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를 거쳐 「중앙대책본부」 구성여부 결정

나. 위기경보(주의) 접수·전파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을 작성 또는 접수하여 내부보고
 - 수산물 위생·안전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 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련업무 해당 국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위기평가회의 소집을 결정

※ 서식 : '위기평가회의 보고서' 참조

<위기평가회의>

- 구성 : 식품산업정책실장(의장), 소비안전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지원관, 대변인, 표시검역과장, 양식산업과장, 수산정책과장, 자원환경과장, 소비안전정책과장, 안전위생과장 등으로 구성
 - ※ 필요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및 외부전문가 참석
- 평가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대응능력 등을 종합 고려
- 결과 : 위기수준 평가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등을 수록한 회의록을 작성, 장·차관 보고 및 관리

- 평가결과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 위기경보를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 통보

다. '주의'단계 대비조치 시행

-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위기상황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정보공유
- 위기확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중앙대책본부 구성 등 종합대응 필요성을 결정(식품산업정책실장 보고)
 - 문제인식 후 2일(48시간) 이내 보고 실시

- 위기확산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중앙대책본부 구성안(구성원별 역할분담) 및 관계부서(기관)별 협조체계안을 마련하여 함께 보고
- 확산가능성이 없을 경우, 주관부서의 자체 대응방안 보고
- 주관부서는 수산물 안전문제로 인해 파생 가능한 사항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분석,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 체크리스트(예)>

- (1) 제기된 안전문제를 주관부서가 사전에 인지하였는가?
- (2) 기존 예산·법률상의 수단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가?
- (3) 특정 어종·지역에 국한된 사안인가?
- (4) 일반국민 또는 어업인이 체감하는 민감도는 어느 정도인가?
- (5) 언론 공개시 느끼는 민감도는 어느정도인가?

※ 필요 시 양식장에 대한 표본조사 등 현장조사 병행

- 위해물질 설정기준 및 법적근거 등 검토
- 국내양식장 및 위해물질 관리지도 철저
 - 발생 위해물질 모니터링 실시
 - 유통 수산물 검사 등
- 수입 수산물 검사 및 안전성조사 철저 지시
 - 안전성 조사 및 검역체제의 재점검
 -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강화
 - 주관부서의 수산물 유통관련 동향의 상시 파악 체제를 유지하고,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각 시·도 등 관계기관에 위기단계(주의) 대응조치

- 수입 수산물인 경우 상대국에 대한 입장 및 해명요구
- 소속기관, 단체 및 어업인간 긴밀한 상황대응 체제 구축
 - 소속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으로 어업인 피해 최소화
- 언론 보도자료 배포(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등)
 - 언론동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기사화가 예상되는 등 별도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정보 공유하여 주관부서에 통보·공동 대응
- 상황보고 체계 유지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 수산물 홍보 및 수산물취급 교육 강화
 - 어획물 채취 등 위생관리 요령 교육 실시
 - 수산물 취급 및 안전 섭취요령 등 지속적 홍보

2.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2.3.1 주관부서

□ 표시검역과

- 각종 수산물 위생·안전정보에 대한 상시수집 활동을 강화
 - 일상적인 업무와 연계하여 관련 업무 추진
- 비상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협조 강화
- 위기의 확산가능성 검토 실시

<위기의 확산 여부에 따른 대응조치>

- 위기확산이 예상될 경우(경계단계 확대)
 - 중앙대책본부 구성 :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3개반 구성
 -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성 : 국무총리실·식약청, 시·도 등

- 위기확산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에서 즉시대응
 - 위기 발생 단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주관 부서 결정
 - * 생산단계 :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 * 출하단계 : 표시검역과

-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상황을 상시 파악, 정리하여 산하기관 등에 전파하고 주요 대응사항 시달

- 수산물 안전정보 분석 및 단계별 대응체제 강화
 - 안전성 조사 및 검역체제의 재점검

- 위해물질 검출 (국내·수입산)수산물 검사 강화
 - 위해물질 검출 사용금지 지도 및 출하감시 강화 지시

□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 위해물질 관련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요청

- 미승인 약품 사용금지 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 시·도 독려

- 위해요소 발견된 어패류 및 양식 수산물 생산동향 파악

□ 수산정책과

-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 강화
 -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특판 및 시식회 행사 추진

□ 대변인실

- 기자간담회, 브리핑, 기고, 기획보도 등 추진
 - 신문·TV 등 언론매체의 관련기사는 물론 출입기자의 취재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문제화 가능사항에 대한 필터링 실시
 - 수산물 피해 수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 언론보도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오인성, 추측성 보도를 금지하도록 협조 요청(사실관계가 잘못 보도되어 언론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조치 강구)
 - ※ '농림수산식품부 위기관리 언론대응 행동지침',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매뉴얼' 참조
 - 보도자료 등 배포시 소속기관과 사전 협의 실시

2.2.3.2 소속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상시 상황파악 체제 강화
- 해외 수산물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 : 식약청 협조
-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
-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 실시

2.2.3.3 관계기관

□ 시·도

- 각 시·도별 사전 점검대책 회의 등 주관
- 어장 및 생산관리 강화
- 지역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 수산물 지도 및 출하 감시 체제 유지

□ 기타

- 해당 사항별로 국무총리실·식약청과 협의체제 강화
 - ※ 관련동향을 종합 검토 후 관련기관 협조사항을 재점검하고 상시연락체제 유지

제3절 경계

2.3.1 상 황

□ 수산물 위해요소의 타지역 확산

- 수산물 위해물질 타지역 확산
- 미승인 약품 사용으로 사회 문제화(언론보도 등)

2.3.2 조치목록 및 조치내용

2.3.2.1 조치목록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위해요소의 타지역 전파 및 확산 정보 파악 ○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업계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중앙대책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위기경보(경계)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으로부터 위기경보(경계) 접수 ○ 접수한 위기경보를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중앙대책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 중앙대책본부(본부장:실장)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별 기능 및 역할 분장 ○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최소화 등 종합대책 협의 - 검사체계 개선 등 방안 마련 ○ 수입수산물 검사 및 안전성조사 확대 추진 ○ 위해 물질 사용 금지 등 지도 강화(실적보고) ○ 원산지 표시 활동 단속 추진 ○ 현지 실태조사 및 점검 ○ 수출수산물에 대한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교육 및 사전검사 계획 수립 ○ 소속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및 정보공유 ○ 브리핑 실시 : 종합대책 수립 사항 등 ○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 대 국민 홍보활동 및 관련 동향 파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중앙대책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2.3.2.2 조치내용

가. 위기징후 인지

- 수산물 위해요소의 타지역 전파 및 확산 정보를 접수받고 담당부서와 소속기관에 통보
 - 위해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의 피해호소가 집중되는 상황
 - 위기확산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이슈(hot issue)」를 도출하고 각 이슈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 언론의 심층보도 동향 및 관련 업계 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서 및 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나. 위기경보(경계) 접수·전파

- 중앙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상황 접수·보고
 - 위기상황 접수 즉시 중앙대책본부장(실장)에게 보고
- 중앙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은 가능한 구체적(인원, 주관부서 등)으로 결정하고 협조체계 강화
- 위기경보를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

다.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 중앙대책본부는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3개반으로 구성하여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위기확산을 방지
 - 중앙대책본부는 핵심이슈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관계부서(기관)에 전파하고, 위기대응 단계별 대책 총괄·조정
 - 대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일관된 정부방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핵심이슈별로 작성하여 관계부서(기관)에 공유
- 분야별로 비상운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관계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대책을 수립, 중앙대책본부의 조정을 거쳐 시행
-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 수산물 위해물질 검출 등 수산관련 위기상황으로 수산물 소비둔화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 방지 및 복구 대책 강구
-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 개최
 - 피해 최소화등 종합대책 협의
 - 검사체계 개선 등 방안 마련
- 수입수산물 검사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추진
-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 지도강화(처방실적 등 보고)
-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합동단속 등)
- 현지 실태 조사 및 점검
- 수출수산물에 대한 대책 마련
 - 어업인 교육 및 사전검사 계획 수립

-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보고
 -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당과제별로 관계기관과의 협조 강화
 - ※ 국무총리실·식약청과 협의 강화
- 브리핑 실시 : 종합대책 수립 사항 등
- 대 국민 홍보활동 및 관련 동향 파악 강화
- 시·도는 관할구역 내 상황을 매일 중앙대책본부에 보고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3.3.1 중앙대책본부

-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분장별 임무 숙지 및 위기대응 실시
 - 대책반별 임무를 숙지하여 위기대응대책반의 가동시 상호 협조체제 유지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함
- 관계기관 및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위기상황을 파악, 정리하여 유관 기관 등에 전파하고 주요 대응사항 시달
- 중앙대책본부의 관계기관 합동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실시
 - 위해수산물 전량 폐기조치하고 안전수산물은 출하전 검사증명서 발급하여 유통허용 조치
- 수산물 안전 대책강구 및 전파 등을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 목적(안전) : 위기정보 공유 및 수산물 안전 대책 수립
 - ※ 참석기관 : 국무총리실·식약청 등
- 핵심이슈 도출 및 이슈해결을 위한 관계부서별 대책수립 독려
 - ※ 국내·수입 수산물 검사강화 및 위해물질 추가검출 수산물 폐기
- 미승인 약품 사용금지 강화 및 규정위반 어민 사법조치

- 수산물유통 피해 규모 파악 및 지원대책 강구
- 수산물 합동 홍보·시식회 및 정부대책 실시 등
 - 조속한 안전성 조사 후 안전한 수산물 출하 허용 검토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 후속 언론 위기대응조치 점검 및 실시
 - 농식품부 내 홍보담당자와 정책담당자간 정보공유, 홍보방향 설정을 위한 홍보협의회 개최
 - ※ 필요시 식약청 등 유사현안이 있는 관계기관의 홍보담당자가 참석하는 정책 홍보협의회를 별도로 개최여부 검토
- 농림수산물식품부 이미지개선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 단계별 수산물 안전 홍보 방안 강구 및 언론동향 점검

□ 총괄반

-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소속기관 협의 및 보고
- 안전성 조사결과 종합 및 관계기관 협의
- 안전수산물 유통대책 마련 : 수산정책과 협조
- 「양식수산물 위생안전지침」 소속기관 통보

□ 수급반

- 시장동향 파악 및 보고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
 - 수산물 시식회 개최 : 수협 협조

□ 지도·생산관리반

- 양식장 지도 강화
- 어업인 동향점검
- 해양경찰청 및 수협과의 업무협조
- 시·도 어촌계, 어업인 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 위해물질 관련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강화
- 미승인 약품 사용금지 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 시·도 독려
- 위해요소 발견된 어패류 및 양식 수산물 생산동향 파악

2.3.3.2 소속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상시 상황파악 체제 강화
- 해외 수산물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보고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 강화 : 식약청 협조
-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위해물질 추가 검사 실시
-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위해물질 추가 안전성조사 실시

2.3.3.3 관계기관

□ 시·도

- 지방비상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구성 운영
- 관할구역 내 관련 상황을 정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양식장 및 수산물 안전성 지도, 출하 감시 체제 강화
- 수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 홍보 : 수협 협조
- 관련기관, 협회 등과 유기적인 연락체제 강화
- 지역 정보 수집 강화 및 동향파악
- 지역내 수산물관련 어업인 피해상황 보고

□ 기타

- 해당 사항별로 국무총리실·식약청과 협의 강화
-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협조
 - ※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품질검사원 등

제4절 심각

2.4.1 상 황

□ 수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및 소비급감

- 수산물 위해물질의 전국적 확산
- 미승인 약품 사용에 의한 사회문제 확산 및 소비 급감

2.4.2 조치사항 및 절차

2.4.2.1 조치목록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및 수산물 소비 급감 동향 파악 ○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업계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중앙대책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위기경보(심각)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으로부터 위기경보(심각) 접수 ○ 접수한 위기경보를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중앙대책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심각 단계 대비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비상운영대책 즉시 시행 ○ 관계부처 대책 회의 ○ 국무회의보고 및 당정협의 ○ 기 수립된 종합대책의 추진 협의 ○ 출하중지 등 협의 ○ 위생안전관리지침 등 통보 ○ 위해물질 사용금지 및 출하감시 철저 ○ 수입수산물 검사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 수출 수산물 피해 대책 추진 ○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강구 ○ 언론 및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및 관련 동향 파악 강화(브리핑 등 실시) ○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중앙대책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2.4.2.2 조치내용

가. 위기정후 인지

- 수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정보 및 수산물 소비 급감 동향 파악
 - 위해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의 피해가 증가되어 집단행동이 발생하는 상황
 - 위기확산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이슈(hot issue)」 별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 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강화
 -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서 및 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 소속기관으로부터 현지 동향을 파악하여 대책 마련

나. 위기경보(심각) 접수·전파

-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접수되는 위기상황 보고
 - 위기상황 접수 즉시 중앙대책본부장(실장)에게 보고
 - ※ 중앙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은 「경계」 단계와 동일
- 위기경보를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

다. '심각'단계 대비조치 시행

- 중앙대책본부는 수산물 위기상황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는 상황
이므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정부차원의 대응
대책을 전면 시행토록 협조체제 강화
 - 상황별 조치요령 및 농림수산식품부 조치사항 전파
 - 효율적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범정부 종합대응 확대
 - ※ 목적(안전) : 위기정보 공유 및 수산물 안전 대책 수립
 - ※ 참석기관 : 국무총리실, 식약청 등
- 관계부처 대책회의, 국무회의 보고, 당정협의 및 국회의원 설명(농림
수산식품위원회 등)
 - 안전 : 위기상황 및 대책 추진 사항 보고 및 국회 협조 요청사항 등
 - 세부내용 : 기 수립된 종합대책의 추진 협의, 출하중지 등 협의
- 위생안전관리지침 등 통보
- 위해물질 사용금지 및 출하감시 철저
- 수입수산물 검사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철저 추진
- 수출수산물 피해 대책 추진
- 분야별로 비상운영 대책을 마련하여 전면 시행
 - 중앙대책본부는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서가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전면 시행
 - 위해수산물 모니터링 및 전수조사 실시 지침 시달

-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강구
 - 수산물 위해물질, 질병 등 수산관련 위기상황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둔화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 방지 및 복구 대책 강구
- 대 국민 홍보활동 강화 및 관련 동향 파악 강화(브리핑 실시 등)
 - 수립된 수산물의 안전홍보 계획을 재검토하여 시행하고 안전수산물 유통 대책과 소비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을 확대 시행
 -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대 국민협조 당부
- 상황보고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4.3.1 중앙대책본부

- 중앙대책본부를 적극 가동하여 1일 2회 종합상황을 파악하여 관련 기관 등에 제공
 - 상호 협조체제 유지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함
- 대책본부는 위기상황을 시간대별로 파악, 정리하여 관련기관 등에 전파하고 주요 대응사항 시달
 - ※ 서식 : '위기상황 시간대별 조치사항' 참조
- 수산물 안전 대책강구 및 전파 등을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 목적(안전) : 위기정보 공유 및 수산물 안전 대책 수립
 - 참석기관 : 국무총리실, 식약청 등
- 수산물유통 피해 규모 파악 지시
- 추가 안전성 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 후속 언론 위기대응조치 강화
 - 농식품부 내 홍보담당자와 정책담당자간 정보공유, 홍보방향 설정을 위한 홍보협의회 재개최
 - ※ 필요시 식약청 등 유사현안이 있는 관계기관의 홍보담당자가 참석하는 정책 홍보협의회를 별도로 개최
- 농림수산식품부 이미지개선에 대한 홍보계획 강화
- 단계별 수산물 안전 홍보 방안 강구 및 언론동향 대응책 수립
 - 왜곡·과장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 언론사 간담회, 브리핑 등 실시

□ 총괄반

-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1일 2회 종합상황을 파악하여 소속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
- 소속기관 추진사항 점검 및 독려
- 관계기관 협의사항 소속기관에 전파
- 관계기관 협의 및 대책회의 개최

□ 수급반

- 시장동향 파악 및 보고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전면 시행
 - 수산물 특판 및 시식회 개최 : 수협 협조
- 피해업계 파악 및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하여 추진

□ 지도·생산관리반

- 양식장 현장지도 및 감독 강화
- 어업인 동향 파악 및 보고
- 해양경찰청 및 수협과의 업무협조 강화
- 시·도 어촌계, 어업인 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 수산물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양식장 약품사용 관리대책 강구
- 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등

2.4.3.2 소속기관

□ 국립수산물과학원

- 위해물질 및 약품관련 국내·외 정보 수집하여 보고
- 수산용 약제 안전 관련업무 등 지속적 실시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 강화 : 식약청 협조
- 수출·입 수산물 특별관리
 - 위해물질 발생국가에 대한 특별 관리
- 생산·출하 금지된 어종 안전성 조사 확대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 점수 및 품목 확대
 - 위해물질 검출 수산물에 대한 조사 점수 및 품목 확대
- 위해물질 검출 수산물에 대한 폐기, 반송 등 조치

2.4.3.3 관계기관

□ 시·도

- 생산·출하 금지, 폐기 등 위해 수산물 공급 차단 조치
- 일일 상황 보고(매일 19:00)
 - ※ 서식 : '상황 보고서(지자체용)' 참조
- 지역내 관련정보 수집 강화 및 동향파악 보고
- 수산물 현장지도 및 출하 감시 체제 강화
- 지방비상대책본부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 지역내 수산물관련 어업인 피해상황 보고
- 국내산 수산물 판매·홍보 협조 강화 : 수협 협조
- 관련기관, 협회 등과 유기적인 연락체제 강화

□ 기타

- 해당 사항별로 국무총리실·식약청 등과 협의 강화
- 관계기관 대책회의 확대 개최
 - ※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수산물 위해물질 검출에 의한 피해 발생

3.1.1 상 황

□ 개요

국내산 민물 양식어류 ○○에서 새로운 발암의심물질인 ○○이 검출되었다고 ○○언론의 보도 이후, 횡감용 수산물 매출이 급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어업관련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산물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

□ 피해내용

국내산 양식어업 매출의 급감, 생산량 감소, 국내수산물의 안전성 불신 확산

□ 언론보도 내용

중국산 수입 ○○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발암물질 ○○이 국내산 양식어류에서도 검출되자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음. 이 ○○물질을 다량 복용 시 심한 구토, 식도 및 위의 자극,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등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위해물질로서 우리나라에는 식품첨가물상의 아무런 기준이나 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3.1.2 조치사항 및 절차

3.1.2.1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p>상황 접수·전파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수산물 검사, 안전성 조사 등 수산물 안전문제 관련 정보 탐색 ○ 관련 동향 접수 및 자체수집, 관련기관에 전파 ○ 관련 동향 종합 분석 ○ 해당 수산물 안전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총괄·관리 ○ 핵심이슈별 소관부서의 대책을 종합조정 ○ 식약청, 시·도 등 대외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p>대응조치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징후 인지 내용 보고 ○ 관계기관 및 소속기관 정보공유 체계 및 협조 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 시·도 등 대외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 ○ 수입 수산물 검사강화 및 안전성조사 실시 ○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위해물질 설정기준 및 법적근거 등 검토 ○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및 위해물질 사용금지 지도 ○ 수산물 유통 동향 상시 파악 등 정보수집 강화 ○ 원산지 표시 단속 철저
<p>복구(수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 수산물 홍보, 시식회 및 정부대책 실시 등·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수산물의 안전성 대국민 홍보 ○ 대언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와의 간담회 실시 - 여론지도층에게 장관 서신문 발송 - 출입기자 간담회, 브리핑, 보도자료 수시 배포 - 수산관련단체와 연계 광고 게재

3.1.2.2 조치 내용

가. 상황 접수·전파 및 평가

- 각종 수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상시수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일상적인 업무와 연계하여 관련 상황 접수
- 수집된 안전정보를 예의주시하며, 사전 대응체제 점검

정보내용	정보소스
국내외 수산식품 안전정보	식약청
사용개연성 있는 위해물질 상시 모니터링	검사원
해외 수산식품 안전정보	KMI

- 신문·TV 등 언론매체의 관련기사는 물론 출입기자의 취재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문제화 가능사항에 대한 필터링 실시

나. 대응조치 시행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안전문제 또는 과거 유사한 안전문제는 주관부서가 기존 업무 처리예에 따라 처리함
- 수산물 위해물질 검출 등 수산물 위해사항에 대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상황 발생, 예상되는 경우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 구성여부 결정(식품산업정책실장)
-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 주관부서는 위기평가회의를 기초로 중앙대책본부 구성 등에 대한 종합대응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 문제인식 후 2일 이내 보고 실시
 - 위기확산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중앙대책본부 구성안(구성원별 역할 분담) 및 관계부서(기관)별 협조체계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함께 보고
 - 확산가능성이 없을 경우, 주관부서의 자체 대응방안 보고
- 중앙대책본부는 핵심이슈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관계부서(기관)에 전파하고, 대책 수립 총괄·조정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언론동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기사화가 예상되는 등 별도 언론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주관부서에 통보·공동대응
- 관계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대책을 수립, 중앙대책본부의 조정을 거쳐 시행

<부서별 대책수립 내용(예)>

대 책	담당부서
○ 위해물질 검출 (국내·수입산)수산물 검사 및 폐기 ○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표시검역과
○ 양식장 현장지도 및 감독 강화 ○ 양식장 약품사용 관리대책 강구	양식산업과/ 자원환경과
○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수산정책과
○ 기자간담회, 브리핑, 기고, 기획보도 등 추진	대변인실

-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수 사항으로 해당과제별로 국무총리실·식약청과 협의 강화
- 시·도는 관할구역 내 상황을 매일 중앙대책본부에 보고

다. 복구(수습)

- 핵심이슈에 대한 대책 추진으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신은 잠재화된 상황
- 위해요인으로 도출된 관리체계상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 중앙대책본부는 그간의 조치내용을 종합평가하여 위기관리방안의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보완한 후 해체
- 관계부서는 법령개정 필요 등으로 미완결된 대책은 주관부서에서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 대변인실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기획취재 등 대언론 종합홍보방안 마련
- 관계기관으로서 식약청 등은 수산물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관계 법령 개선에 협조

3.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표시검역과

- 일일상황 점검
 - 수산물 위해물질 정보
 - 언론동향 주시
- 관계기관 협의 및 대책회의 개최
 - 국무총리실, 식약청 등
 - 안전, 장소, 참석대상 등 확정
- 위기상황 해결을 위한 관계부서별 대책수립 독려
-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책 수립·전파
 - 국내산 및 수입산 수산물 검사강화 및 위해물질 검출 수산물 폐기 등

□ 수산정책과

-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시행
 - 수산물 홍보·시식회 및 특판 대책 강구

□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 양식장 지도
- 어업인 동향점검

- 해양경찰청 및 수협과의 업무협조
- 시·도, 어촌계, 어업인 단체와의 지도 업무 협조

□ 대변인실

- 언론동향 점검 및 보도자료 배포
 - 언론에 보도된 내용 및 피해상황 정리
 - 위기발생 직후부터 자료 제공(필요시 영상자료 포함)
-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사와 협조하여 메인뉴스 방송, 기획보도 등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추진
 -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에 따라 대언론 대응
 - ※제3장 제5절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 참고
 - 왜곡·과장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강구
- 수산물 안전섭취를 위한 홍보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의 대국민 홍보
- 언론사 간담회, 브리핑 등 실시
 - 정례적인 브리핑 실시로 새로운 소식 전달
 - 언론사 간담회 실시로 오보 및 추측성 보도 방지 협조요청
 - 정보제공 채널은 대변인으로 일원화 하고 기자회견, 간담회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 브리핑 리허설 실시
 - 위기종료 시 피해 영향 조사 결과 브리핑 등

제2절 미승인 약품 사용에 의한 피해 발생

3.2.1 상 황

□ 개요

국내 민물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품은 현행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미승인 약품으로 주요성분인 ○○○은 허용기준치를 초과 섭취할 경우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으나, 양식어업인들은 장기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피해내용

수산물의 기피현상이 확산되어 가격하락으로 인한 양식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 증가

□ 언론보도 내용

양식장의 소독제 일종인 ○○은 미승인 약품으로 관련법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마땅한 대체 약품이 없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수산당국의 철저한 현장지도와 약품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기준 및 지침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3.2.2 조치사항 및 절차

3.2.2.1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p>상황 접수·전파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에서 미승인 약품 사용 실태 파악 ○ 관련 동향 접수 및 자체수집, 관련기관에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 시·도 등 대외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 관련 동향 종합 분석 ○ 해당 수산물 안전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총괄·관리 ○ 핵심이슈별 소관부서의 대책을 종합조정
<p>대응조치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승인 약품 사용금지 강화 및 규정 위반 어민 사법조치 ○ 관련제도 개선 등 조치사항 강구 ○ 미승인 약품 사용 수산물 출하중지 및 안전성검사 실시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검출어류 처리 방안 및 지원대책 협의 ○ 식약청, 시·도 등 대외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 ○ 상황보고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 관계부처 대책회의, 당정협의회 등 개최
<p>복구(수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 수산물 홍보, 시식회 및 정부대책 실시 등·대국민 홍보 ○ 국산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 ○ 대언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와의 간담회 실시 - 여론지도층 장관서신문 발송 - 출입기자 간담회, 브리핑, 보도자료 수시 배포 - 수산관련단체와 연계 광고 게재

3.2.2.2 조치 내용

가. 상황 접수·전파 및 평가

- 각종 수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상시수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일상적인 업무와 연계하여 관련 상황 접수
- 수집된 수산물위해정보를 예의주시하며, 사전 대응체제 점검
- 위기평가회의 결과 「경계·심각」 단계 수준으로 「중앙대책본부」 가동
- 「미승인 약품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공전에 신규 위해물질 반영 등 수산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추진 검토
- 신문·TV 등 언론매체의 관련기사는 물론 출입기자의 취재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문제화 가능사항에 대한 필터링 실시

나. 대응조치 시행

<부서별 대책수립 내용(예)>

대 책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소 발견된 어패류 및 양식어류 생산동향 파악 ○ 미승인 약품 사용금지 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 위해물질 관련 국내 양식장 지도관리 요청 	양식산업과/ 자원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유통·가격동향 :유통정책과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수산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간담회, 브리핑, 기고, 기획보도 등 추진 	대변인실

- 언론보도·민원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위해요인이 확산되고 상황으로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방안 강구
- 미승인 약품 사용 금지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조치
- 질병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수산용 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이 상존하는 미승인 약품의 구체적 사용법,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의 가이드 라인 제정 및 행정지도 실시
- 미승인 약품 사용 수산물 출하중지 및 관계기관 합동 안전성검사 실시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검출어류 처리 방안 및 지원대책 협의
- 주관부서는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 구성 등 종합대응 방안을 마련
 - 문제인식 후 2일 이내 보고 실시
 - 위기확산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중앙대책본부 구성안(구성원별 역할 분담) 및 관계부서(기관)별 협조체계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함께 보고
 - 확산가능성이 없을 경우, 주관부서의 자체 대응방안 보고
- 중앙대책본부는 핵심이슈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관계부서(기관)에 전파하고, 대책 수립 총괄·조정
- 대변인실은 언론동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기사화가 예상되는 등 별도 언론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주관부서에 통보·공동대응
- 관계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대책을 수립, 중앙대책본부의 조정을 거쳐

시행

-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 사항으로 해당과제별로 국무총리실·식약청과 협의 강화
- 시·도는 관할구역 내 상황을 매일 중앙대책본부에 보고

다. 복구(수습)

- 안전성이 검증된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강구(농식품부, 시·도, 수협)
- 미승인 약품의 법적 근거 마련(관계부처와 협의, 법제화 추진)
 - 식품 안전성을 검토 후, 인체 위해성이 있는 약품의 사용·금지 등 규제 조치 강구
 - 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추진(수산약제 동향조사)
- 위해요인으로 도출된 관리체계상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 관계부서는 법령개정 등으로 미완결된 대책은 소관부서에서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 대변인실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기획취재 등 대언론 종합홍보방안 마련
- 관계기관으로서 식약청 등은 수산물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관계 법령 개선에 협조

3.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양식산업과/자원환경과

- 미승인 약품 사용 금지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 시·도 통보
- 관련제도 개선 강구
- 양식장 약품사용 실태 확인

□ 표시검역과

-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추진
- 관계기관 합동 안전성검사 실시

□ 수산정책과

- 수산물 유통·가격동향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 수산물 홍보·시식회 및 특판 대책 강구

□ 대변인실

- 언론동향 점검 및 보도자료 배포
 - 언론에 보도된 내용 및 피해상황 정리
 - 위기발생 직후부터 자료 제공(필요시 영상자료 포함)
-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사와 협조하여 메인뉴스 방송, 기획보도 등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추진

-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에 따라 대언론 대응
 - ※ 제3장 제5절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 참고(78쪽)
- 왜곡·과장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강구
- 수산물 안전섭취를 위한 홍보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의 대국민 홍보
- 언론사 간담회, 브리핑 등 실시
 - 정례적인 브리핑 실시로 새로운 소식 전달
 - 언론사 간담회 실시로 오보 및 추측성 보도 방지 협조요청
 - 정보제공 채널은 대변인으로 일원화 하고 기자회견, 간담회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 브리핑 리허설 실시
 - 위기종료 시 피해 영향 조사 결과 브리핑 등

제3절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

3.3.1 정보분석 및 위기대응

-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조사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반’은 사고에 대한 연합뉴스, YTN등 의 보도를 정밀 검토하여 오보여부를 분석
 - 오보로 판정된 경우 일단 “해명서”를 돌려 여타 언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 여론조사기관 등을 활용하여 금번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선입견, 고정관념, 이해와 인식의 부족, 오해나 루머 등을 파악
-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분석결과 활용
 -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반’은 정보분석 결과에 따라 포지셔닝 전략, 메시지 전략을 수립
 - 위기대응 홍보 담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단계별 언론대응 방안을 수립
 -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분석표(Communication Risks Analysis Work Sheet)’에 따라 결과를 요약

3.3.2 언론 홍보

- 중앙, 지방언론에 보도자료 제공

- 사고발생 직후부터 자료 제공
- 사고개요, 사고방지전략, 사고방지성과 및 애로사항, 제도개선계획 등
- 영상자료 포함 제공
- 조사 진행상황 및 명확한 결과도출에 대한 신뢰성 있는 대국민 발표
- 사고처리 브리핑 및 취재편의 제공
 - 정기적으로 브리핑 실시
 - 계속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전달
- e-FOCUS 및 뉴스페이지에 조치사항 수시 게재
- 언론취재지원센터의 설치
 - 원활한 상황파악과 언론보도활동 지원을 위해 언론취재지원센터 설치
 -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 서비스와 기자재 확보
-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의 운영
 -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는 본부와 핫라인을 통해 언론취재지원 및 본부의 대언론 방침을 수시로 교환
 - 사고현장에 출입하는 언론인 가이드 및 언론 취재현황 관리
 - 출입 기자단에게 제도개선 계획, 영상자료(VTR),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편의 제공
- 브리핑시 사전 준비사항(언론취재지원센터)
 - 컴퓨터 설치 및 주변기기 준비
 - 전화 및 팩스를 설치
 - 언론기관 출입기자 명단 및 연락처 준비

○ 주기적 상황보고

- 07:00 : 야간 진행상황, 금일계획
- 12:00 : 주간 진행상황
- 16:00 : 오후 진행상황
- 20:00 : 일일 조치사항 종합실적 및 명일계획
- 수시 : 방제대책회의, VIP 방문, 상황 돌변 등 긴급 상황 시

3.3.3 언론 브리핑

○ 정보제공 채널의 일원화

- 정부의 공식입장은 언론홍보업무를 잘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대변인(대변인)을 통하여만 제공되어야 함
 - ※ 단, 중앙대책본부장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가능
- 대변인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변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대변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참고)>

- (1) 이해관계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전문성
- (2) 대 미디어 트레이닝을 받은 자
- (3) 간결 명확한 표현력
- (4) 논쟁회피 능력
- (5) 질문 중 잘못된 사실을 정정할 수 있는 능력
- (6) 미디어에 호감을 사는 인물

○ 언론의 정보요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유해성 등)

○ 정책홍보협의회 내실화를 통한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 중앙대책본부와 부처내 정책부서간 정책홍보 내부협의회 개최를 통

하여 정보공유와 정책발표방향에 대한 협의 시행

- 대국민 정책발표시 예상되는 파장과 대응책을 다각도로 마련

○ 긴급기자회견(언론브리핑) 설명자료 작성

- 브리핑 시작전 '긴급기자회견 필수 점검항목' 확인 및 점검

<긴급기자회견 필수 점검항목>

- (1) 책임이 있다면 우선 사죄를, 그렇지 않다면 유감이라도 표명
- (2) 추후 법률적 배상책임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초기에 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사죄하되 법적 책임이 있는 문구사용 엄금
- (3) 원인을 밝히거나, 조속히 원인규명에 임할 것을 강조
- (4)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의 공표 등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천명
- (5) 사고로 인한 복구와 배상을 약속

- 브리핑 자료는 '사고 설명자료 작성원칙'에 따라 작성

- 보도자료, 사고설명자료, 언론대응지침은 법률지원팀이 사전에 법률적 검토 및 자문 수행

<사고 설명자료 작성원칙>

- (1) 사실, 조치사항, 간단한 배경과 상황설명 등 3가지 문단으로 작성
- (2) 간단하고 명료하게 사실을 기술
- (3) 감성적인 언어사용 금지
- (4) 추가질문에 즉각 답변 금지
- (5)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의도가 없는 한 입장 표명 금지
- (6) 사후 책임질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긴급기자회견(언론브리핑) 리허설 및 실시

- '기자회견 사전점검표'에 따라 기자회견 일정 등을 점검

- 대변인은 '언론발표시 요령과 원칙'을 점검

- 기자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시에는 기자단의 예상 질문 및 답변서(Q&A)를 미리 작성

<언론브리핑 기본원칙>

- 언론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
 -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
- 확인되기 전까지는 언론에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정보
 - 금번 사고로 인한 손실 및 피해 정도
 - 상황 복구 소요기간 및 비용
 - 해양생태계 변동에 미칠 영향

- 위기관리 언론대응지침의 공유
 - “농림수산식품부 위기관리 언론대응 행동지침”과 1차 언론브리핑 준비 시 결정한 언론보도 지침을 사전에 공유
 - 우리부 홈페이지에 「수산물 위생·안전 위기관리」 코너를 개설하고 직원들에게 전파
 - 필요시 상황진행 단계별로 대언론 행동지침 시달
- 직원 교육
 - 위기대응 홍보팀은 우리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매뉴얼’을 교육
 - 교육 시 ‘국정홍보업무의 강화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정보제공원칙 등 설명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계획안 수립
 -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위기 단계별 커뮤니케이션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

3.3.4 위기단계별 커뮤니케이션 계획안

1] 일상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계획

- 사전 준비 : 수산물 관련 위기대응 홍보 계획의 보완 및 점검
- 위험 모니터링 : 외신보도 및 관련 학회자료 모니터링
- 정보제공 방안: 위기발생시 부처 홈페이지, 국정브리핑, Daum 또는 Naver 등 포털사이트에 위기상황을 제공할 수 있는 『위기 코너』 등을 개설할 수 있는 연계 방안 수립

2] 사고 발생 접수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비상회의 소집 및 대응전략 수립
- 사고 설명자료 준비
- 대변인 선정 및 긴급기자회견(브리핑) 준비
- 언론인 개별 취재 본격화 대비

3] 언론 노출

-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 설치
- 긴급기자회견 통해 사고경위 등 설명
- 위기초기 경과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식입장·대책 담은 보도자료 배포
- 피해발생시 대책 방안 구상 및 발표 준비
- 대언론 발표 창구는 대변인으로 일원화
- 대변인 훈련 및 브리핑 리허설
- 농림수산식품부지식관리시스템 게시판에 「수산물 위생·안전 위기관리」 코너 개설해 전직원 언론대응 매뉴얼 등 공유

4 전 개

- 사건 당일 오후 즉각 언론브리핑 실시
- 매일 오전·오후 2차례 정례브리핑 실시 및 공지
-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기사 아이템 발굴

5 악 화

- 정부대처에 대한 비난여론 확산을 무마할 대책 발표
- 수산물 위생·안전 세부전략 수립 및 발표(브리핑)
- 필요시 정부 관계기관 등과 공동대응체계 강화(브리핑)

6 해 결

- 수산물 위생·안전사고 확산 방지 성공(보도자료)
- 사고종료 보고서 발표(브리핑)
- 어민 및 업체 영향조사결과(브리핑)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해체, 정상업무 복귀

7 종결 후 활동

- 기자간담회 등 통해 취재기자들에게 인사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보완
- 직원대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교육실시
- 대외이미지 회복프로그램 준비 및 실행

부

부

[첨부 1]

1. 관계기관 연락처

□ 정부기관

기 관 명	연 락 처	비 고
대통령비서실(농어촌비서관실)	02-770-7663	
국무총리실		
- 농수산국토정책관실	02-2100-2350	
(농수산정책과)	02-2100-2346	
- 총괄정책실	02-2100-2415	
(사회위험정책과)	02-2100-2209	
농림수산식품부		
- 표시검역과	02-500-2123	
- 양식산업과	02-500-2369	
- 자원환경과	02-500-2391	
- 수산정책과	02-500-2314	
- 축산경영과	02-500-2070	
수의과학검역원(동물약품관리과)	031-467-4318	
(질병진단센터)	031-467-1843	
보건복지가족부(식품정책과)	02-2023-7788	
보건복지가족부(질병정책과)	02-2023-7550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42	
- 식품관리과	02-380-1635	
- 수입식품과	02-380-1733	
- 식품기준과	02-380-1627	
- 건강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6	
- 첨가물기준과	02-380-1695	
- 위해예방정책과	02-380-1396	
- 위해정보과	02-380-1382	
- 검사제도과	02-380-1481	
- 임상제도과	02-380-1587	
질병관리본부(전염병관리과)	02-380-2640	
환경부(화학물질과)	02-2110-7951	

2. 비브리오패혈증 등 질병 확산시 대응 매뉴얼

1. 상 황

□ 개요

○○년 ○월 ○일 전북 ○○군 소재 ○○횃집에서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섭취한 ○○○외 2명이 피부에 부종과 홍반 및 오한, 발열 등의 전신증상과 설사, 복통을 동반하는 등 비브리오패혈증세로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전원 사망한 사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연이은 환자 발생

□ 피해내용

비브리오패혈증은 전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전염병으로 잘못 인식한 탓과 계속되는 언론의 사고보도 이후에 수산물을 기피하는 등 수산물가격 하락과 기피현상 확산으로 어업인 및 관련업계 경제적 손실 초래

□ 언론보도 내용

○○년 ○월 ○일 전북 ○○군 소재 ○○횃집에서 발생한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사고는 감염된 어패류 섭취 결과 발생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남. 비브리오패혈균에 감염된 어패류를 그대로 생식하거나 피부상처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함. 연이은 사고 발생으로 소비자의 심리불안은 계속됨

2. 조치사항 및 절차

□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p>상황 접수·전파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수산물 검사, 안전성 조사 등 일상적 업무를 통해 수산물 안전문제 관련 정보 탐색 ○ 관련 동향 접수 및 자체수집, 관련기관에 전파 ○ 관련 동향 종합 분석
<p>대응조치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단체별) 대책반 구성 ○ 수산물 안전섭취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 어업인, 횃집요리사, 유통업자 대상 특별교육 추진 ○ 수산물 판매장 소독 및 방역으로 위생관리 철저 ○ 수출·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양식장 오염원 제거 등을 위한 바다청소, 우범항·포구 방역 등 ○ 대 어업인 및 유통종사자 교육, 홍보 강화 ○ 수산물 소비위축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등
<p>복구(수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취급 및 안전섭취요령의 지속적 홍보 ○ 대책추진 평가(피해상황 조사, 개선사항 등) ○ 수산물 생산활동 활성화 방안 강구 ○ 수출 대상국의 동향파악 및 외교교섭 강화 ○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 소비촉진 홍보 - 시식회 개최 등 ○ 출입기자 간담회, 브리핑, 보도자료 수시 배포 ○ 수산관련단체와 연계 광고 게재

□ 조치 내용

가. 상황 접수·전파

- 관련 부처별 질병예방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추진
 - 하절기 비브리오패혈증 등의 사전예방으로 소비자 및 어업인 피해 예방
- 관련 동향 접수 및 자체 수집, 관련기관에 전파
- 각 기관별 대책반 구성 추진
 - 기관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 수산물품질검사원, 시·도, 수협 간 협조체계 구축
- 의료기관을 통하여 미확인된 환자발생 등의 내용이 사전에 언론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에 공문 시달(질병관리본부)
- 비브리오패혈증 등 질병 주의보 발령 및 확진환자 발생으로 언론 브리핑 시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사전 협조체계 구축
- 질병 등 발생보도는 어업인, 횃집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 검증되지 않은 오인성·추측성 보도를 자제토록 협조요청

나. 대응조치 시행

- 대책 추진체계 확립(위기 경보 전파 등)
 - 각 시·도 및 소속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부서별 책임부여 및 상황 대처
 - 발생지역, 환자 및 피해상황 파악
- 질병 등 주의보 발령시 관계 부처간 협조체제 유지
 - 지역 또는 권역별 발령 등
- 언론기관에는 질병 등 의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 후 발표하도록 협조 요청
- 수산물 생산분야 안전관리 강화
 - 바다 청소 및 양식장의 오염원 제거
 - 오염 항포구 방역 실시
 -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 계도
- 대어업인 교육홍보 강화
 - 선상 위생습관 생활화 계도
 - 출항선박에 대한 선내소독 등 선박 위생관리 철저
 - 수산관련 질병 의심시 하선조치 및 보건당국에 신고
 - 어획물 채취시 위생관리요령 교육 실시
- 수산물 유통분야 안전관리 강화
 - 위판장 종사원 및 중도매인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 판매장 소독 및 방역 강화
 - 위판장 및 주변청소 철저 시행

- 어체 및 위판장 세척시 오염수 사용 금지
 - 위판장 접안어선 생활하수 투기 금지
 - 활어취급 음식점 위생관리 점검
 - 항포구 생선회 전문음식점 위생상태 집중관리
 - 내륙지 생선횃집 활어조 해수관리 강화
 - 자체 청소 및 방역실시 점검
 - 수출·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수출수산물 안전관리 철저
 - 영항품목별 수출동향 및 대상국 동향 파악
 - 비오염지역의 원산지 증명 신속발행
- 수출입 수산물 위생검사 철저
- 공장 위생관리 강화
 - 가공원료 산지 확인후 구입토록 지도
 - 원료세척 철저 등 생산 지도
 - 소독철저 및 병원성 세균검사 실시
 - 위생관리 점검 철저 시행
- 수산물 생산금지 지역 어업인 생계 대책 강구
 - 생산금지 지역의 대책반에서 긴급 지원책 강구
 - 생계 곤란자 양곡 지원 등
 - 생활보호대상자 파악 지원
- 수산물 취급 및 안전 섭취요령 등 지속적 홍보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 관계기관 합동(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수협 등) 수산물 시식회 개최

다. 복구(수습)

- 각 시·도별 질병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피해상황 조사, 개선사항 등
- 어업 생산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피해 영향품목별 수출 대상국 동향파악
- 외교교섭(외교통상부) 요청
 - 수입 규제국이 있는 경우 해제 요청
- 수산 관련업계 홍보 및 지도
- 가공업체 위생관리 지도
-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 개최 등 적극 홍보

3.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환자 발생시 대응 매뉴얼

1. 상 황

개요

경북 ○○시 ○구 ○○○ 앞바다에서 자연산 진주담치(홍합) 채취하여 섭취한 ○○○씨는 구토, 호흡곤란 등의 식중독 발생. 이 해역에서 채취된 진주담치의 판매가 금지됨

피해내용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 저온뿐 아니라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 생선회, 매운탕 등의 기타 수산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나 수산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수산물가격 하락과 관련 산업 피해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음

언론보도 내용

○○시·도에서는 ○월 ○일 ○○시 일원 패류양식장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패류독소가 ○○시 ○구 ○○○동에서도 $158\mu\text{g}/100\text{g}$ 로 기준치 $80\mu\text{g}/100\text{g}$ 를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 해역에 서식하는 패류의 채취는 물론 가공, 유통, 판매, 취식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함.

2. 조치사항 및 절차

□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p>상황 접수·전파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신속히 파악, 종합적·체계적 대응으로 국민 건강 보호 및 어업피해 최소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류독소 대책반 구성(중앙대책반, 지역별 합동 대책반) ○ 관련 동향 접수 및 자체수집, 관련기관에 전파 ○ 관련 동향 종합 분석
<p>대응조치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반 구성·운영 및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신속 대응 ○ 소속기관, 단체 및 어업인간 긴밀한 피해예방체제 구축 ○ 패류독소발생 빈발해역에 대한 독소조사 강화 ○ 양식장 오염원 제거 등을 위한 바다청소, 우범항·포구 방역 ○ 수출·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대 어업인 및 유통종사자 교육, 홍보 강화 ○ 수산물 소비위축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등 ○ 어업인 지원대책 추진
<p>복구(수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취급 및 안전섭취요령의 지속적 홍보 ○ 대책추진 평가(피해상황 조사, 개선사항 등) ○ 수산물 생산활동 활성화 방안 강구 ○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 소비촉진 홍보(시식회 개최) 등 ○ 출입기자 간담회, 브리핑, 보도자료 수시 배포 ○ 수산관련단체와 연계 광고 게재

□ 조치 내용

가. 상황접수·전파

- 각종 수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상시수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일상적인 업무와 연계하여 관련 상황 접수
- 접수된 피해정보를 분석하여 비상대책본부 대응체제 구성

나. 대응조치 시행

1) 단계별 패류독소 조사 실시

- 생산단계 : 국립수산물과학원
 - ※ 굴수협, 피조개수협 및 시·도는 패류독소 조사용 시료채취 협조
 - 수 협 : 굴, 피조개
 - 시·도 : 수산물과학원 요청에 의거 협조
- 저장 및 거래 전 단계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유통단계 : 식품의약품안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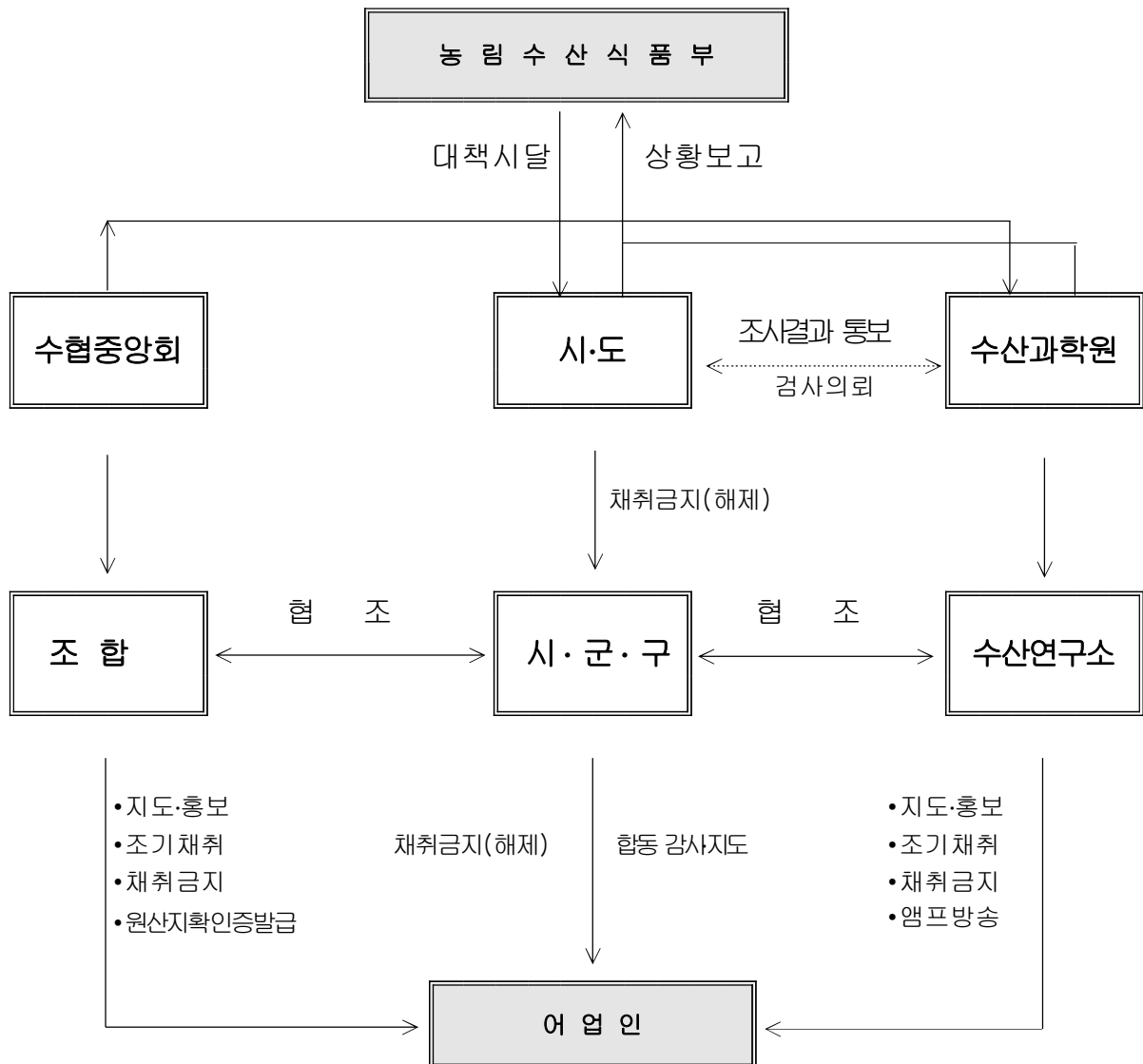
2) 패류독소 발생해역 생산 패류관리

- 어업인 패류채취 금지 및 해제 : 시·도, 시·군
 - ※ 수산물과학원은 패류의 채취금지가 필요한 해역의 범위를 설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 미국, EU 및 일본 등 수출용 패류 위생관리 강화

<패류독소 발생시 행동요령>

단 계 별	조 치 사 항
패독발생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독피해예방대책수립시달 : 시·도, 수산과학원, 수협 ○ 패독피해예방대책회의개최 : 00년 0월 중순 ○ 수산과학원 : 패독조사 월1회
패독발생초기 (40 μ g미만/100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검역과 : 조기채취·판매 독려 시달, 사전홍보 ○ 수산과학원 : 패독조사 월1회 ⇒ 주1회 ○ 지역대책반 : 조기채취·판매토록 지도 및 홍보 (지자체, 수협)
패독발생중기 (40 ~ 79 μ g/100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검역과 : 상황파악 및 채취·출하 자제 시달 ○ 수산과학원 : 패독조사 주1회 ○ 지역대책반 : 어업인 채취 자제 유도(수협, 어촌계)
패독기준치초과시 (80 μ g/100g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검역과 : 패류 채취금지 해역 및 시기 결정, 발생상황 홍보(보도자료 배포) ○ 수산과학원 : 패독조사 주2회, 패류 채취금지 해역 범위설정 보고 및 통보 ○ 지역대책반 : 채취 금지해역 감시 강화, 어업인 및 관광객에 대한 홍보(지자체, 수협) ※ 미발생 해역 패류 원산지증명 발급(시·군)
패독기준치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검역과 : 패류 채취금지 해제 시달 및 홍보 - 2주 연속 80μg/100g이하 검출시 ○ 수산과학원 : 패독조사 주1회 ○ 지역대책반 : 채취금지 해제(시·군)

<패류독소 발생 대응 체계도>



3) 패류독소 미발생해역 생산 패류관리

○ 원산지 확인증 발급 : 시·군

- 내수용 : 시·군

- 대일수출용 : 품질검사원(굴, 피조개)

시·군(굴, 피조개 이외의 품목)

※ 대일 수출용 이대패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침에 의함(발급절차, 서식 등)

4) 패류독소 대응방안

□ 법적 허용기준치 이하 검출시($80\mu\text{g}/100\text{g}$ 미만)

- 위기경보 「관심」 단계로 관련 동향 주시
- 해당국에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조치
- $40\mu\text{g}/100\text{g}$ 이하: 조기채취·판매토록 지도(지도독려반 운영)
- $40\mu\text{g}\sim 79\mu\text{g}/100\text{g}$: 어업인 채취 자제 유도(수협, 어촌계)

□ 법적 허용기준치 초과 검출시($80\mu\text{g}/100\text{g}$ 이상)

-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관련 동향 지속 모니터링
-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 및 위기평가회의 소집 요청
- 기준치 초과해역에서의 패류채취 금지 조치
 - ※단, 패류채취 금지해역에 있어서도 기준치 미달이 확인된 패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채취허용
- 채취금지해역에 지도선 및 감시공무원배치(어촌계별 감시 담당자 지정 운영)
- 주요 유통시장 및 집하장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 강화
 - 패류독소 검사결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즉시 통보
(유통경로 추적 등 대책 강구)
- 어업인 및 행락객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해역 홍보강화
 - 주말, 공휴일 등 낚시꾼 및 관광객 집중홍보
 - 입간판, 현수막 설치 및 리후렛 제작 배포
- 기준치 초과어장 이외의 어장에서 생산되는 패류에 대한 원산지 확인증 발급

□ 법적 허용기준치 이하로 감소시(80 μ g/100g 미만)

- 2주 연속 조사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시 패류채취 금지조치 해제
- 대국민 홍보 실시(신문, 홈페이지 등)

□ 패류독소의 유통 발견 및 확인과 식중독 환자 발생

- 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로서 즉각 대응조치 시행

<패류독소조사 조사지점도>



○ 정기조사해역: 패류독소 빈발해역 54개 지점

- 경남: 자란만, 사랑도, 미륵도, 한산 거제도, 진해만, 남해, 창선, 남해 강진만
- 전남: 가막만, 나로도
- 충남: 서천 비인만

○ 확대조사해역: 패류독소 관리가 필요한 해역(34개소)

- 충남: 태안, 보령, 서산, 당진
- 전북: 고창(줄포만), 부안(새만금)
- 전남: 목포(영산강 하구), 광양(섬진강 하구)
- 경남: 거제도 동부연안
- 부산: 명지, 가덕도 놀차, 다대포, 감천, 태종대, 용호동, 송정, 기장군 일광
- 울산: 서생면, 주전동, 산하동(정자)
- 경북: 포항, 영덕
- 강원: 강릉(주문진)

○ 대상품종: 이매패류(진주담치, 굴, 피조개, 바지락 등)

○ 조사빈도

- 정기조사해역: 평시 월 1회(3~6월 2주 1회), 출현시 주 회, 기준초과시 주 회
- 확대조사해역: 평시 월 1회(3~6월 2주 회), 출현시 주 회, 기준초과시 주 회

다. 복구(수습)

- 핵심이슈에 대한 대책 추진으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신은 잠재화된 상황
- 위해요인으로 도출된 관리체계상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 대응 조치내용을 종합평가하여 위기관리방안의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보완한 후 해체
- 패류독소 관련 지도 및 홍보 강화
 - 지도·독려반 운영 : 시·도, 수협
 - 채취금지해역 감시강화 : 시·도, 시·군
 - 어업인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강화 : 시·도, 시·군
- 패류독소 피해방지를 위한 연구 강화
 - 패류독소발생 원인규명
 - 패류독소발생 차단 및 피해예방 방안 등
 - 수산과학원 및 각 시·도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중 패류독소 예방대책 회의 시 제출
- 패류독소대책 추진실적 보고

[첨부 4]

4. 위기요인별 조치사항

□비브리오패혈증/ 패류독소

○주관부서 : 양식산업과/ 표시검역과

구분	비브리오패혈증	패류독소
상황 접수·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수산물 검사, 안전성조사 등 관련정보 파악 ○관련 동향 접수 및 자체수집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에 전파 ○관련 동향 종합 정리 분석 및 보고 ○파악된 위기정보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류독소 조사지점 점검 ○패독 피해예방대책 수립 및 시달 ○패류독소 발생상황 파악 ○관련 동향 접수 및 자체수집, 관련기관에 전파 ○조기채취·판매토록 지도 및 홍보 ○파악된 위기정보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전파
대응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소속기관 지역대책반 구성 여부 검토 ○수산물 안전섭취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어업인, 횡집요리사, 유통업자 대상 특별교육 ○수산물 판매장 소득 및 방역 ○수출입 수산물 안전 검사 강화 지시 ○양식장 오염원 제거 등을 위한 대책 강구 ○수산물 소비위축 방지를 위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패류독소 조사 실시 ○발생초기 : 조기채취·판매 독려 시달, 사전홍보 ○발생중기 : 상황파악 및 채취·출하 자제 시달 ○초과검출시 : 패류 채취금지 해역 및 시기결정 발생상황 홍보(보도자료 배포) ○주요 유통시장 및 집하장 패류독소 검사 ○패류독소발생 빈발해역에 대한 독소조사 ○어업인 및 행락객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해역 홍보강화 ○채취금지해역에 지도선 및 감시공무원배치 ○수산물 소비위축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등
복구(수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취급 및 안전섭취요령의 홍보 ○대책추진 평가(피해상황 조사, 개선사항 등) ○수산물 생산 활동 활성화 방안 강구 ○수출 대상국의 관련 동향파악 ○소비촉진 홍보 - 시식회 개최 등 ○출입기자 간담회, 브리핑, 보도자료 수시 배포 (홍보담당관실 협조) ○수산관련단체와 수산물 안전 광고 연계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류 채취금지 해제 시달 및 홍보 ○미발생해역 원산지 확인증 발급 조치 ○대책추진 평가(피해상황 조사, 개선사항 등)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소비촉진 홍보(시식회 개최) 등 ○출입기자 간담회, 브리핑, 보도자료 수시 배포 ○수산관련단체와 연계 광고 게재

[첨부 5]

5. 초기 상황보고 서식(내부보고용)

○○○ 관련 보고

— < 사고 개요 > —

◦ '00.00.00일 00소재 00사고 원인, 피해상황 등을 간략히 기재

1. 00년 00월 00일 현재 추진실적

◦ 조치(복구) 사항 등을 기재

※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2.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 회의 개최시 결과보고서를 첨부

3. 향후계획

◦ 복구 완료 시 까지의 추진계획을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구분 기재

수신부서명	
-------	--

붙임 : 참고자료(사고주변 지도) 등

[첨부 6]

6. 위기평가회의 보고서

위 기 명				
위기 발생 일시			위기 평가 일시	
위기평가위원회 구성원				
위기 평가 결과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통 보 기 관				
1. 관련상황/정보				
2. 분석/판단				
3. 조치 사항				
작성자	부서 :	성명 :	(인) (전화)	

[첨부 8]

8. 상황 보고서(지자체용)

- 수신 : 농림수산식품부 ○○○○과
- 발신 : 도 시(군) (부서명)
- 일시 : 년 월 일 시
- 담당자 : 직위 성명
- 연락처 : Tel , Fax
- 상황

구분	내용	비고
사 건 명		
발생 및 진행상황		
조치내용		
관련동향		
건의사항 기 타		

9 농림수산식품부 위기관리 언론대응 행동지침

1 모든 관련 사실의 수집

- 가.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서 사태의 원인, 현재 진행상황, 향후 전망, 피해 규모와 정부대책에 관한 사실 파악
- 나. 특히, 사고발생시 사고가 언제, 어떻게, 왜 발생했는가의 사실과 양식장 피해 지역, 피해규모, 방재 진행현황과 향후 대책, 인명 피해자 여부, 미구출자 여부, 사상자 명단 등은 필히 파악

2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보도시점 결정

- 가. 업무관련 유관 부서뿐만 아니라 언론홍보관련 사전협의제도, 국무총리실과의 협의를 통해 보도시점을 결정
- 나. 중요사항은 사전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책 발표 전 7일까지 대변인실을 통해 국무총리실에 제출

3 단일화된 창구를 통한 정보 배포

- 가. 위기사 상호 모순되거나 불필요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불완전한 정보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관리 대변인” 등 단일화된 채널을 통한 정보의 배포
- 나. 위기사 홍보담당관이 위기관리 대변인으로서 우리부의 공식 입장은 대변인을 통해서만 언론에 노출되도록 주의

4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및 나쁜 뉴스라도 정직한 제공

- 가. 주요 상황의 변화시 언론기관 및 관련기관에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유언비어와 추측보도 방지
- 나. 정보은폐에 의한 공신력 실추의 방지를 위해 가장 나쁜 뉴스라도 대변인 통하여 정직하게 전달
- 다. 언론사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논평을 거부할 경우 납득할 수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 불식

5 사건에 대한 기록 유지

- 가. 사건 종료후 법적 대응, 후속보도,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계획의 수정을 위해서 사진, 서류, 비디오테이프 등을 이용한 기록의 유지

10.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매뉴얼

1 보도자료 작성시 고려사항

가. 일반 개요

- 언론 홍보는 적극적·조직적·선행적·예방적 홍보활동인 미디어 퍼블리시티(Media Publicity)와 사후 대응적인 미디어 서비스(Media Service)로 구분
- 미디어 퍼블리시티 활동은 보도자료 제공, 인터뷰, 기고문, 기자 간담회 및 기자회견, 국내외 현장 취재 지원, 공동 기획 특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그 중 보도자료 제공은 가장 기본적인 홍보활동임
- 보도자료 제공은 정확한 정보의 시의적절한 제공이 가장 중요

나. 보도자료 배포

- 조간용일 경우 전일 09:00 이전 배포
 - 조간용은 기자들이 데스크에 보고하는 시간이 대략 09:00~09:30분경이므로 가급적 09:00 이전에 배포
 - 오후에 보도자료 배포는 피하되, 불가피하게 오후에 배포해야 할 경우 기자들이 오후 메모를 올리는 시간(13:30~14:00)을 감안하여 14:00 이전에 배포
- 석간용일 경우 전일 17:00경 배포
 - 국무회의 안건은 주로 석간용으로 배포
- 엠바고가 지켜져야 할 중요 자료는 조간과 석간신문을 구분해서 배포
 - 석간신문이 엠바고를 짚을 경우, 다음날 조간신문의 기사가치가 없

- 어지므로 석간신문에는 판 마감시간인 11:00 이후에 자료 배포
-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 시 문자메시지 통지

2 보도 결과에 대한 언론사 문의시 대응요령

가. 타 부처의 보도자료 등에 의하여 기자들의 확인전화가 올 경우

- 보통 조간신문의 판마감 시각이 17:00이므로 우리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16:30까지 해명자료나 보충 설명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
- 배포 후 신속하게 문자메시지 통보 및 확인전화

나. 우리부 출입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경우

- 오보를 낸 해당 언론사에 담당부서에서 공문(국장명의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요청
- 공문 발송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해당부서 대응, 대변인실 지원)
- 해명자료 배포범위는 담당 경제·사회 데스크 및 우리부 출입기자

다. 우리부 출입이 아닌 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경우

- 오보를 낸 해당 언론사에 담당부서에서 공문(국장명의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요청
- 공문 발송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해당부서 대응, 대변인실)
- 해명자료 배포범위는 기사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배포
- 구분이 모호할 경우 언론사 편집국장 및 보도본부장, 우리부 출입자에게 해명자료 배포

- 담당기자 이메일은 최근 것이며 신문을 통해 직접 확인했는가?
- 이메일 송부시 자료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는가?
- 쉬우면서도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군더더기는 제거했는가?
- 작성된 자료를 소리내서 읽어보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 숫자나 도표, 맞춤법 등 잘못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타인에게 최종 교정을 보았는가?
- 이메일 송부시 특히 '제목'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 기자들이 이 보도자료를 꼭 읽어야 하는 이유 혹은 개연성이 있는가?
- 새로운 시각으로 재미있거나 흥미롭게 다시 만들 수는 없는가?
-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 스스로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첨부 파일을 지양하고 문서로 작성된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이메일 본문에 넣었는가?
- 파일 첨부시 바이러스 검사는 했는가?
- 사진 이미지는 신문과 잡지 등 매체 성격에 따라 적절한 용량으로 했는가?
- 사진 송부시 컬러의 경우 '흑백 사진'의 이미지도 미리 확인했는가?
- 사진은 부분 확대 이미지와 전체 이미지의 두 종류를 준비했는가?

1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Checklist

Communication Risks Analysis Work Sheet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분석표

① 일 자	
② 정 책 명	
③ 담 당 부 서	
④ 정 책 목 표	
⑤ 추 진 기 간	
⑥ 정책 주요내용	
⑦ 쟁 점 사 항	

단 계	타깃 오디언스	이슈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최악의 시나리오
사고진행				
언론보도				
대국민여론 조사결과				
정부대책 발표 및 집행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				

12. 기자회견 사전점검표

1. 대변인은 회견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선정한다.
2. 보도진에게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3. 참석을 통보한 기자, 편집자 등 언론인들의 명단을 준비한다.
4. 기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배경 자료를 준비해 둔다.
5.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동석시킨다.
6. 직원중 누군가가 기자회견의 물리적 서비스를 담당한다.
7. 의자, 탁자 및 발언대의 수는 충분한가?
8. 마이크나 기타 비디오, 오디오 장비가 필요한가 등 홍보요원들에게 회견 주제, 발언자 및 회견일정을 브리핑 해 둔다.
9. 인사말을 준비하고 이를 가장 중요한 발표자와 함께 검토한다.
10. 예상질의, 답변을 발표자들과 검토한다.
11. 행사전에 모든 음향기기와 기타 장비를 점검한다.
12. 회견장에 방명록을 비치하여 참석자의 이름과 소속을 파악한다.
13.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새로운 정보와 유인물 등 배경자료를 회견장에 가져다 놓는다.
14. 보도진을 회견장으로 안내한다.
15. 직원을 지정하여 개회사를 하도록 하고 회견의 기본규칙을 설명한다.
16. 질문과 대답을 주의깊게 모니터한다. 회견이 끝나기 전에 해명할 부분은 해명한다.
17. 회견을 녹음해 두고 발언내용은 조속히 기록해 둔다.
18. 직원들에게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고 회견장이 산만하지 않도록 관계없는 직원들의 참석을 통제한다.

13. 언론발표 시 요령과 원칙

- 발표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기자에게도 말하지 마라
- 필요하면 시간을 끌어라. 사실 확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기자와 이야기를 시작하지 말라. 대답을 즉시 할 수 없을 경우 기자의 이름을 물은 뒤 헤드라인 내에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라. “지금은 모릅니다.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그러므로 절대 추측하여 말하지 마라.
- 발표문의 헤드라인은 하나만 써라. 그리고 이 헤드라인에 따라 일관성 있고 분명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라.
- 어떤 회견이든 사전에 준비하라. 이는 기자와 조직체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 예상답변을 준비하고 연습하라.
- 인터뷰 직전에 변화된 사항이 없나 마지막으로 점검하라.
- 추측을 하게 만들지 마라. 대변인이 공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자들은 타인의 추측을 소스로 삼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공식적으로 준비된 발표문을 낭독하라.
- 비공식적 발언을 삼가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또는 위기관리 담당

자와 사전에 상세히 협의하지 않은 내용은 절대로 비공식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복잡하고 문제성이 다분하므로 피해야 한다.

- 기술적 자료는 항상 서면자료를 이용하라.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기자들을 상대할 때는 시간을 들여서 기자들이 요점을 파악할 때까지 하나하나 짚어 주어야 한다.
- 어떤 기자가 제시한 논점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코멘트 할 수 없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그냥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만 하면 안된다. 왜 말을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를 낭독할 경우 낭독한 내용에 충실해야 하며 가능하면 발표자 자신의 해석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정부가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공포(panic) 상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 보도기관으로부터 전화로 문의 받은 사항은 가능하면 24시간 가동체제로 답해야 한다.
- 학자, 정부관계자, 유명인사, 기타 여론 선도자 등 호의적인 제3자의 견해 및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14. 언론 보도 문안(예시)

(예시1) 하절기 수산물 위생·안전 대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0000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소비위축 및 가격하락 등 관련업계 피해예방을 위하여 「하절기 수산물 안전관리대책」을 추진 시행키로 하였다.

먼저 제 1단계는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병원균 출현이 예상되는 시기로 수산질병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 및 수출·입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물 배포 및 수입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수산물 가공업체의 위생지도를 실시키로 하였다.

제2단계는 지역적으로 병원균 출현 및 수산질병주의보 발령 등으로 일부지역에서 어패류의 채취와 반출이 제한되는 시기로 위판장 종사원 및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하절기 어획물 취급 및 위생관리요령 등의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수출·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수입수산물은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어업인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예시2) 하계 수산물 안전관리대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콜레라 등 질병을 예방하고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계 수산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각 기관 및 단체에 보내 이를 적극 추진토록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중점 추진할 질병예방 체계구축, 위생관리 지도와 홍보, 질병 발생시 어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월별 및 질병발생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제1단계(예방단계)는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병원균 출현이 예상되는 시기(6월)로서 각 기관은 대책반을 구성하고, 홍보물 제작·배포 및 어업인 등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2단계(발생단계)는 병원균 및 수산질병 주의보 발령 등으로 일부지역에서 어패류 채취와 반출이 제한되는 시기(6~7월)로서 각 기관은 대책반을 본격 가동해 양식장 오염원 제거, 수출입 수산물 안전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고 있다.

제3단계(확산단계)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병원균이 검출되고 환자 발생 지역이 확산·전파되는 시기(7~10월)로서 양곡지원 등 어업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수산물 특판 등 소비촉진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마지막 4단계(종료단계)는 수산질병 주의보가 해제되는 시기(10~11월)로서 추진대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수산물 생산활동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어업

인 지원대책 마무리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함께 비브리오 패혈증의 법정 전염병 지정 해제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의 해제를 건의하는 한편, 앞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과 협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예시3) “수산물, 위생적으로 관리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선도가 떨어지는 수산물은 익혀먹을 것과 물을 끓여 먹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시면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언론보도에서 울산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우○○씨(남68세)가 콜레라환자로 확인되고 계속하여 콜레라 환자가 확산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콜레라 발생에 따른 수산물 안전관리대책』 마련하여 각 시·도 및 수협에 시달하였다고 밝히면서 국민들도 수산물은 익혀 먹을 것과 물을 끓여 먹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콜레라를 예방하도록 당부하였다.
- 콜레라 발생 지역에서는 시·도에서 주관하여 수협과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토록 함.
 - 수산물 유통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양식장, 횡집(전문음식점 포함)위·공판장,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취급 및 섭취요령 등에 대

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철저, 판매장별 자율방역단 설치·운영 지도 및 생선횃집 활어조에 대한 해수관리 철저

- 콜레라 비발생지역에 대하여도 각 시·도, 수협 등 기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책반을 구성, 콜레라 발생지역에 준하여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특히, 콜레라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하여 감염되는 수인성 전염병(급성설사질환)이므로 선도가 떨어지는 수산물은 가급적 날 것으로 먹지 말고, 특히 패류는 충분히 익혀서 먹을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하여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과 협의하여 대상국가와 품목을 선정,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4편 축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목 차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251
제2절 법적 근거	251
제3절 적용 범위	252
제4절 위기 형태	254
제5절 위기 경보	255
제6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259
제7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260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271
2.1.1 상황	271
2.1.2 국내축산물 조치사항 및 절차	271
2.1.3 수입축산물 기관별 조치사항	273
2.1.4 반별 임무 및 역할	274
2.1.5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74
제2절 주의	275
2.2.1 상황	275
2.2.2 조치사항 및 절차	275
2.2.3 수입축산물 기관별 조치사항	277
2.2.4 반별 임무 및 역할	278
2.2.5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78
제3절 경계	279
2.3.1 상황	279
2.3.2 조치사항 및 절차	279

2.3.3 수입축산물 기관별 조치사항	281
2.3.4 반별 임무 및 역할	282
2.3.5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83
제4절 심각	284
2.4.1 상황	284
2.4.2 조치사항 및 절차	284
2.4.3 수입축산물 기관별 조치사항	286
2.4.4 반별 임무 및 역할	287
2.4.5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88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전국적 규모의 위해 축산물 유통사고 발생	291
3.1.1 상황	291
3.1.2 조치사항 및 절차	291
3.1.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294
제2절 전국적 규모의 위해 수입축산물 유통사고 발생	296
3.2.1 상황	296
3.2.2 조치사항 및 절차	296
3.2.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300

부 록

1. 서식	305
2. 사례	317
3. 관련기관	323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 축산물로 인한 대규모 식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고 위기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
- 주관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여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과의 연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규정
- 기관별 활동사항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

제2절 법적 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시의 조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의2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
 - 영업자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림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6조 (압류·폐기 또는 회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 압류·폐기 또는 회수를 실시하거나 영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함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의2 (위해평가)
 - 국내외에서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에 대하여 위해요소를 평가하여 위해여부를 결정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 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축산물의 수·출입 등 이동을 통제함

○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긴급대응)

- 정부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제3절 적용 범위

가. 적용 대상

○ 수입축산물

- 해외 정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수출국에서 유해물질 등에 오염된 축산물이 유입되었거나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입축산물 검역 및 검사 과정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
- 그 밖에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인정하는 수입축산물

○ 국내축산물

- 국내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어 위해사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거 등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축산물에서 검출되는 상황 발생
- 그 밖에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축산물

나. 조치 범위

- 압류·폐기(식용 외의 용도로 전환 사용을 포함) 또는 회수
- 수입축산물의 경우, 출고보류, (잠정)수입검사중단, (잠정)수입중단 또는 수입금지
- 위해성이 확인된 수입축산물의 경우, 폐기(식용 외의 용도로 전환 사용을 포함)·반송 또는 제3국 반출
- 유통·판매 등의 금지, 수거검사
- 생산·유통 관련 영업소의 폐쇄 등 행정처분
- 긴급위생조치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 유관 기관(단체·협회·업소 등) 협조 요청 등의 일련의 행정 행위
- 그 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국립수의과학검역장) 또는 시·도(시·군·구)의 행정 조치사항 등

최근 10년간 주요 축산물 안전사고

- '97년 미국산 수입쇠고기 병원성대장균 O157:H7오염사건
- '98년 호주산 수입쇠고기 엔도설판(농약) 오염사건
- '99년 벨기에산 수입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사건
- '01년 일본 BSE발생, '03년 미국 및 캐나다 BSE 발생
- '05년 뉴질랜드산 수입쇠고기 엔도설판(농약) 오염사건
- '07년 국내산 조제분유 사카자키균 검출, 국내산 오골계육 엔로플로사신 검출
- '08년 칠레산 수입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 중국내 멜라민 파동
- '09년 중국산 수입식육가공품 클렌부테롤 및 클로람페니콜 검출 등

제4절 위기 형태

가. 국내·외 위해발생 정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경우

-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 등에서 안전성 논란 제기 및 검출보도
- 보도 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의 위해사고 발생정보를 입수한 경우
- 유사 식품사고 등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폭된 경우

나.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축산물이나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 중인 축산물의 검역·검사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 농약·중금속·항생물질·호르몬제 등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검출
- 보존료·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
- 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혼입되었거나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원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O157:H7)의 검출
- 인체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및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위생동물의 사체 등)의 검출
- 축산물 잔류 방사선량 허용기준치 초과

다. 수입축산물이나 국내축산물의 유해물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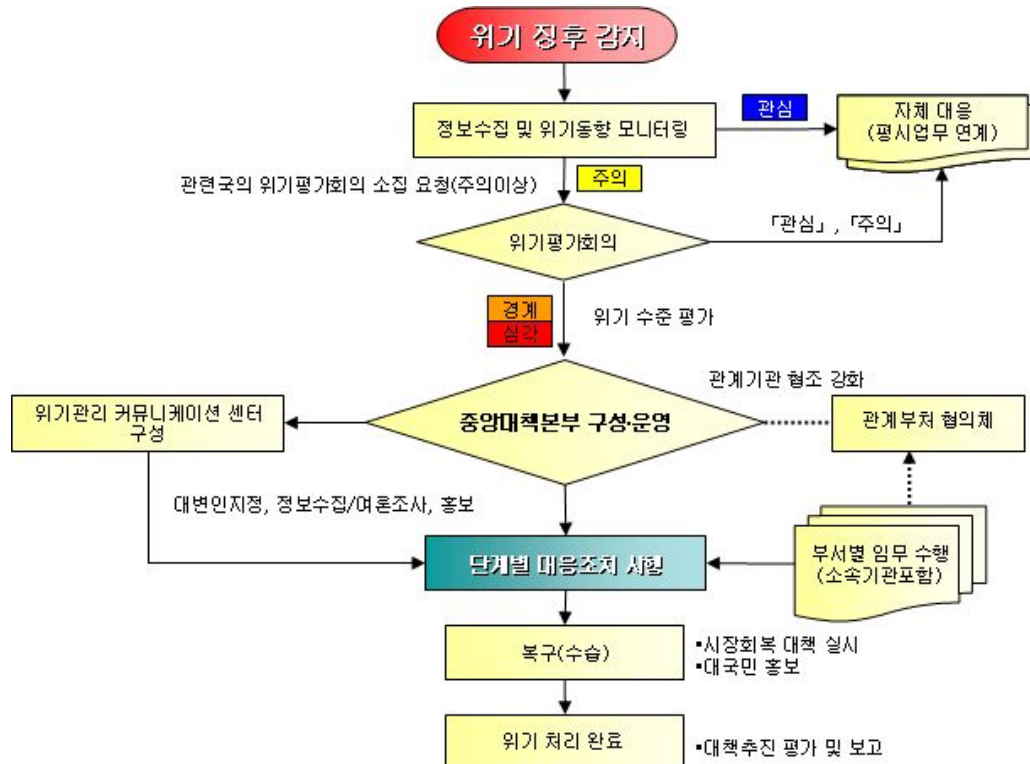
-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농약 등 독성 잔류물질 등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 위해가 발생한 축산물과 생산라인·생산국 등이 동일한 축산물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절 위기 경보

가. 위기 경보 종류

구분	상 황	판단기준
관심 (Blue)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정보를 통해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축산물이 수입 또는 유통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 수입검사 또는 유통 중인 축산물의 수거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 미신고 또는 무허가 장소에서 판매·제조한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었을 경우 •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 및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주의 (Yellow)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검사 또는 유통 중인 축산물의 수거검사에서 유해물질이 반복 또는 다량 검출되고, 동일 품목의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 언론·시민단체 등이 유해물질 오염 축산물의 광범위한 유통사실을 발표한 경우 • 집단급식 식중독 발생 등 위해 축산물의 지역 단위 대량 유통이 확인된 경우
경계 (Orange)	위기가 확산되는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지역의 수거 축산물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위해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축산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 및 수 건의 사망사고 발생
심각 (Red)	심각한 위기로 확산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으로 다품목 및 대량의 축산물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고 위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축산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여러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나. 위기경보 발령과정



○ 위기경보의 발령수위는 위해의 특성 및 정도를 감안하여 정하며, 식품사고에 따른 국민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

- 위기 경보는 위기 상태에 따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분류
- 위기가 발생한 관할구역 시·도 및 시·군·구 축산물 위생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며, 위기 경보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정하여 발령함
- 위기 발생 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에서 발생되거나, 확산속도가 관할구역을 넘어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될 수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보를 분석·평가를 실시한 후 위기 경보를 조정하여 발령함
- 시·도 및 시·군·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우선 조치 후 즉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함

- 경보는 상황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여 발령할 수 있음
- 위기 발전 가능성이 낮은 상태는 평상시 상시적인 예방 관리로 대응

(예시) 위해특성을 감안한 경보발령

1) 항생제 오염 : 여러지역의 식육에서 동시에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확산가능성이 있는 경우

- 통상 항생제 잔류량이 미미하여 일시 노출되더라도 인체 영향이 크지 않고,
 - 일부 축산농장에서의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오염사고인 만큼 오염이 만연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며,
 - 식육 생산 도축장에서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유통 통제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 시
- ☞ 특이상황이 없는 한 '주의' 수준을 넘어서기는 힘들

2) 대장균 O157 오염 : 1개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 수명이 사망한 경우

- 오염원이 확인될 때까지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다수 지역으로 오염원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 경우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

다. 위기경보 발령 세부절차

- 위기경보 의사결정
 - 위기경보 발령을 위한 의사결정 자문(위기평가회의)
 - 최종 의사결정(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위기경보 발령 단계
 - 1단계 : 위기 징후 포착 또는 발생 예상 시 위기경보 준비
 - 2단계 : 위기평가회의에 위기경보 발령을 안전으로 상정하여 위험 수준 평가(내부 위기평가회의 개최)
 - 내부위기평가회의 :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관련 시·도 등
 - 3단계 : 위기경보 발령 및 대통령실 · 행정안전부 · 유관기관 등에 발령내용 통보

- (1)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련 시·도 등의 축산물 위생·안전 분야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수집된 제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공유
 - 소속기관은 위기징후목록 작성, 징후 발견보고 및 전파의무
- (2)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안전위생과)은 축산물 위해사고와 관련된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주의」 이상 수준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주관하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그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모색
- (3) 위기수준 평가시 상황의 심각성 및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지속 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정확한 위기수준 평가를 위해 유관기관은 관련 정보를 제공
 - 위기형태에 따른 유해물질 또는 병원성 미생물 검출건수/검출지역/발생상황 등 정보 통보
 - 위기 형태에 따른 식중독균명/식중독발생인원수/발생지/발생상황 등 관련 정보 통보
 - 위기대응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지원 등 관련 정보요청 및 협조
- (3)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 수준에 해당하는 경보를 발령하고, 대통령실(국가위기상황센터),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
- (4) 농림수산식품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위기경보(심각)를 발령할 경우에는 대통령실(국가위기상황센터) 및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경보를 발령
- (5) 위기경보 수준을 조정(심각→경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실(국가위기상황센터) 및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재조정

제6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 요소

가. 위기대응 지침

- 신속·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부내 책임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경계·심각」의 정보발령 시 주관부서는 「중앙대책본부」를 구성·가동

예상 안전문제	주관부서
○ 항생제·농약 등 유해물질의 검출(또는 우려되는 상황) ○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축산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 (또는 우려되는 상황)	안전위생과 (수입의 경우 표시검역과 협조)
○ 축산물에서의 탄저병·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병원체의 검출(또는 우려되는 상황)	(국내) 동물방역과 (수입) 표시검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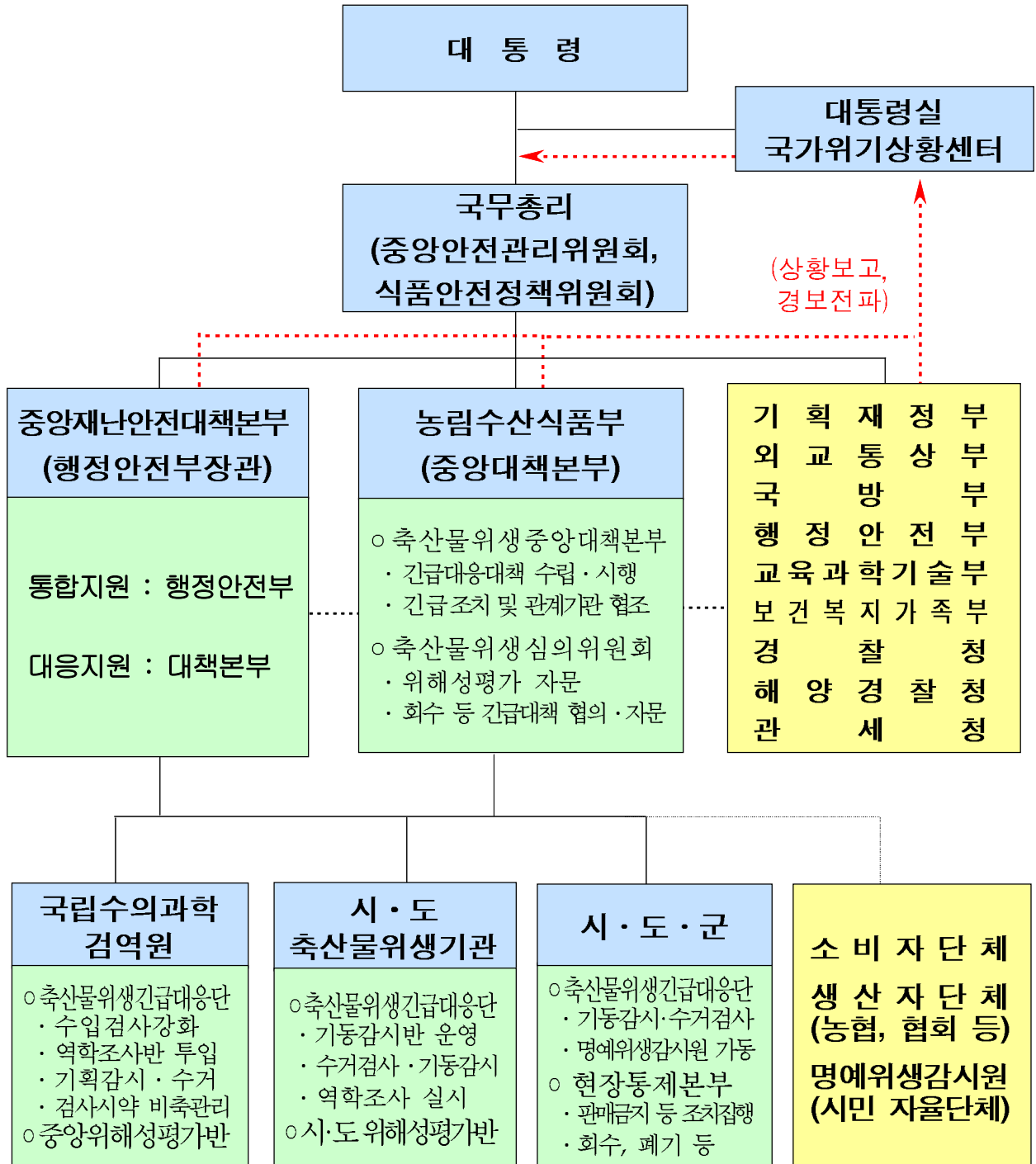
- 주관부서를 주축으로 소속기관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상황을 전파, 대응, 연락 및 홍보를 지원
- 위기평가회의 결과 「관심·주의」 수준에서는 주관부서 중심으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대응하고, 「경계·심각」 수준에서는 「중앙대책본부」를 설치·운영
- 사회적인 민감성 및 유통구조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나. 위기상황 판단 요소

- 위해정보의 신뢰성
- 위해성 평가결과 : 위해의 종류, 특성 및 정도
- 파급속도
- 확산범위
- 위해의 지속성 및 재발 가능성
- 위해사고의 통제·제거 가능성
- 언론·이해관계자들의 동향 및 국민정서

제7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가. 종합체계도



* 범례 : —— : 지시/보고, : 협조/지원

다.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 운영

위기경보 구분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대책본부장	소비안전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	
운영방법	평상시 업무와 연계 처리 주의 상황에서 위기평가회의 운영		중앙대책본부 구성·운영	

나. 위기평가 회의

나-1. 목적

- 축산물 위생·안전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적 혼란 및 관련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위기상황 분석·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전략 모색

나-2. 구성

- 식품산업정책실장(의장), 소비안전정책관, 대변인, 안전위생과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감시조사과장, 관련 시·도 축산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
※ 필요시 농협,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전문적 의견을 청취

나-3. 운영

- 소집 : 축산물 위생·안전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 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소비안전정책관의 요청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결정
- 평가 : 상황의 심각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및 대응전략 마련
- 결과 : 위기수준 평가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등을 수록한 회의록을 작성, 장·차관 보고 및 관리

나-4. 임무

- 위기 수준에 대한 판단 및 평가, 대응전략 모색
- 평가결과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인 경우 중앙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인원, 주관부서 등)으로 결정

라. 중앙대책본부 운영

라-1. 목적 및 운영기간

- 목적 :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공급으로 국민건강보호 및 축산물 손실최소화, 신속한 복구 대응
- 운영기간 : 경계(Orange) 이상 단계부터 상황 종료시 까지
 - 「관심·주의단계」에서는 소비안전정책관을 중심으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즉시 대응
 - 「경계단계」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위기 대응 역할을 수행
 - 「경계단계」부터는 중앙대책본부로 확대·운영
- 장 소 : 농림수산식품부 상황실
 - 중앙대책본부 확대·운영 시 별도 회의실에 대책본부 설치

라-2. 조직구성 및 임무

- 중앙대책본부는 본부장, 부분부장 아래에 총괄반, 유통지도반, 조사반, 위생조치반 및 기술지원반을 두고, 각 반별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상황전개 추이에 따라 조정·운영
- 중앙대책본부에 스텝조직으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구성·운영
- 각 반별 임무는 각종 상황의 신속한 파악·보고, 대외홍보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유지(자료제출 포함)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이행
- 각 반별로 상황을 고려, 반장이 주관하여 내부적으로 세부 운영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라-3. 위기정보별 대책본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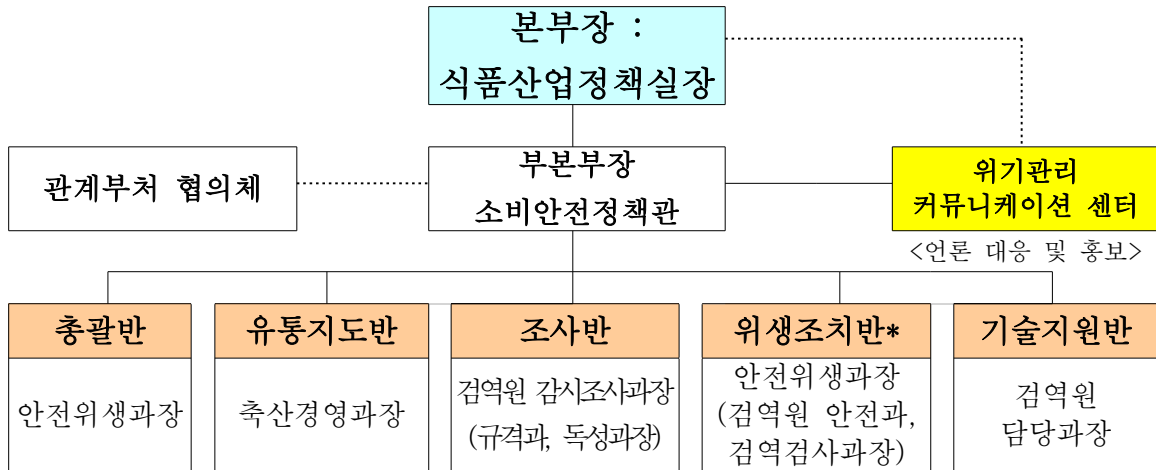
○ 「관심·주의」 단계

- 지휘 : 소비안전정책관
- 관련부서 : 안전위생과 (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 동물방역과, 수입전단계의 사건인 경우 표시검역과)
- 관련부서에서 평상시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함
 - 관심단계 등에서 상황변화가 없고, 관련규정에 의한 대응처리 방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운용함
- 근무요령, 인원구성은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상황 보고, 대응시기 등은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함

○ 「경계·심각」 단계(중앙대책본부)

- 본 부 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부분부장 : 소비안전정책관)
 - ※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관으로 격상시킬 수 있음
- 언론대응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대변인)
- 추진 : 대책본부 5개 반(반장은 과장급으로 구성)
- 주관부서 지정
 - 해당 반별 주관부서 지정은 위기형태, 위기등급, 주요 관련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소속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반별로 주관부서 협조부서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음

<중앙대책본부 구성도>



* 위생조치반장은 사안에 따라 농식품부 동물방역과장 또는 표시검역과장이 담당

○ 반별 임무

- 반별 임무를 숙지하여 위기대응대책단 가동시 상호 협조체계 유지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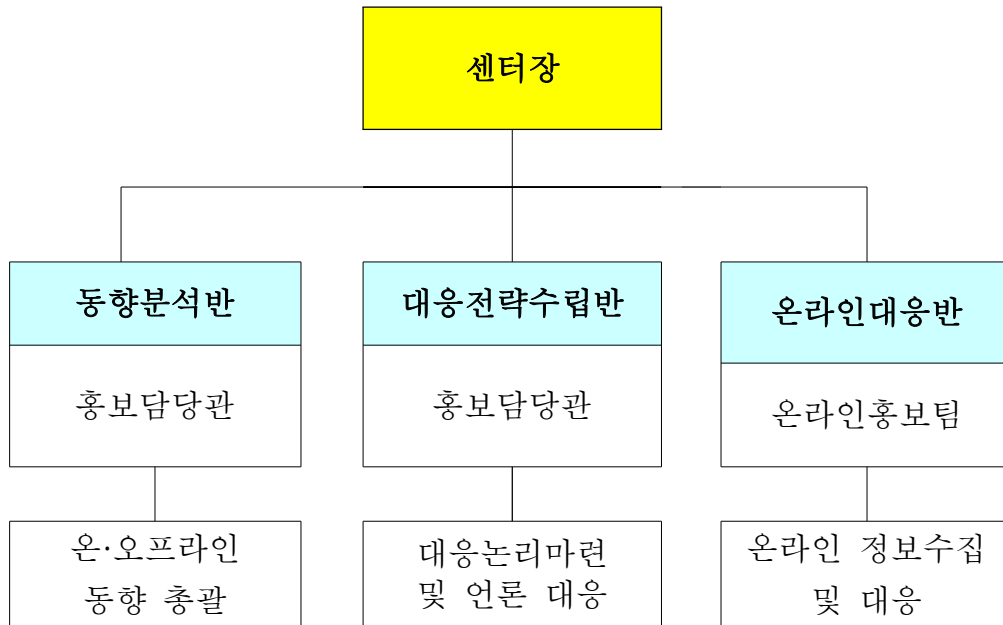
구 분	주 요 임 무	주관부서
본부장	- 축산물 위생·안전 위기대응 총괄	식품산업정책실장
부본부장	- 본부장 보좌 및 업무조정	소비안전정책관
총괄반	- 일일상황 및 대책 종합 - 소속기관,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 위해분석 종합 및 관리대책 강구	안전위생과
유통지도반	- 축산물 유통실태 파악 및 지도 - 축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	축산경영과
조사반	- 오염원인 및 회수대상 축산물 유통경로 추적조사 - 생산단계,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	검역원 감시조사과 (규격과, 독성과)
위생조치반	- 오염축산물의 관리(폐기, 출하금지 등) - 오염(우려) 축산물의 회수 - 검역검사 강화 및 대외 연락체계 가동	안전위생과 (검역원 안전과, 검역검사과)
기술지원반	- 유해물질 또는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등 기술지원	검역원 독성화학과 등

※ 반별 상호 협조 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체계 확보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구성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대변인,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 위기대응 홍보반으로 구성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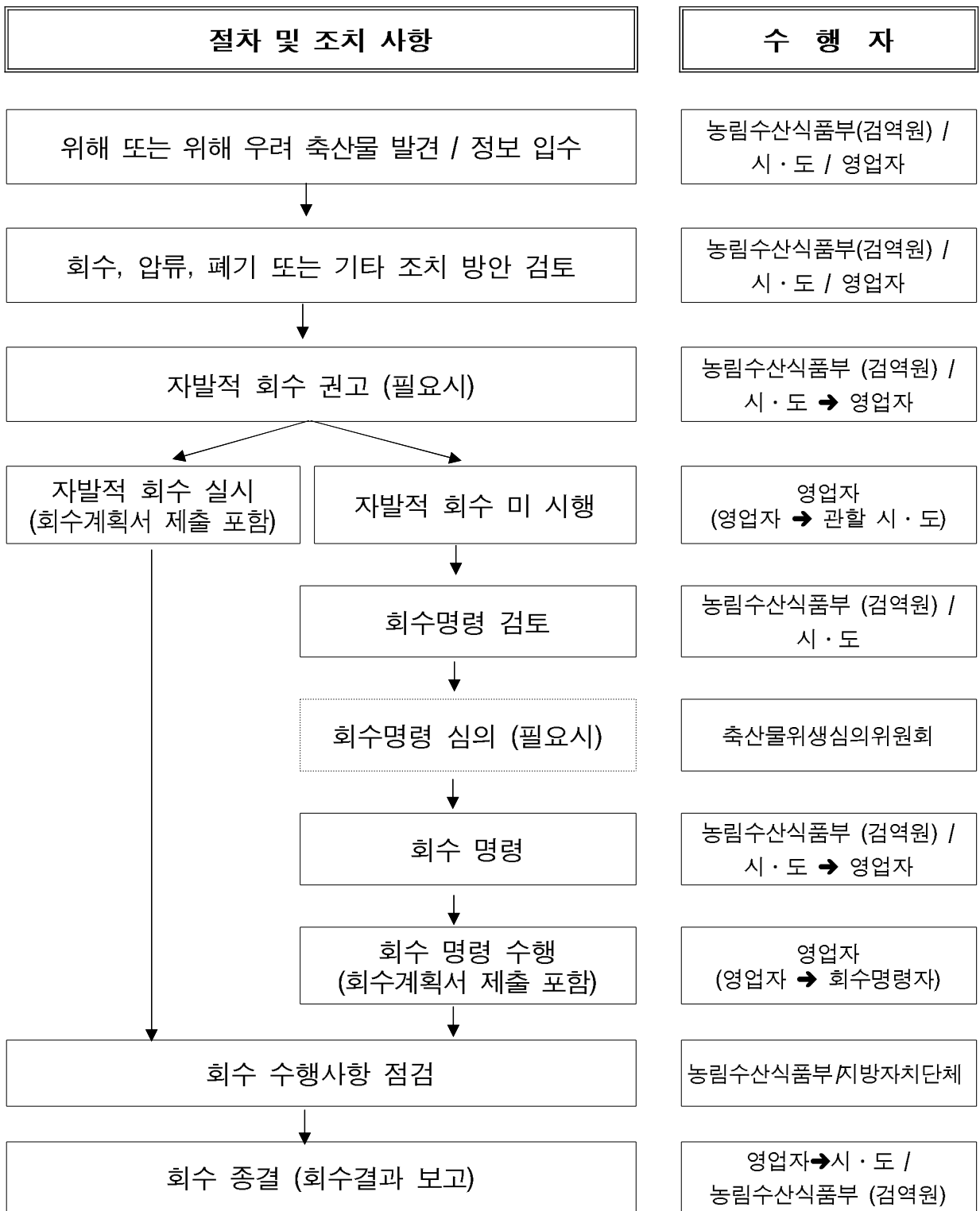
- 주요 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비 고
센터장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반 총괄 - 언론대응 및 홍보, 대책발표	대변인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반	-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 농식품부 대책발표나 조치에 대한 여론조사	홍보담당관
위기대응 홍보반	- 대언론 신속대응 커뮤니케이션 수행	온라인홍보팀장

마. 기관별 역할

구 분	업 무 내 용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 업무총괄 ○ 위기경보 발령 및 위기대응 조치지시 ○ 검역원 및 지자체 위기경보 수준 조절 ○ 국회·언론(보도자료 배포 포함)·시민단체 대응 ○ 시·도(시·군·구) 위기대응 지도 ○ 관련 부처간 업무협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 업무 자문(기술지도) ○ 시·도(시·군·구) 위기대응 지도 ○ 위기경보 해제 및 조치결과 보고(농식품부) ○ 위해정보 시·도 통보 ○ 위해성평가 실시 ○ 검역검사 등 수출입 통제
시 · 도 ·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관리 업무 총괄(관할구역) ○ 관할구역 영업장 관리감독 ○ 위해사고 발생시 관할지역 대책반 운영 ○ 시·군·구 위기 대응 지도 ○ 조치결과 보고(농식품부)
시 · 군 ·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구역 영업장 관리감독 ○ 위기대응 조치 ○ 조치결과 보고(시·도) ○ 인근 시·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참고 : 위해 축산물 회수의 방법 및 절차



- ※ 영업자는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축산물 발견/정보입수시 관계기관에 즉시 알려야 함
- ※ 영업자는 관계기관의 회수 권고 없이도 자발적으로 회수를 실시할 수 있음
- ※ 회수명령은 반드시 자발적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 상기 회수방법 및 절차는 일반적인 모델로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유연하고 선택적으로 활용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2.1.1 상황

- 국내·외 정보를 통해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축산물이 수입 또는 유통될 가능성이 확인됨
- 수입검사 또는 유통 중인 축산물의 수거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
- 미신고 또는 무허가 장소에서 판매·제조한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됨
-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 및 신고가 접수됨

2.1.2 국내 축산물 조치사항 및 절차

2.1.2.1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부서
① 정보확인	제보자 및 정보출처 신뢰성 확인	정보입수부서
② 정보전파	상위부서·기관으로 상황보고	정보입수부서
③ 대응지시	상황보고에 대한 대응여부 결정	농식품부
④ 조치실시	수거검사 등 위해정보 추가확인 실시	검역원·시도

2.1.2.2 조치 내용

① 정보확인

- 유관기관, 대중매체, 인터넷, 동종업계를 통한 정보 진위여부 및 현황 파악
- 필요시 해당업소 출장 확인조사 실시
- 업체명, 제품명, 유통현황, 위해성 등 파악

※ 긴급 상황의 경우 농식품부 대응지시 이전에도 각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고보류 등 긴급조치 후 상황 보고

② 정보전파

- 정보 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상황보고 후 관련부서에 상황전파
 - 농식품부(담당팀) → 장관 우선보고 → 상황전파(검역원, 시·도, 식약청 등)
 - 검역원 사무소·지원 → 본원(감시조사과) → 농식품부 → 상황전파(시·도)
 - 시·도(담당과) → 농림수산식품부(담당팀) → 상황전파(검역원, 시군구)
-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보고범위 및 전파범위 조정
- 발생상황이 긴급위생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상황보고

③ 대응지시

- 농식품부
 - 상황보고 검토 후 위해성 판단에 따라 시·도 및 검역원에 대응방향 지시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전담부서 지정
- 위기 발전 가능성이 낮은 상태는 평상시 상시적인 예방 관리로 대응

④ 조치실시

- 위해 정보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
 - 해당제품 수거검사 및 위해정보에 대한 검증 실시
- 해당업체 및 관련업체를 점검하여 위해여부 확인
- 긴급위생조치 상황으로 판단될 것을 대비하여 긴급위생 조치 준비
 - 긴급위생조치 실시 인력 편성 및 대기
 - 유통현황 파악 및 해당 정보 지속수집

2.1.3 수입축산물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긴급조치사항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접수 ◆ 수입검역 잠정중단(수입신고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제품 전체 ⇒ 다이옥신 등과 같이 역학조사·원인규명이 복잡하여 상대국 위해정보 입수에 시일이 소요되는 품목 ○ 해당작업장산 ⇒ 동물약품·농약·병원성미생물 등 위해발생요인이 단순하여 가공장(생산업체)을 통해 위해원인 파악이 빠른(용이한) 품목 ◆ 검역시행장 보관물량 출고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검역 잠정중단 대상품목에 동일한 조치 ◆ 긴급위생조치 상황반 편성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접수 및 농식품부 우선보고 ◆ 검역·검사 강화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원·출장소 공문시달 ◆ 상대국 확인요청 및 해외정보 추가 수집 ◆ 참고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원 관련제품(전체 또는 해당작업장산) 보관물량·출고내 역 및 최근 수입물량 조사 ◆ 검역원 위해평가 자체협의체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 및 긴급조치 범위설정 ◆ 상황일지 작성 ◆ 보도자료 작성 준비
각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검역원 자료작성 협조 ◆ 긴급위생조치 상황반 운영 준비

2.1.4 반별 임무 및 역할

기관	반명	임무 및 역할
농식품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조치 여부 검토 및 위해성 판단 ○ 대응방향 지시 및 관련 기관간 업무조정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대응
검역원	위생조치반 유통지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확인 및 상황보고 ○ 관련업체에 대한 확인·감시 ○ 국내외 관련정보 수집 ○ 수거검사
시·도	-	

2.1.5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기관	부서명	임무 및 역할
농식품부	안전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내용 검토 위해성 판단 ○ 대응방향 지시 및 관련 기관간 업무조정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대응
시·도	축산물위생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확인 및 관련정보 수집 ○ 관련업체에 대한 확인·감시 ○ 수거검사 실시
검역원	감시조사과 검역검사과 위생정보과 축산물규격과	

제2절 주의

2.2.1 상황

- 수입검사 또는 유통 중인 축산물의 수거검사에서 유해물질이 반복 또는 다량 검출되고, 동일 로트의 제품이 유통
-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유해물질 오염 축산물의 광범위한 유통 사실을 발표
- 집단급식 식중독 발생 등 위해 축산물의 지역단위 대량 유통이 확인
- 수출국에서 유해물질 오염사실 확인 및 대규모 리콜 실시 등 사고가 발생하고, 한국으로의 수출이 확인된 상황

2.2.2 국내축산물 조치사항 및 절차

2.2.2.1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부서
① 정보확인	제보자 및 정보출처 신뢰성 확인	정보입수부서
② 우선조치	해당제품 출고·판매 보류조치	관할 행정기관
③ 정보전파	상위부서·기관으로 상황보고	정보입수부서
④ 수거검사	해당제품 수거검사 실시	검역원/시·도
⑤ 대응지시	발생상황에 대한 대응여부 결정	농식품부
⑥ 조치실시	회수 등 대응조치 실시	시도
⑦ 결과보고	회수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시도

2.2.2.2 조치 내용

① 정보확인

- 정보입수 부서에서 업체명, 제품명, 판매량, 유통현황을 조사
- 필요시 제품 수거검사 실시

② 우선조치

- 위해성 확인시 관련규정에 따라 출고보류 등 긴급조치 후 상황 보고

③ 정보전파

- 정보 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상황보고 후 관련부서에 상황전파
 - 농식품부(담당팀) → 장관 우선보고 → 상황전파(검역원, 시·도, 식약청 등)
 - 검역원 사무소·지원 → 본원(감시조사과) → 농식품부 → 상황전파(시·도)
 - 시·도(담당과) → 농림수산식품부(담당팀) → 상황전파(검역원, 시군구)
-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보고범위 및 전파범위 조정

④ 수거검사

- 관할 행정청에서 해당 제품 수거검사 실시
- 수거검사 결과보고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⑤ 대응지시

- 농식품부
 - 수거검사 결과 및 유통현황에 따라 긴급조치 여부 결정
 - 검역원 및 시·도에 대응 수준·방향 지시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전담부서 지정

⑥ 조치실시

- 시·도 상황반 편성운영
- 관할 행정청에서 영업자에게 자발적 회수 권고
- 관련업체 점검 및 회수상황 지도감독
- 해당 정보 지속수집

⑦ 결과보고

- 회수결과 등 처리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2.2.3 수입축산물 관련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긴급조치사항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검역·수입신고 중단(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검역 잠정중단 대상품목과 동일 조치 ◆ 검역시행장 보관량 출고중지(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검역 잠정중단 대상품목에 동일한 조치 ◆ 한국으로의 수출중지 요청(수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제품 전체 또는 해당작업장산 제품 ◆ 각 시·도 유통감시반 편성 지시 ◆ 판매·사용금지 조치(시·도 또는 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도가 중할 경우 자진회수와 병행하여 조치 ○ 자진회수·강제회수가 모두 어려울 경우 일시금지조치로서 채택 ◆ 상대국 검출원인 분석·재발방지대책 요구 ◆ 보도자료 작성 배포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원 위해평가 자체협의체 운영 및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판매 금지범위, 압류·폐기·회수 대상 여부 심의 ○ 선별검사시 시료채취·검사의 방법·기준 및 합격기준 설정 ◆ 유통물량에 대한 자진회수 조치(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의 회수발표가 있거나, 강제회수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 보관·출고물량 등 내역조사(계속) ◆ 유통물량 추적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체명단·수입량 등 ◆ 검사불합격 물량 폐기·반송 준비
각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감시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제품 추적조사 및 봉인조치 등 ◆ 농식품부 조치사항 이행(판매금지, 회수등)

2.2.4 반별 임무 및 역할

기관	반명	임무 및 역할
농식품부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내용 검토 위해성 판단 ○ 대응방향 지시 및 관련 기관간 업무조정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대응 ○ 수출국에 한국으로 수출중지 요청 ○ 수출국에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책 요구
검역원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전파 및 상황보고
	유통지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거검사 및 회수상황 감독 ○ 보관·유통 물량과악
	위생조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중단 및 검역검사 강화 ○ 수입물량등 통계자료 작성 ○ 해외 정보 지속수집
시·도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확인 및 상황보고 ○ 국내외 관련정보 수집
	유통지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업체 점검 ○ 수거검사 및 회수상황 감독

2.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기관	부서명	임무 및 역할
농식품부	안전위생과 표시검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내용 검토 위해성 판단 ○ 해당 제품 검역중단 조치 ○ 대응방향 지시 및 관련 기관간 업무조정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대응
검역원	검역검사과 위생정보과 감시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조치 상황반 운영 ○ 정보확인 및 관련정보 수집 ○ 관련업체에 대한 확인·감시
시·도	축산물위생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거검사 및 회수상황 감독 ○ 회수결과 등 조치결과 보고

제3절 경계

2.3.1 상황

- 여러지역의 수거 축산물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위해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됨
-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축산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 및 수 건의 사망사고 발생

2.3.2 국내 축산물 조치사항 및 절차

2.3.2.1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부서
① 정보확인	유통현황 및 피해현황 조사	정보입수부서
② 우선보고	상황보고	정보입수부서
③ 경보발령	긴급대응 조치 및 대국민 홍보	농식품부
④ 추가조사	오염원인 및 유통현황 추가조사	유관기관 합동
⑤ 대응지시	대책반 운영 등 세부계획 수립	농식품부
⑥ 조치실시	압류·폐기·회수 등 대응조치 실시	각 부서
⑦ 결과보고	회수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각 부서

2.3.2.2 조치 내용

① 정보확인

- 해당 축산물 생산량 및 판매처 등 기본정보 조사
- 우선조치 실시 : 출고보류, 유통물량 회수 등

② 우선보고

- 관련 상황 우선보고 실시
 - 농식품부(담당팀) → 장관 우선보고 → 상황전파(검역원, 시·도, 식약청 등)

- 검역원 사무소·지원 → 본원(감시조사과) → 농식품부
- 시군구(담당과) → 시·도(담당과) → 농림수산식품부(담당팀)

③ 경보발령

- 농식품부 : 우선보고 상황에 근거하여 경보발령
- 검역원 및 시·도에 대응 수준·방향 우선지시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

④ 추가조사

- 해당 축산물 오염원인 추적조사
- 오염원인 정밀검사 실시
- 위해 축산물의 유통경로 추적 및 유통물량 파악

⑤ 대응지시

- 농림수산식품부 긴급위생조치반 편성 및 운영
- 생산·유통 조사 결과에 근거 세부 회수계획 수립
 - 대책반 전국 시·도 확대편성 계획
 - 영업자 자진회수 또는 강제회수 명령
- 생산단계에 있는 해당 축산물의 대한 생산중단 검토 지시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전담부서 지정
-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에 협조요청
- 축산물위생심의분과위 건의 또는 전문가협의회 개최

⑥ 조치실시

- 영업자에게 유통금지 또는 판매금지 지시
- 시·도 회수대책반 및 상황반 편성운영
- 관련업체 점검 및 회수상황 지도감독

- 해당제품 추가 유통현황 파악 및 관련정보 지속수집
- 필요시 영업자 강제회수 실시
- 시·군·구 긴급위생조치반 편성 및 운영 지시(필요시)

7] 결과보고

- 회수결과 등 처리결과 농식품부로 최종보고

2.3.3 수입축산물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긴급조치사항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검역·수입신고 중단(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제품 전체 : 다이옥신 등과 같이 역학조사·원인규명이 복잡하여 상대국 위해정보 입수에 시일이 소요되는 품목 ○ 해당작업장산 : 동물약품·농약·병원성미생물 등 위해발생요인이 단순하여 가공장(생산업체)을 통해 위해원인 파악이 빠른(용이한) 품목 ◆ 검역시행장 보관물량 출고중단(검역원) ◆ 한국으로의 수출중지 요청(수출국) ◆ 긴급위생조치 상황반 편성 ◆ 각 시·도 유통감시반 편성 지시 ◆ 자진회수·판매(사용)금지·강제회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 오염정보 제공시와 동일 ◆ 보도자료 작성 배포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우선보고 ◆ 상황일지 작성 ◆ 당해제품 반송·폐기 ◆ 검역·검사 강화조치(각 지원·출장소) ◆ 상대국 확인 및 위생검사 철저요청(대사관) ◆ 참고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원 관련제품(전체 또는 해당작업장산) 보관물량·출고

	<p>내역 및 최근 수입물량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원 위해평가 자체협의체 소집 ·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 오염정보 제공시와 동일
각 시 ·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감시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제품 추적조사 및 봉인조치 등 ◆ 농식품부 조치사항 이행(판매 · 사용금지, 회수등)

2.3.4 반별 임무 및 역할

기관	반명	임무 및 역할
농식품부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방향 지시 및 관련 기관간 업무조정 ○ 수입검역 · 수입신고 중단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대응 ○ 정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검역원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확인 및 상황보고 ○ 국내외 관련정보 수집
	기술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원인 정밀조사
	유통감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물량 파악 및 관련업체 점검 ○ 수거검사 및 강제회수 추진
시·도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확인 및 상황보고 ○ 국내외 관련정보 수집
	유통감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물량 파악 및 관련업체 점검 ○ 수거검사 및 강제회수 추진

2.3.5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기관	부서명	임무 및 역할
농식품부	안전위생과 표시검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상황 총괄 및 수출입 통제 ○ 대응방향 지시 및 관련기관간 업무조정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대응 ○ 경보발령 ○ 상대국 확인 및 위생검사 철저요청
검역원 시·도	감시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확인 및 관련정보 수집 ○ 관련업체에 대한 확인·감시 ○ 수거검사 및 회수상황 감독
	검역검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검사 강화조치 ○ 검역시행장 보관물량 출고금지
	축산물규격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지원
	축산물위생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업체에 대한 확인·감시 ○ 수거검사 및 회수상황 감독 ○ 국내외 관련정보 수집

제4절 심각

2.4.1 상황

- 전국적으로 다품목 및 대량의 축산물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고 위해사고가 발생
-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축산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러지역에서 발생

2.4.2 국내 축산물 조치사항 및 절차

2.4.2.1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부서
① 정보확인	유통현황 및 피해현황 조사	정보입수부서
② 우선보고	상황보고	정보입수부서
③ 경보발령	긴급대응 조치 및 대국민 홍보	농식품부
④ 추가조사	오염원인 및 유통현황 추가조사	시·도/검역원
⑤ 대응지시	대책반 운영 등 세부계획 수립	농식품부
⑥ 조치실시	강제회수 등 대응조치 실시	시·도
⑦ 결과보고	회수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시·도
⑧ 재발방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농식품부

2.3.2.2 조치 내용

① 정보확인

- 해당 축산물 생산량 및 판매처 등 전국 유통현황 조사
- 우선조치 실시 : 출고보류, 유통물량 회수 등

② 우선보고

- 관련 상황 우선보고 실시
 - 농식품부(담당팀) → 장관 우선보고 → 상황전파(검역원, 시·도, 식약청 등)
 - 검역원 사무소·지원 → 본원(감시조사과) → 농식품부
 - 시군구(담당과) → 시·도(담당과) → 농림수산식품부(담당팀)

③ 경보발령

- 농식품부 : 우선보고 상황에 근거하여 경보발령
- 검역원 및 시·도에 대응 수준·방향 우선지시
- 범정부 공동 대응 체계 운영
- 대국민 대처요령 등 TV, 인터넷 집중 홍보

④ 추가조사

- 해당 축산물 오염원인 추적조사
- 오염원인 정밀검사 실시
- 전국 유통경로 추적 및 유통물량 파악

⑤ 대응지시

- 생산·유통 추가조사 결과에 근거 세부 회수계획 수립
 - 대책반 편성 및 영업자 자진회수 및 강제회수 명령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전담부서 지정

⑥ 조치실시

- 시·군·구 및 검역원 유통감시반·상황반 편성 운영
- 영업자 자진회수 감독 및 강제회수 병행 실시
-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 회수협조 요청
- 관련업체 점검 및 회수상황 지도감독
- 해당 제품 유통정보 지속수집
- 압류·회수 물량에 대한 즉각폐기 및 관리강화

7] 결과보고

- 회수결과 등 처리결과 농식품부로 최종보고

8] 재발방지

- 범 정부적인 원인조사 및 회의를 통하여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열린 포럼 개최 : 정부, 소비자, 생산자 등 관계자들간 재발방지 대책 회의개최

2.4.3 수입축산물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긴급조치사항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홍보 ◆ 보도자료 작성 배포 ◆ 수입검역·수입신고 중단지시(검역원) ◆ 검역시행장 보관물량 출고중단 지시(검역원) ◆ 한국으로의 수출중지 요청(수출국) ◆ 긴급위생조치 상황반 전국적 확대 편성지시 ◆ 전국 시·도 유통감시반 편성 지시 ◆ 자진회수·판매(사용)금지·강제회수 조치 ◆ 확산원인 파악 등 재발방지 대책 강구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우선보고 ◆ 상황일지 작성 ◆ 당해제품 반송·폐기 ◆ 검역·검사 강화조치(각 지원·출장소) ◆ 상대국 확인 및 위생검사 철저요청 ◆ 창고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원 관련제품 보관물량·출고내역 및 최근 수입물량 조사 ◆ 검역원 위해평가 자체협의체 소집·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 오염정보 제공시와 동일

각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군·구로 유통감시반 확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제품 추적조사 및 봉인조치 등 ◆ 농식품부 조치사항 이행(판매·사용금지, 회수등)
-------	--

2.4.4 반별 임무 및 역할

기관	반명	임무 및 역할
농식품부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방향 지시 및 관련 기관간 업무조정 ○ 수입검역·수입신고 중단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대응 ○ 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검역원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확인 및 상황보고 / ○ 국내외 관련정보 수집
	기술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원인 정밀조사
	유통지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물량 파악 및 관련업체 점검 ○ 수거검사 및 강제회수 추진
	위생조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검사 강화
시·도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확인 및 상황보고 / ○ 국내외 관련정보 수집
	유통지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물량 파악 및 관련업체 점검 ○ 수거검사 및 강제회수 추진

2.4.5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기관	부서명	임무 및 역할
농식품부	안전위생과 표시검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상황 총괄 및 수출입 통제 ○ 대응방향 지시 및 관련기관간 업무조정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대응 ○ 경보발령 ○ 상대국 확인 및 위생검사 철저요청
검역원 시·도	감시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확인 및 관련정보 수집 ○ 관련업체에 대한 확인·감시 ○ 수거검사 및 회수상황 감독
	검역검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검사 강화조치 ○ 검역시행장 보관물량 출고금지
	축산물규격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지원
	축산물위생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업체에 대한 확인·감시 ○ 수거검사 및 회수상황 감독 ○ 국내외 관련정보 수집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국산) 전국적 규모의 위해확인 축산물 유통

3.1.1 상황

- ▽▽에서 ◇◇에 오염된 분유원료를 한국으로 수출했다는 정보입수
- 해당원료를 사용하는 ○○사의 조제분유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 사의 조제분유에서 ◇◇ 다량 검출, 해당제품 전국적 유통

3.1.2 조치사항 및 절차

정보입수 : ◇◇ 오염 축산물의 국내유입 확실	
조치사항	세부내용
1. 상황보고	① 관련부서를 통한 상세정보 확인 ② 위해정보 입수 부서에서 상황보고전파 - 검역원 → 원장 → 농식품부 → 장관 - 시도 → 농식품부 → 장관 ③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단체에 상황전파
2. 상황판단(위기 평가회의 개최)	① 긴급 위생조치 여부결정(농식품부 주관) - 유관기관 협의를 통하여 대응 수준·방향 결정 - 수입통관절차 중단, 수출국에 해당품목 선적자제 요청 ② 관련 제품 수거검사 지시
3. 상황전파	① 유관기관(시·도)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

상황발생 : 국내산 조제분유 수거검사 결과 ◇◇ 검출

4. 정보전파	① 보도(설명)자료 작성 ② 유관기관에 상황 통보
5. 대책반 구성	① 긴급위생조치 실시인력 편성
6. 유통현황파악	① 해당 축산물에 대한 생산·유통·통계자료 작성 ② 시·도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황 조사
7. 대책협의	① 긴급위생조치 대상 축산물에 대한 기술 협의 ② 필요시 축산물위생심의회 또는 전문가협의회 개최 ③ 국무총리실에 식품안전사고긴급대응반 회의 개최 요청(필요시)
8. 긴급위생조치 시행	① 해당제품 제조원에 자진회수 권고 및 유통금지 조치 - 유통(보관)단계에 있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출고보류 조치 - 판매단계에 있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 생산단계에 있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생산중단 지시 ② 해당 물품 생산·유통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상황발전 : ◇◇ 오염 조제분유의 전국적 유통

9. 대국민 홍보	① TV, 인터넷 등 국민 대처요령 등 대국민 위해사고 알림
10. 상황전파	① 식약청 등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11. 축산물위생심의회 개최	① 확산원인 조사 ② 해당 축산물 생산중단 검토 등 대응책 강구 ③ 식약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대응방안 검토

12. 위생조치반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긴급위생조치 실시인력 증원 ② 전국 시·군·구로 위생조치반을 확대편
13. 회수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업자 강제회수 병행 ② 영업자 회수이행 여부 관리감독 강화 ③ 전국 피해상황 회수현황 실시간 감시 ④ 압류·회수한 축산물에 대한 폐기조치
상황종료 : 해당 제품의 수거완료 등 위해사고 종결단계	
14. 사후관리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긴급위생조치 대상 축산물에 대한 사후관리(유출방지 등) 조치 ② 압류·회수한 축산물에 대한 폐기조치
15. 재발방지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긴급위생조치 정리 또는 평가를 위한 전문가협의회 등 개최 ② 발생원인 및 확산원인 조사
16. 결과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황발생에서 종결단계까지 피해상황 및 조치경과 작성 ② 시·도의 긴급위생조치 결과 등 종합보고서 작성

3.1.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단체)
① 상황발생		
①상황접수	①상황접수	①상황접수
②상황보고 및 상황전파	②상황보고 및 전파	②상황보고 및 전파
③상황판단(긴급대처 상황인지 판단)		
② 긴급조치 (아래조치 중 택일 또는 병합)		
①예비조사 및 정보 검증(시·도) ②출고보류 조치(농림수산식품부 →시·도) ③판매금지 조치(농림수산식품부 →시·도) ④자진회수권고(농식품부/ 시도) 및 점검(시·도) ⑤강제회수조치(농식품부/ 시·도) 및 점검(시·도) ⑥보관·유통중인 축산물의 유통·판매금지조치(농림수산식품부) ⑦압류·폐기조치(농림수산식품부 /시·도)	①자발적 회수 ②강제회수조치 및 점검 ③유통·판매금지 조치 ④압류·폐기 조치	①회수조치 점검(식약청) ②압류·폐기협조(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단체)
③ 해당 영업자에 대한 조치 (필요시 택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보사항에 대한 확인요청(농식품부/시·도) ② 결과 확인 생산·유통 중단 자사(농식품부/시·도) ③ 자진/강제 회수 실시 (농식품부/시·도) ④ 거래처에 대한 조사(시·도) ⑤ 당해 축산물의 폐기(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긴급 대책반 편성·운용 ② 거래처 조사·보고 ③ 폐기사항 입회·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타 시·도(시군구)에 수거 협조
④ 협의회/심의회 개최 (필요시 택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가협의회 개최(농식품부/검역원) ② 축산물위생심의회 개최(농식품부) ③ 축산물위생심의분과위 개최(검역원) ④ 식품안전긴급대응단 개최요청(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가협의회협조(식약청) ② 식품안전긴급대응단 개최(국무총리실)
⑤ 대국민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도자료(농림수산식품부/시·도) ② 필요시 소비자등 홍보자료(농식품부/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홍보자료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홍보자료 배포(협조)
⑥ 기타 사항 (필요시 택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시·도) ② 상황일지 작성(농식품부/시·도) ③ 긴급위생조치상황반 편성(농식품부/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계자료보고 ② 필요시 상황일지 작성 ③ 필요시 긴급조치반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계자료협조(식약청 관세청)

제2절 (수입산) 전국적 규모의 위해축산물 유통

3.2.1 상황

- 중국측 중금속 오염 식육 수출 통보에 따라 국내 수입식육의 안전성 확인 필요성 대두
- 중국산 수입식육의 검역검사 과정에서 클로람페니콜 항생물질이 검출됨
- 중금속에 오염된 식육가공품 유통이 전국적으로 확산됨

3.2.2 조치사항 및 절차

정보입수 : 중금속에 오염된 수입 식육의 국내유입 가능성 우려	
조치사항	세부내용
1. 상황접수	① 수출국에서 위해물질이 축산물에 오염된 상황임을 입수
2. 상황보고	① 정보입수 부서에서 담당 부서로 정보전파 ② 담당부서에서 정보확인 후 상황보고 - 상대국 확인요청 및 해외정보 추가 수집 - 검역검사과 → 원장 → 농식품부 → 장관 - 검역검사과 → 본원 및 지원
3. 상황판단	① 긴급 위생조치 여부 및 대응수준 결정(농식품부) - 검역원 위해평가 자체협의체 소집 -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 및 긴급조치 범위설정

<p>4. 검역검사 강화 조치</p>	<p>① 수입검역 잠정중단(수입신고 보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제품 전체 : 다이옥신 등과 같이 역학조사·원인규명이 복잡하여 상대국 위해정보 입수에 시일이 소요되는 품목 - 해당작업장산 : 동물약품·농약·병원성미생물 등 위해발생요인이 단순하여 가공장을 통해 위해원인 파악이 용이한 품목 <p>② 검역시행장 보관물량 출고보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검역 잠정중단 대상품목에 동일한 조치 <p>③ 창고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분석</p> <p>④ 각 지원 관련제품 보관물량·출고내역 및 최근 수입물량 조사</p> <p>⑤ 해당제품 정밀검사·수거검사 실시</p>
<p>5. 상황전파</p>	<p>① 상황일지 작성 및 보도자료 작성</p> <p>② 유관기관(시·도) 통보 및 언론홍보</p>
<p>상황발생 : 해당 식육 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 검출</p>	
<p>6. 수입중단</p>	<p>① 수입검역·수입신고 중단(검역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제품 전체 : 다이옥신 등과 같이 역학조사·원인규명이 복잡하여 상대국 위해정보 입수에 시일이 소요되는 품목 - 해당작업장산 : 동물약품·농약·병원성미생물 등 위해발생요인이 단순하여 가공장을 통해 위해원인 파악이 용이한 품목 <p>② 검역시행장 보관물량 출고중단(검역원)</p> <p>③ 한국으로의 수출중지 요청(수출국)</p> <p>④ 수출국에 발생원인 규명 조치 및 재발 방지 조치 강구</p>

7. 위생조치반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긴급위생조치 상황반 편성 ② 각 시·도 유통감시반 편성 지시 ③ 상대국 오염정보 제공시와 동일발생원인 및 유통경로 파악
8. 해당제품 회수·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진회수·판매(사용)금지·강제회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 자진회수 권고 - 회수 계획서 제출명령 및 회수상황 관리감독 ② 해당 식육으로 만든 가공품 등 수거검사 실시
9. 위생조치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검역원 지원 및 전국 시도에 긴급 위생조치반 운영 ② 긴급위생조치 실시 인력 편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제품 추적조사 및 봉인조치 등
10. 상황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식약청, 보건복지부, 관련단체·협회 등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② 보도자료 작성
상황확산 : 해당 식육으로 제조한 식육가공품 전국 유통	
11. 상황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거검사 결과 해당 식육으로 제조한 가공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음을 확인
12. 확산범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식육의 유통경로 추적조사 ② 해당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소 등 생산량 파악
13. 상황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식품부 상황실로 상황보고
14. 대응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제품 회수계획 등 대응계획 수립
15. 상황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V, 인터넷 등 위해사고 대국민 홍보 ② 유관부처·기관 통보

16. 공동 대응단 구성	① 범 정부 차원의 공동대응단 구성
17. 위생조치반 확대 운영	① 전국 시·군·구로 위생조치반 확대편성 및 운영 ② 긴급위생조치 실시인력 증원편성 ③ 당해제품 추적조사 및 봉인조치 등 ④ 농식품부 조치사항 이행(판매·사용금지, 회수등)
18. 긴급위생조치 결과보고	① 긴급위생조치 대상 축산물에 대한 사후관리(유출방지 등) 실시 ② 긴급위생조치 결과 보고 (시·도 → 검역원 → 농식품부) - 긴급위생조치관련 문제점 등 보고(농식품부)
19. 긴급위생조치에 대한 마무리	① 수출국 정부와 재발방지 대책 협의 및 해당축산물 반송협조 촉구 ② 긴급위생조치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 ③ 긴급위생조치 정리 또는 평가를 위한 전문가협의회 등 개최
상황종료 : 긴급위생조치 해제	
20. 해제여부 검토	① 상대국 제출자료(검출원인·재발방지대책 등) 검토 ② 농식품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수입금지·사용(판매)금지 등 일시금지조치의 해제·일부해제 또는 해제보류 결정 - 검역원 조사·협의자료 제출 ③ 해제조건·수입재개시 안전성 확보방안 검토
21. 해제통보	① 농식품부 사용(판매)금지·수입검역중단 등 해제조치 통보 (수입업체·각국 대사관 등)

3.1.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단체)
① 상황발생		
①상황접수	①상황접수	①상황접수
②상황보고 및 상황전파	②상황보고 및 상황전파	②상황보고 및 상황전파
③상황판단(긴급대처 상황인지 판단)		
② 긴급조치 (아래조치 중 택일 또는 병합)		
①검역검사강화조치(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②출고보류 및 판매중단 조치(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③수입신고보류조치(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④자진회수권고(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시도) 및 점검(검역원)	①자발적 회수	①회수조치 점검(식약청)
⑤강제회수조치(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시도) 및 점검(검역원)	②강제회수조치 및 점검	
⑥보관·유통중 유통·판매금지 조치(농림수산식품부)	③유통·판매금지 조치	②압류·폐기협조(식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압류·폐기조치(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⑧반송조치(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⑨수입중단조치(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압류·폐기 조치 ⑤영업자 행정처분 등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반송협조(관세청) ④수입중단 협조(관세청)
<p>③ 수출국에 대한 조치 (필요시 택일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정보사항에 대한 확인요청(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②문제사항시 항의서한 발송(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③수출작업장 승인 취소(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④수출국에 대한 현지조사(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⑤재발방지대책 협의(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정보사항확인협조(외교통상부) ②현지조사협조(외교통상부)
<p>④ 협의회/심의회 개최 (필요시 택일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전문가협의회 개최(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②축산물위생심의회 개최(농림수산식품부) ③축산물위생심의분과위 개최(검역원) ④식품안전긴급대응단 개최요청(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전문가협의회협조(식약청) ②식품안전긴급대응단 개최(국무총리실)

⑤ 대국민 홍보		
①보도 설명 자료 작성(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②필요시 소비자 등 홍보자료 작성(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①홍보자료 배포	①홍보자료 배포(협조)
⑥ 기타 사항 (필요시 택일 조치)		
①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검역원) ②상황일지 작성(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③긴급위생조치상황반 편성(농림수산식품부/검역원)	①통계자료 보고 ②필요시 상황일지 작성 ③필요시 긴급조치반 편성	①통계자료협조(식약청 관세청)

부
속

1. 관련서식(예시)

[서식 1. 상황발생 우선보고서]

보고일시 00년 0월 0일

보고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보고경위

○○국 ○○기관에 대한 인터넷 검색 결과 ○○으로부터 ○○ 일부 지역산 ○○중에서 ○○로 사용되는 ○○물질이 허용기준치(지방 : ○○, 고기 : ○○)이상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함

2. 정보내용

.....

3. ○○국 수입축산물 현황

○ 00년 수입축산물 : 000톤, 00년 수입축산물중 문제 축산물 : 00톤

4. 종합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 1차적으로 해당 수입축산물에 대한 출고보류 및 수입신고보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00월 0일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물질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상황판단 예시

[예시 1] ○○국산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검사중 다이옥신 검출 사건

00년 0월 0일 ○○국산 수입돼지고기에 대하여 유해잔류물질 정밀검사중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우선보고에 따라 검토한 결과, 그간 지속적인 수입축산물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해왔으며 ○○국이 다이옥신에 대량으로 오염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번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산 수입돼지고기에 대해서만 불합격 및 반송조치. 별도의 긴급위생조치는 필요 없음

[예시 2] △△국에서 유통중 닭고기, 계란 등에서 다이옥신

00년 0월 0일 △△국의 대형 사료업체의 생산사료에 유독성 다이옥신 물질이 오염되어 이를 섭취한 축산물에 다이옥신 오염이 우려된다는 정보가 해외주재관을 통하여 입수됨. 이를 검토한 결과 상당량의 △△국산 수입축산물이 수입·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위생조치가 필요함

[서식 2. 보도자료]



**Press
Release**

보도자료

제공일 :
제공자 :
과 장 :
사무관 :
전 화 :
쪽 수 :
별첨자료 :

이 자료는 년 월 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유에서 “사카자키균 검출”

- 부 제 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조제분유에 대한 정기 수거검사 과정에서 월 일 균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관할행정기관인 ○○○에 해당제품을 전량 폐기조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하였다.

○

○

Ent. sakazakii 란?



Press Release

보도자료

제공일 : 201?. ??. ??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과 장 : ?????, ?????
 담 당 : ???사무관, ???사무관
 전 화 : 500-????, (031)467-????
 쪽 수 : ?P
 별첨자료 : 있음

이 자료는 201?년 ??월 ??일 이후에 배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육수농축액에서 클렌부테롤 추가 검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유통 중인 ○○산 식육가공품을 수거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1차로 13건의 육수농축액에서 미량(검출량 0.2~7.7ppb)의 클렌부테롤이 검출됨에 따라 ??..??일자로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금년에 ○○에서 수입된 육수농축액 등 식육가공품은 총 ???건(???톤)으로서 아직 국내 유통 중인 ??건(???톤)을 수거 검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상황임
- * 나머지 ??건에 대한 검사결과는 금주 내로 나올 예정
-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일부터 유통 중인 육수농축액 등 ○○산 식육가공품에 대해 수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유통 등을 잠정 중지하여 식품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유통경로가 파악된 만큼 클렌부테롤 검출 제품을 신속히 회수·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에 농축된 육수제품에서 미미한 양이긴 하나 여러 제품에서 검출(육수농축액 등 ??건 중 ??건)된 점에 주목하면서, ○○측에 오염원인 파악 및 예방조치 등을 요구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육수농축액 등 식육추출가공품에 대한 잠정 수출중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번에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제품(세부내역 별첨)에 대하여는 수입 판매업체에게 긴급 회수하여 폐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불검출 제품은 정상 유통하도록 하였으며,
-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제품에 대하여도 검사결과에 따라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클렌부테롤(Clenbuterol)은 천식 등 치료에 사용되는 약품이지만, 근육량 증진 등의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클렌부테롤 잔류허용기준(쇠고기) : 불검출 (CODEX·일본 : 0.2ppb, EU 0.1ppb)

<덧붙임> 1. ○○산 식육가공품 수거검사 결과(1차)

2. 클렌부테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각 1부

<덧붙임 1> ○○산 식육가공품 수거검사 결과(1차)

번호	수입신고필증 번호	수입량	보관물량	결과판정 일	시료유형	시료명	수입업체명	수출업체명	검사결과	검출치
1	IFP???????	2,016.0	1,230.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사골엑기스	○○○○○○	○○○○○○○○○○○○	부적합	0.20
2	IFP???????	14,400.0	11,920.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BEEF LEG BONE EXTRACT	○○○○○○	○○○○○○○○○○○○	부적합	0.20
3	IFP???????	10,800.0	8,675.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BEEF SOUP STOCK	○○○○○○	○○○○○○○○○○○○	부적합	1.30
4	IFP???????	10,000.0	8,980.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사골 농축액	○○○○○○	○○○○○○○○○○○○	부적합	1.00
5	IFP???????	5,004.0	5,004.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BEEF LEG BONE EXTRACT	○○○○○○	○○○○○○○○○○○○	부적합	0.20
6	IFP???????	14,900.0	14,900.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만백성 도가니탕	○○○○○○	○○○○○○○○○○○○	적합	
7	IFP???????	4,800.0	4,740.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사골농축액	○○○○○○	○○○○○○○○○○○○	부적합	0.40
8	IFP???????	4,800.0	0.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사골농축액	○○○○○○	○○○○○○○○○○○○	부적합	0.30
9	IFP???????	15,000.0	8,815.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고향갈비탕	○○○○○○	○○○○○○○○○○○○	부적합	1.80
10	IFP???????	18,000.0	10,746.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사골농축액	○○○○○○	○○○○○○○○○○○○	적합	

11	IFP??????	3,600.0	23,000.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비프 스프 스탁	○○○○○○	○○○○○○○○○○○○	적합	
12	IFP??????	2,016.0	2,016.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우골농축액	○○○○○○	○○○○○○○○○○○○	부적합	0.30
13	IFP??????	5,760.0	5,760.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우골농축액	○○○○○○	○○○○○○○○○○○○	부적합	0.30
14	IFP??????	4,140.0	4,140.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사골엑기스	○○○○○○	○○○○○○○○○○○○	부적합	0.30
15	IFP??????	8,400.0	85.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ox rib soup	○○○○○○	○○○○○○○○○○○○	부적합	7.70
16	IFP??????	16,200.0	1,233.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소 갈비탕	○○○○○○	○○○○○○○○○○○○	적합	
17	IFP??????	22,000.0	22,000.0	2009-4-13	식육추출 가공품	도가니탕	○○○○○○	○○○○○○○○○○○○	부적합	0.40

<덧붙임 2> 클렌부테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약물의 특성

- β -아드레날린수용체에 결합하는 교감신경 작용제로서 기관지 및 평활근 이완효과를 발휘하며,
 - EU·호주 등은 임신 소의 분만시기 조절을 위한 자궁이완제 등으로 허가
 - 우리나라는 체지방 저하 및 체단백 증진 효과를 노리고 오남용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가축에 사용을 금지
- 체내에서 반감기는 20~30시간 정도임

2. 실험동물 및 사람에 대한 영향

- 높은 양으로 반복투여할 경우 간 중량 증대,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유전 독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1회 투여로 일시적인 약한 빈맥(맥박이 빨리 뛰는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은 2.5(어린이)~10(성인) $\mu\text{g}/\text{kg}$ bw/day(매일 체중 kg당 1백만분의 1g)
- 매일 섭취하더라도 사람에게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양은 0.04 $\mu\text{g}/\text{kg}$ bw/day이며,
 - **일일섭취허용량은 이를 안전계수 10으로 나눈 0.004 $\mu\text{g}/\text{kg}$ BW/day(4ng; 60kg 성인의 경우 240ng)임**

* 60kg성인이 동 제품으로 만든 음식물 500ml(10~20배로 희석하므로 육수농축액은 1회 50ml 정도)을 먹을 경우, 이번에 검출된 양(0.2~7.7ppb)을 감안하면 클렌부테롤은 10~385ng정도

3. 국내·외 규제 현황

- 우리나라 : 06,11월부터 동물약품 사용금지(식품 중 불검출), 인체약품은 사용허가(처방)
- CODEX : 쇠고기·말고기 0.2ppb 등 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 ※ 오남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국가가 자궁이완제 또는 호흡기 질환 보조치료제로 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잔류허용기준 적용
- 미국 : 말의 기관지 확장용으로 허가(식품 중 불검출), 인체용은 약품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근육강화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으로 시판 중
- EU : 분만소의 자궁이완제, 경주마의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허가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 쇠고기 0.1ppb 등)
- 호주 : 응급상황에서만 가축에 사용허가 (식품 중 불검출)

[서식 3. 검역중단 조치보고]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종합수의서비스 제공"



국 립 수 의 과 학 검 역 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클로람페니콜 검출관련 중국산 열처리오리가공육제품 일부 검역중단 및 검사
강화 조치 보고(알림)

1. 관련 : 농식품부 표시검역과-000('09.5.22) 및 검역검사과-000('09.5.22)호.
2. '09.5.22일 중국산 00000에 대한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은 불합격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한 수출작업장(Est. 0000)에 대하여는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각 지원(사무소)에서는 해당 수출작업장에서 수출선적 중단조치 이전에 생산·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였거나 도착할 000제품에 대하여는 금번 클로람페니콜 검출원인 등이 밝혀질때 까지 수입검역을 중단하시기 바라며,
4. 또한 검역검사과-0000('08.11.10)호에서 기 검사강화 조치한 바와 같이, 무작위 표본검사시에도 중점검사 항목과 함께 문제제기 축산물로 간주하여 클로람페니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식 4. 위해정보에 대한 조치]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미국산 소시지 회수조치 관련 조치

1. 미국 00000주 소재 000000 Inc.에서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약 562톤의 즉석섭취 소시지 제품을 회수중이라는 FSIS 보도자료와 관련됩니다.

2. 귀원에서는 회수대상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중인 물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수대상이 아니더라도 동일 가공장(Est. 0000 및 00)에서 생산된 다른 제품들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식 5. 회수조치]

농어업은 생명산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제품 회수조치 철회

1. 관련 : 안전위생과-000 및 -000('08.12.8)호.

2. 관련 호로 '08.9.1일 이후 00000에서 도축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된 아일랜드산 0000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각 시도 및 검역원에서는 동 조치의 효과적인 시행과 신속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회수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각 시도는 1일 회수실적을 정리하여 17:00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감시조사과)에 알려 주시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자체 회수내역과 함께 각 시도의 실적을 취합하여 18:00까지 우리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식 6. 추진실적 보고양식]

일일 추진실적 보고양식

제 목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관련 조치사항				
일련번호		기관명 (담당부서)		일자	2008. . .
<p>가. 추진내용 및 실적</p> <p><input type="checkbox"/> 점검인원(일계/누계)</p> <p style="margin-left: 20px;">◦ 개반 명</p> <p><input type="checkbox"/> 점검업소(수)/ 보관업소(수)(일계/누계)</p> <p style="margin-left: 20px;">◦</p> <p><input type="checkbox"/> 업체별 보관물량(kg) 및 조치사항</p> <p style="margin-left: 20px;">◦</p> <p>나. 기타 사항</p> <p><input type="checkbox"/></p> <p style="margin-left: 20px;">◦</p> <p>다. 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p> <p style="margin-left: 20px;">◦</p> <p style="margin-left: 20px;">◦</p>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나. 제조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201?. ?? . ??일까지

*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기재

다. 회수사유 : ◇◇◇◇◇ 기준치 초과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감독기관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

바. 영업자주소 : ○○도 ○○시 ○○동 ○○번지

사. 연락처 : ○○○-○○○-○○○○○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영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긴급위생조치 사례

주요 긴급위생조치 사례

- '03년 3월 한국음식중양회농축산물공급센터에서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에서 납탄발견 보도
 - 수입·유통현황조사
 - 수입자에게 반품 및 유통금지조치
 - ※ 법적근거 : 위해축산물의 회수절차등에 관한 규칙(농림부령)

- '03년 4월 벨기에를 경유하여 수입된 인도산 계란 분말에서 금지물질인 니트로푸란 검출되었다고 벨기에대사관으로부터 통보.
 - 수입현황에 대한 유통여부조사 및 니트로푸란 잔류유해여부, 검사기준, 검사능력 확립등 조치
 - 재고물량에 대한 잠정 출고 보류 및 향후 수입축산물에 대한 강화조치
 - 64,252KG (반송 64,227KG, 소각 25KG)

- '03년 5월 캐나다 광우병으로 수입중단 및 회수조치
 - 캐나다 광우병 발생 → 한국 수입중단 및 반송·폐기조치
 - 유통중 캐나다산 해당물품(SRM) 회수조치
 - 조치대상물량 2,146C/T(반송 1,275C/T, 소각 871C/T)
 - ※ 캐나다 광우병의 회수조치는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음

- '03년 6월 전북 익산시 소재 (주)하림의 참맛후랑크(소시지) 먹고 식중독환자의 가검물에서 보툴리눔독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
 - (주)하림의 자진회수 실시 - 16,900KG 회수
 - (주)하림에 공장내 반입원료 및 공중위생관리 강화등의 위생강화 지시.
 - ※ 법적근거 : 위해축산물의 회수절차등에 관한 규칙(농림부령)

- '03년 8월 검역원 수거검사결과 경기도 소재 수원축산물유통센터 로스트포크(햄류)에서 리스테리아모노사이트제네스 검출, 필렛(햄류) 대장균균 양성
 - 수원축산물유통센터의 자진회수 실시 → 소각으로 폐기('03.9.4)
 - 로스트포크(100KG 소각), 필렛(20.2KG 소각)
 - ※ 법적근거 : 위해축산물의 회수절차등에 관한 규칙(농림부령)

- '03년 12월 미국내 광우병감염 의심소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SRM 판매중단조치

- 시·도의 판매중단조치 및 검역원의 판매중단 확인
-조치대상물량 23,109C/T (반송 20,459C/T, 소각 2,614C/T), 미조치 36C/T

□ '05년 9월 뉴질랜드 엔도설판(농약) 검출관련 ME47 작업장 쇠고기 판매중단 및 회수

- 시·도의 판매중단조치 및 검역원의 판매중단 확인
-현물검사 불합격('05.6.2 도축, 6.3 가공물량) : 반송 또는 폐기조치(1.2톤)
-그 외의 검역시행장 보관 또는 시중 유통물량에 대해 정밀검사 후 적합물량 개방조치 : 검역시행장 보관량(415톤), 시중 유통중 물량(314톤)
- ME47 작업장 쇠고기 수입중단
- 수입검역강화(해당작업장의 뉴질랜드 쇠고기에 대해 별도지시까지 전량 엔도설판 검사)

□ '05년 12월 덴마크 319 작업장 돼지고기(목뼈) 살모넬라균 검출 관련 판매중단 및 회수

- 시·도의 판매중단조치 및 검역원의 판매중단 확인
-조치대상물량 : '05.11.18일 하이푸드에서 수입한 23,100kg 중 도축일이 '05.11.11~14일에 해당하는 1,080kg
- 해당물량 회수 및 반송조치
- 수입검역강화(해당작업장에 대하여 별도지시까지 전량 살모넬라균 검사)

□ '06.2월 미국산 조제분유(엔파밀 리필)에서 금속성 이물질 검출로 인해 회수 및 폐기

- 제조사 : Mead Johnson & Nutritional사
- 판매원 : (유)한국BMS제약
- 시도 판매중단 조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판매업자의 자발적 회수, 검역원 판매중단 조치 점검 및 시도 통보 물량 취합
- 자진회수 및 폐기 대상제품 : 엔파밀 리필 366g/760g 제품 중 배치(batch)번호 'BLJ00'인 제품
(단위 : 개)

품 목 (Batch 번호)	수입량	폐기량	미회수량
엔파밀 리필 366g (BLJ00)	48,522	48,494	28
엔파밀 리필 760g (BIJ00)	22,992	13,354	9,638
계	71,514	61,848	9,666

□ '06년 9월 국내산 조제분유 '알프스산양분유'(남양유업) *Ent. sakazakii* 검출 관련 판매중단 및 회수

- 제조사 : 남양유업
- 제품명 : 알프스산양분유-1 (중량 400g)
- 제품유형 : 조제분유
- 제품번호(Lot No.) : 20070817
- 시도 판매중단 및 업체 회수 조치

(단위 : 개)

제품명	생산량	반출량	회수량	미회수량
알프스산양분유-1	6,035	6,012	3,132	2,880

□ '07년 9월 국내산 조제분유 '유기농산양분유'(매일유업) *Ent. sakazakii* 검출 관련 판매중단 및 회수

- 제조사 : 매일유업
- 제품명 : 유기농산양분유
- 제품유형 : 조제분유
- 제품번호(Lot No.) : 20081025
- 시도 판매중단 및 업체 회수 조치 및 폐기(경기도 입회)

(단위 : 개)

제품명	생산량	반출량	회수량	미회수량
유기농산양분유	9,418	9,408	4,962	4,446

□ '07년 12월 국내산 '참숯먹은 오골계'(하림) 엔로플록사신검출 관련 판매중단 및 회수

- 서울시에서 유통중인 포장육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통보(12/17)
- 제조사 : (주)하림
- 제품명 : 참숯먹은 오골계 700g
- 제품유형 : 포장육
- 유통기한 : 2009.9.22까지
- 시도 판매중단 및 업체 회수 조치 및 폐기(전라북도)

(단위 : 개)

제품명	생산량	반출량	회수량	미회수량
참숯먹은오골계 (700g)	800	800	76	724

□ '08년 1월 조제분유 대장균군 검출 관련 판매중단 및 회수

- 시중 유통 중인 조제분유 중 3개회사 5개 제품에서 대장균군 검출(1/11, 검역원)
- 관할 허가 및 신고관청 판매중단 및 업체 회수 조치 및 폐기

(단위 : 개)

제조회사	제품명 (유통기한)	제품의 유형	관할관청	생산량	회수량	미회수량	
매일유업	프리미엄 명작2 (20090118)	조제분유	경기도	26,905	278	26,627	
	IQ1 (20081108)	조제분유		16,591	304	16,287	
파스퇴르	에메랄드 프리미엄분유1	(20081218)	조제분유	강원도	14,731	87	14,644
		(20090118)			17,710	597	17,113
애보트	게인 어드밴스 (20090605)	성장기용 조제분유	검역원 (인천지원)	22,812	13,879	8,933	

□ '08년 3월 이탈리아산 물소젓 모짜렐라치즈 다이옥신 검출 보도 관련 판매중단

- 대상물량 : 2008.1.1~3.20 사이에 수입된 이탈리아산 물소젓 모짜렐라치즈 10,733kg
- 상기 제품을 수입한 축산물수입판매업체 12곳에 대하여 판매중단 및 업체회수 조치(3/22, 검역원)
- 유통 중인 상기 제품을 수거하여 다이옥신 검사 실시
 - 정밀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유럽연합 유가공품 다이옥신 허용기준(3pg/g Fat) 이하
- 다이옥신이 검출된 치즈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았음을 확인 후 판매중단 조치 해제(4/8)

(단위 : kg)

제품명	수입량	회수량	미회수량
물소젓모짜렐라치즈	10,733	2,047.64	8,685.36

□ '08.07월 다이옥신 검출 칠레산 돼지고기 판매중지 및 회수

- 제조사 : 칠레 06-03 작업장산
- 축산물수입판매업 2개소 8건(104.7톤), 78.78톤 유통 중 해당 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단위 : 톤)

제품명	수입량	회수량	미회수량
칠레산 돼지고기	78.78	10.771	68.009

□ '08.12월 다이옥신 오염우려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판매중지 및 회수

- 축산물수입판매업 4개소 4건(89톤)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단위 : 톤)

제품명	수입량	회수대상	회수량	미회수량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89	45	13	32

□ '09.04월 클렌부테롤 검출 중국산 식육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판매중지 및 회수

- 금년도 총수입량 : 103건, 827,752kg
- 총수입량 중 62건, 545,490kg에 한하여 수거검사 실시(4.7.)
- 수거검사 결과 클렌부테롤 검출 된 34건(수입량 251,791kg)에 대하여 축산물수입판매업자(18개 업소)로 하여금 자발적인 회수토록 지시

(단위 : 톤)(2009.5.18)

제품명	수입량	회수대상	회수량	미회수량
중국산 식육가공품	827	251	174	77

□ '09년 7월 국내산 조제분유 '프리미엄궁 초유의 사랑1'(매일유업) Ent. sakazakii 검출 관련 판매중단 및 폐기

- 제조사 : 매일유업(주) 평택공장
- 제품명 : 프리미엄궁 초유의 사랑1(13g, 스틱형)
- 제품유형 : 조제분유
- 유통기한 : 2010.06.16
- 조치사항(경기도청) : 제조사 보관물량 전량폐기(유통된 물량은 없음)

제품명	생산량	반출량	검사시료	보관·폐기량
프리미엄궁 초유의 사랑1	695kg	0	2kg	693kg

□ '09.12월 국내산 조제분유 '프리미엄궁 초유의 사랑2'(매일유업) 대장균군 검출 관련 판매중지 및 회수

- 제조사 : 매일유업(주) 평택공장
- 제품명 : 프리미엄궁 초유의 사랑2
- 제품유형 : 조제분유
- 유통기한 : 2010.07.06
- 조치사항(경기도청) : 제조사 보관물량 폐기

(단위 : 개, 800g)

제품명	생산량	반출량	회수량	미회수량
프리미엄궁 초유의 사랑2	38,295	38,220	1,234	36,986

□ '10년 2월 폴란드산 수입치즈 보존료(안식향산) 검출 관련 판매중지 및 회수

- 수출국 : 폴란드
- 제조원 : LACTIMA SP.ZO.O.(PL 28151603 WE)
- 제품유형 : 연성가공치즈

- 수입자 : 지고에프엔비(주)
- 수입일자 : 2009.12.11
- 수입자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자가검사 의뢰결과 안식향산이 검출되어 검역원(서울지원)에 자발적 회수계획 제출, 검역원에서 회수결과 확인·폐기 조치

※ 검사시료 1.56kg(각 0.78kg) 소모

(단위 : kg)

제품명	수입량	유통수량	회수량	폐기량
고다슬라이스	104kg	77.35	63.18	89.05kg
에멘탈슬라이스	104kg	77.22	65.78	91.78kg
계	208kg	154.57	128.96	180.83kg

3. 관련기관

유관 기관 연락처

기관명	소속 및 담당업무	전 화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	02-2100-2243
	식품위원회 운영총괄	02-2100-2495
	식품안전정책	02-2100-2255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5
	안전위생과	02-500-2107
	표시검역과	02-500-2119
농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 역원	축산물안전과	031-467-1962
	감시조사과	031-467-1970
	축산물규격과	031-467-1992
식약청	위해예방정책과	02-380-1525
	위해정보과	02-380-1519
	위해사범중앙조사단	02-356-2173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02-6361-3885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3234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3462
인천광역시	농식품유통과	032-440-4393
광주광역시	농산유통과	062-613-3984
대전광역시	농업유통과	042-600-2273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35
경기도	축산과	031-249-4516
경기2도	축수산림과	031-850-2483
강원도	축산과	033-249-2656
충청북도	축산과	043-220-3931
충청남도	축산과	042-251-2722
전라북도	축산경영과	063-280-2756
전라남도	축정과	061-286-6541
경상북도	축산경영과	053-950-3793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3684
제주도	축정과	064-710-2143

『농·수·축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요약)

□ 작성배경

- ‘안전관리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계획(‘10.5.12, 비상계획관실)’에 따라 농·수·축산 분야별로 운영되던 위기대응 매뉴얼을 통합
- 위생·안전 관련 위기대응(소비안전정책관실/어업자원관실 주관)을 중심으로 하되, 농·수·축산업의 피해 예방·복구에 관한 사항(사업국 주관)도 포함

□ 주요 위기유형

- 농약·항생제·환경오염물질 등 유해물질 오염사고(산업피해 사고 포함)
-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 오염사고(산업피해 사고 포함)

□ 위기대응 체계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체계에 부합되게 정비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위해요소 징후 감시	위해요소 발생	위해요소의 타지역 확산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담당 실국 자체 대응 (평상시 업무와 연계 처리)		위기평가회의	중앙대책본부 가동

- 위기대응 기본활동을 규정 :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 위기경보 수준별로 각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 및 행동요령을 규정

<참고> 경보발령 및 위기대응 Process

